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6-48-01
연구보고 2016-34-01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Ⅱ)(총괄보고서)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김은영 외

주관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협력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6-48-01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육아정책연구소
16-48-02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16-48-03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영유아 학대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6-48-04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영유아 학대 현황분석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 라인 개발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박원순 부연구위원 이재희 부연구위원 이혜민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박원순 부연구위원 이재희 부연구위원 이혜민 연구원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윤정숙 연구위원 유진 부연구위원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강지영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김경희 팀장 김미경 상담원

머 리 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1924년 국제연맹회의의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시작으로, 1959년 국제연합이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을 하였고,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그리고 발달권과 참여권에 관한 총 54개의 조항을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일 이에 서약하였다.

아동권리를 명시한 국제협약에 반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를 반영하여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영유아의 특성 상 심각한 결과로 귀결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육아정책연구소는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이라는 3년 연속 연구의 2차년도 연구의 주제를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로 정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아동학대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제2차 어린이 안전포럼' 개최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부처 공무원 6인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가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회**

차 례

요 약	1
I.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수행 체계	17
3. 연구 일정과 역할 분담	20
4. 연구의 의의	22
5. 보고서 구성	23
II. 연구의 배경	24
1. 아동학대의 정의	24
2. 아동학대의 원인	25
3. 아동학대의 영향	27
4. 국내 제도 및 정책	28
5. 국외 제도 및 정책	41
III. 학부모와 교사의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	51
1. 학부모의 인식	51
2. 교사의 인식	69
3. 학부모와 교사 인식 비교	93
IV. 영유아 학대 현황분석	107
1. 영유아 학대 현황 기초 분석	107
2. 영유아 학대 심화 분석	111
3. 영유아 학대 신고사유 분석	117
4. 시사점	118
V. 영유아 학대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121
1. 영유아학대 사건 특성 분석	121
2. 영유아학대 가해자 특성 분석	123

3. 영유아학대 피해자 특성 분석	127
4. 영유아학대 피해자보호지원 현황 분석	130
5. 영유아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문제점	136
VI. 정책 제언	142
1.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143
2. 영유아학대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151
3.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156
참고문헌	161

표 차례

〈표 I-3- 1〉 협동연구 추진 일정	20
〈표 I-3- 2〉 협동연구 연구진 역할 분담	21
〈표 II-1- 1〉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24
〈표 II-2- 1〉 영유아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26
〈표 II-4- 1〉 영유아 학대 관련법 및 주요 내용	29
〈표 II-4-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요 내용	30
〈표 II-4-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자 직군	32
〈표 II-4- 4〉 「아동복지법」 개정 주요 내용	33
〈표 II-4- 5〉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주요 내용	34
〈표 II-4- 6〉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부처의 역할	37
〈표 II-4- 7〉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 아동학대 안건(2016년)	40
〈표 II-4- 8〉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사항	40
〈표 III-1- 1〉 조사 대상자 특성	51
〈표 III-1- 2〉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52
〈표 III-1- 3〉 자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시 아동학대 우려 관련 행동 ..	53
〈표 III-1- 4〉 가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동 경험	54
〈표 III-1- 5〉 영유아에게 가정에서 학대 (의심) 행동을 주로 하는 경우 상황	55
〈표 III-1- 6〉 영유아에게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주로 하는 경우 이 상 황을 줄이기 위한 노력	55
〈표 III-1- 7〉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해당 기관의 가정방문 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제출 여부	56
〈표 III-1- 8〉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 시 학대 의심 행동에 대한 인식 및 이 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는지 여부	57
〈표 III-1- 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학대 의심 행위의 대상 아동	58
〈표 III-1-1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조치 사항	58

〈표 III-1-1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 하지 않은 이유	59
〈표 III-1-12〉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60
〈표 III-1-13〉 아동학대 관련 지식이나 정보 획득 경로	61
〈표 III-1-14〉 육아기간 중 받은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횟수	62
〈표 III-1-15〉 1회당 평균 교육시간	62
〈표 III-1-16〉 수강한 영유아학대 예방교육의 효과 정도	63
〈표 III-1-17〉 영유아 학대 관련 부모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 ..	63
〈표 III-1-18〉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	63
〈표 III-1-1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	64
〈표 III-1-20〉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64
〈표 III-1-21〉 가정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	65
〈표 III-1-22〉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65
〈표 III-1-23〉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	66
〈표 III-1-24〉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	66
〈표 III-1-25〉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인지 정도	67
〈표 III-1-26〉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 설치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	68
〈표 III-1-27〉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이유 ..	68
〈표 III-1-28〉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69
〈표 III-2- 1〉 조사 대상자 특성	69
〈표 III-2- 2〉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71
〈표 III-2- 3〉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 중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	72
〈표 III-2- 4〉 아동에게서 신체적·행동적 징후 목격 경험/아동학대로 의심 정도 ..	73
〈표 III-2- 5〉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행한 조치	75
〈표 III-2- 6〉 향후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취할 행동	75
〈표 III-2- 7〉 아동이 기관에 무단결석할 경우 해당 아동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	76
〈표 III-2- 8〉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77
〈표 III-2- 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시 목격 혹은 본인이 행한 적 있는 행동 ..	78
〈표 III-2-1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 행한 조치 ..	79

〈표 III-2-1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목격 혹은 들었을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	79
〈표 III-2-12〉 향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 취할 행동	80
〈표 III-2-13〉 기관에서 영유아에게 아동학대 (의심) 행동을 하는 상황	80
〈표 III-2-14〉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	80
〈표 III-2-15〉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관련 교육 수강 여부	81
〈표 III-2-16〉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방식	81
〈표 III-2-17〉 지난 1년간 받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	82
〈표 III-2-18〉 1회당 평균 교육시간	82
〈표 III-2-19〉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주최 기관	83
〈표 III-2-20〉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효과 여부	83
〈표 III-2-21〉 아동학대 관련 교육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 ..	84
〈표 III-2-2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	84
〈표 III-2-2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	85
〈표 III-2-24〉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85
〈표 III-2-25〉 가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	86
〈표 III-2-26〉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86
〈표 III-2-27〉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인지 여부	87
〈표 III-2-28〉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	87
〈표 III-2-29〉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 여부	89
〈표 III-2-3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89
〈표 III-2-31〉 CCTV 설치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	90
〈표 III-2-32〉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에 대한 인지 및 활용 여부	91
〈표 III-2-33〉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만족도	92
〈표 III-2-34〉 영유아 학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 요구	92
〈표 III-3- 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	96

〈표 III-3- 2〉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97
〈표 IV-3- 3〉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인지 정도	104
〈표 IV-2- 1〉 가정 내 영유아 학대 사례 및 조기지원사례 예측 변인 요약 ..	112
〈표 IV-2- 2〉 가정 외 영유아 학대 사례 및 조기지원사례 예측 변인 요약 ..	113
〈표 IV-2- 3〉 각 하위집단별 특성 요약	115
〈표 IV-2- 4〉 각 하위집단별 특성 요약	116
〈표 V-1- 1〉 학대유형(가족/비가족학대)	122
〈표 V-1- 2〉 학대지속여부 및 지속기간(가족/비가족학대)	123
〈표 V-2- 1〉 가해자 성별	124
〈표 V-2- 2〉 가해자 혼인상태	124
〈표 V-2- 3〉 가해자의 가구월평균 소득	125
〈표 V-2- 4〉 가해자 진술에 따른 범행동기(가족/비가족학대)	126
〈표 V-3- 1〉 사건피해자 연령	127
〈표 V-3- 2〉 사건피해자 성별	128
〈표 V-3- 3〉 가해자와의 관계(가족/비가족학대)	129
〈표 V-3- 4〉 피해결과 유형(가족/비가족학대)	130
〈표 V-4- 1〉 사건처리단계 시 피해자 진술 여부	131
〈표 V-4- 2〉 진술장소 및 진술조력인 도움여부	133
〈표 V-4- 3〉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 및 사건관리회의 개최 여부	134
〈표 V-4- 4〉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가족/비가족학대)	134
〈표 V-4- 5〉 사건처리단계에서 학대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현황	135

그림 차례

[그림 I-2- 1] 「안전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3차년도 연구 연도별 주제 및 세부 내용	18
[그림 I-2- 2] 「안전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II」 연구명	18
[그림 II-4 1]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사건 처리 흐름도	31
[그림 II-4 2]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	35
[그림 II-4 3]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38
[그림 III-1- 1] 자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시 아동학대 우려 사항	53
[그림 III-1- 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조치사항	60
[그림 III-3- 1]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93
[그림 III-3- 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 시 학대 의심 행동에 대한 인식 및 이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는지 여부	94
[그림 III-3- 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조치 사항	95
[그림 III-3- 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가정방문에 대한 보호자 동 의서 제출 및 수령여부	97
[그림 III-3- 5]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	98
[그림 III-3- 6] 1회당 평균 아동학대 관련 교육시간	98
[그림 III-3- 7]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99
[그림 III-3- 8]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순위	100
[그림 III-3- 9]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순위	101
[그림 III-3-10]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 직한 조치	102
[그림 III-3-11]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	103
[그림 III-3-1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104
[그림 III-3-13] 대부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 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105

[그림 III-3-14]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	106
[그림 IV-1-1] 연도별 영유아 학대 사례 수	108
[그림 IV-1-2] 영유아 대 학령기 아동 학대 유형	111
[그림 VI-1-1]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	142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3년 정부는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아동인권 보호 및 아동안전 강화’를 목표로 두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아동학대 보호도 한 단계 진보함.
- 아동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의 필요성을 지각하여 본 연구소에서는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3차년도의 연구를 진행함.
 - 1차년도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음(도남희 외, 2015).
 - 2차년도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안전한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아동학대, 특히 영유아 학대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내외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최근에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가정을 비롯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영유아는 학대에 노출되어도 표현능력이 낮고 대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연구의 2차년도 연구로,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를 주제로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앙아동보호기관이 협동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수행 체계

- 본 연구는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이라는 3차년도 연구의 2년차 연구로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를 주제로 하였음.
-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기관이 되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구팀과 연구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각 기관별 연구팀과 연계하고 상호 지원하였음.
 - 영유아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이라는 과제를 수행함.
 - 형사사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영유아 학대 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이라는 과제를 수행함.
 - 현장에서 직접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영유아 학대 현황 분석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는 과제를 수행함.

다. 연구 일정과 역할 분담

-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협동기관 연구진과 사전 회의를 통해 연구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각 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주제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연구내용과 방법을 논의하였음.
- 연구 진행 중에는 협동연구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3차에 걸쳐 협동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장소는 상호이해를 위해 각 기관에서 1차례씩 개최하였음.
- 협의회와는 별도로 보고서의 질 관리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원내 자문진 5인과 원외 자문진 3인을 구성하여 협동기관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주관하여 개최하였음.
-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정책 방안 제언을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6인을 토론자로 초빙하여 제2차 어린이 안전포럼을 개최하였음.

라. 연구의 의의

- 협동연구의 경우 연구기관 간 또는 학제 간 연구를 통해 개별 연구기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의 고유 역량을 발휘하여, 다른 기관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측면의 연구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음.

마. 보고서 구성

- 본 보고서의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수행체계, 연구일정 및 역할분담, 연구의 의의, 보고서 구성을 기술함.
- 2장에서는 아동학대, 특히 영유아학대 관련 선행연구 등을 정리하고 최근 국내·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자 함.
- 3장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교사 대상 ‘영유아 학대’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서술하였음.
- 4장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영유아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5장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1~2015년 사이에 아동복지법위반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건 중 피해자가 영유아인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재판기록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였음.
- 6장에서는 각 기관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협동연구 차원, 즉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연구의 배경

가.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구분함(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나. 아동학대의 원인

-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발생 요인에 대해서 통합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음.
- 아동학대 발생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관련 요인이며, 교사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다. 아동학대의 영향

-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인지기능과 상관이 있으며, 장기적 영향도 있음.
- 아동학대는 아동의 학교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라. 국내 제도 및 정책

1) 영유아 학대 관련 법령

- 영유아 학대 관련법
- 2012년에 발생한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3년 12월 31일 의결되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됨. 2016년 5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2016년 3월에는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한층 강화시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 여기에는 지자체의 가정복지 후 모니터링, 아동보호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3. 15).

2) 국내 최근 정책 동향

-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수립

- 2014년 2월 28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함(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4. 2. 28).
- 중장기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2015년 5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을 수립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5. 13).
- 아동학대 방지 대책 수립
 - 정부는 2016년을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의 원년으로 선포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전면적 시스템을 구축함(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3. 29).
-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굴
 - 정부에서는 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16. 3. 18.)를 열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기로 함.
 -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부터 의료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3월부터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있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2. 25).
 - 2016년 4~5월에는 아동보호시설 내 아동학대를 일제 점검하였으며(2016. 5. 24, 뉴스 1), 2016년 6~7월에는 고위험 가구인 5,000가구의 양육 안전점검을 실시함(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6. 10. 13).

3) 각 부처의 역할 및 주요 정책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은 관련 정책을 수립, 지원하고 있음.
- 2015년 1월,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함.
-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를 주재하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

마. 국외 제도 및 정책

1) 국제기구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 (United Nations, 1989).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아동학대(child abuse 혹은 child maltreatment)와 유기가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음을 지적함.

2) 미국

- 미국은 1974년 일명 CAPTA(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함.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2010년 12월 20일 “CAPTA Reauthorization Act of 2010”으로 개정됨.
- 건강한 가족 아메리카(Healthy Families America: HFA)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임.

3) 일본

- 일본에서는 1933년 아동학대방지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전쟁고아 등 요보호 아동이 급증하여 1947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며 아동학대방지법은 아동복지법으로 통합·흡수되었음(배상균, 2015).
-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2004년부터 11월을 “아동학대 방지 추진 월간”으로 지정하고 매년 이를 기념한 대대적인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함(배상균, 2015).

4) 영국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국의 법의 연원은 1868년 빈민구제법(Poor Law Act)부터 살펴볼 수 있음. 오늘날 영국에서 아동에 관한 기본법은 1989년 제정된 아동법(Children Act)으로 이 법은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부모뿐 아니라 공공 기관, 지역 아동보호 당국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음.
- 보육기관, 병원에서 학대의 흔적을 발견하였음에도 클림비를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클림비(Victoria Climbie) 사건을 계기로 2004년 아동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부서(Social Service Department)가 아동서비스 부서(Children's Services Department)로 바뀌는 등 아동보호 체계가 강화됨(Laming, 2003).

5) 독일

- 독일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형법과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에서 규정함.
- 독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는 청소년청(Jugendamt)이 있으며, 부모와 법적 보호자에게 예방적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3. 학부모와 교사의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

가. 학부모의 인식

- 총 조사 대상 영유아 부모는 1,139명임.
- 가정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정도는 7점 척도 중 3.8점으로 보통에서 조금 더 심각한 편이라고 인식함.
- 가정에서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는 경험 비율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적은 월 1회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대체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조치하지 않은 이유의 1순위는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가 48.1%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 아동학대 관련 지식이나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한 질문 결과, TV 등 언론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관련 책 순으로 나타남.

나. 교사의 인식

- 교사 1,247명의 응답을 분석함.

- 가정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 정도는 7점 척도 중 4.0점으로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 3.5점, 유치원 3.2점으로 보통보다는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함.
-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전체적으로 부모와의 개별면담을 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다른 교사나 원장에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 피해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경우 순임.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목격 혹은 들었을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입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가 71.2%로 가장 많았음.

다 학부모와 교사 인식 비교

-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편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부모가 교사보다 심각하게 인식함. 장소에 따라서 부모는 기관에서의 학대를, 교사는 가정에서의 학대를 더 심각하게 인식함.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부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교사는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와 회당 평균 아동학대 관련 교육시간은 상대적으로 교사가 더 많았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부모와 교사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순위로 부모는 '교사양성과정 강화', 교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력 확충'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순위는 부모와 교사 모두 양육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부모는 부부 및 가족갈등,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양육지식 및 기술의 부족을 꼽았으며, 교사는 부부 및 가족갈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꼽았음.

-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로 부모는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교사는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를 질문한 결과, 부모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90.6%로 대부분이었던 반면, 교사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70.0%로 완전히 반대의 양상을 나타냄.
-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로 부모는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교사는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라는 응답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임.

4. 영유아 학대 현황분석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의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함.

가. 영유아 학대 현황 기초 분석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학대의심사례의 총수는 51,071건이며 그 중 영유아의 사례 수는 17,866건임.
- 영유아 집단은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비율이 거의 동일한 반면, 학령기 아동 사례는 여아가 10%이상 많았으며 영유아의 연령 분포는 여아가 36.8%였으며 유아가 63.2%로 나타남.
- 영유아 집단의 학대행위자와 영유아와의 관계는 부모인 경우가 78.6%, 친인척 3.6%, 대리양육자가 15.7%, 기타가 1.4%로 나타남.
- 영아의 경우 신체학대는 8.4%, 정서학대는 15.7%, 성학대는 0.1%, 방임은 47.8%, 중복학대는 28.0%였으며, 유아의 경우 신체학대는 12.4%, 정서학대는 20.1%, 성학대는 1.4%, 방임은 25.2%, 중복학대는 36.2%로 나타남.

나. 영유아 학대 심화 분석

1) 로지스틱 회귀분석

- 가정 내 학대에서 영유아가 여자인 경우, 발달 문제를 가질수록 일반사례에 비해 영유아 학대사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학대행위자가 어릴 적 학대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양육지식 및 기술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를 보고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알콜 남용 문제를 경험할 때 일반사례에 비해 영유아 학대 사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 가정 외 학대에서 학대행위자가 양육지식 및 기술이 부족할 때 일반사례에 비해 영유아 학대 사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2) 잠재집단분석

- 가정 내 영유아학대 잠재집단 분석 결과, 4집단으로 분류되며, 방임집단, 정서학대 집단, 저위험 집단, 신체 및 정서학대 집단으로 분류됨.
- 가정 외 영유아학대 잠재집단 분석 결과, 2개 집단으로 분류되며, 성학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대를 중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기타학대 집단과 성학대를 포함한 모든 학대유형을 경험할 확률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됨.

다. 영유아 학대 신고사유 분석

- 영유아학대로 판정된 사례의 신고사유 중 신체학대 관련 행위는 영유아를 때리는 행위, 영유아에게 멍, 상흔이 있는 경우, 영유아를 누르는 행위, 영유아를 꼬집는 행위, 영유아를 밀치는 행위, 영유아를 찌르는 행위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정서학대 관련 행위는 영유아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 영유아에게 겁을 주는 행위, 영유아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억지로 밥을 먹이는 행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성학대 관련 행위는 영유아의 성기를 접촉하는 행위, 영유아에게 부부관계를 노출하는 행위, 영유아가 성행위를 모방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성폭행을 하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방임 관련 행위는 영유아를 돌보지 않는 행위, 영유아를 보호자 없이 방치하

는 행위, 영유아에게 냄새가 나거나 위생상태가 더러운 경우, 검진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병원에서 무단이탈한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방에 가두는 경우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라. 시사점

-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유아 위험요인, 행위자 관련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영유아 및 가족을 접촉하는 전문가의 예방적 노력과 조기개입 및 일반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
- 예방적 측면에서 영유아 발달특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양육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 조기발견의 측면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영유아 학대 예방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영유아 학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함.
- 정부의 아동학대 상시발굴체계 구축 시 영유아 학대 특성으로 밝혀진 양육 지식 및 기술부족,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알콜 남용 등의 요인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함.

5. 영유아 학대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가. 영유아학대 사건 특성 분석

-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아동복지법위반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확정된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영유아인 사건의 수사재판기록 총 186건을 대상으로 조사함.
- 단일학대가 67.7%, 중복학대는 32.3%로 나타났음.
 - 학대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학대만 발생한 경우가 4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함께 일어난 경우가 15.1%로 나타남.
 - 비가족학대의 경우 신체학대의 비율이 높은 반면, 가족학대의 경우 보호자의 보살핌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유아에게 방임 및 유기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영유아의 학대지속여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53.8%는 단발성이었던 반면, 46.2%는 학대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나. 영유아학대 가해자 특성 분석

- 여자가 68.3%, 남자가 31.7%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대 동기로 가족학대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잘못이나 문제로 인해 학대를 하게 되었다(가해자 말을 듣지 않거나, 잘못을 저지른 경우, 울거나 보챌 경우를 합한 비율)는 비율이 47.6%였음. 비가족학대의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의 범행동기를 보면, 피해아동의 잘못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비율이 72%로 상당히 많았으며,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학대가 발생하였다는 비율은 5.0%에 불과하였음.

다. 영유아학대 피해자 특성 분석

- 가족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만 12개월 미만인 경우가 19.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세가 18.6%였음. 반면 비가족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만 2세와 3세가 각각 동일하게 19.0%로 가장 많았으며 만 7세인 경우는 2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영유아학대 피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영유아가 전체의 57.3%로 여자 피해자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가족학대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친자녀인 경우는 72.1%였고 양·계 자녀이거나 동거 애인의 자녀인 경우는 24.4%였음. 비가족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학원/학교/보육원생인 사건이 85%로 대다수를 차지했음.
- 신체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 186건 가운데 123건으로 66.1%였고, 정신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28.0%인 52건이었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도 11건에 달해 전체 사례 중 5.9%를 차지하였음.

라. 영유아학대 피해자보호지원 현황 분석

- 전체 사례 가운데 피해영유아의 진술이 이루어진 사건은 총 3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피해영유아가 직접 진술한 사건은 가족학대가 26.7%로 비가족학대의 13.0%에 비해 2배 가량 많았음.
- 31.9%의 진술사례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 진술조력인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전체 사례 중 53.2%인 99건으로 나타났음.
- 가족학대의 경우 83건 가운데 하나 이상의 응급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71%인 59건이었음. 비가족학대의 경우 96건 가운데 하나 이상의 응급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12.5%인 12건에 그쳤음.
- 총 86건의 가정 내 영유아학대 사건 가운데 학대행위자에게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조치 중 하나라도 취해진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36%인 31건으로 나타났음.

마. 영유아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문제점

- 사건 신고 단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고유영역 불명확
- 영유아학대의 특성을 감안한 보호·지원방안 불충분
- 피해아동 보호명령 종결 후 사후관리 미흡
- 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전문적 교육·치료 미흡
- 기관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6. 정책 제언

가.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1) 제도 및 행정적 지원

- 아동학대 관련 제도에 대한 재검토
- 부처 간, 부처와 실행기관 간의 협업 및 시스템 공유

- 의료시스템 및 빅데이터의 활용
- 아동학대에 대한 탄력적인 개입
-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활용
- 학대기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마련 및 교육

2) 지원대상별 지원

- 부모를 위한 지원: 부모교육 의무화,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TV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부모 자조 모임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
- 교사를 위한 지원: 현직교사교육 강화, 예비교사 선발과정 강화 및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선, 구조적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운영 개선, 교사 직무 부담 감소를 위한 인력 지원,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상담 서비스 제공,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교사의 자존감 강화

나. 영유아학대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 학대현장에 출동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경찰대상 매뉴얼 개발
-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영유아 학대피해자 지원강화
-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 조정
- 영유아 피해아동을 위한 시설 및 전문적인 치료 제공
- 가정위탁의 적극적 활용
- 학대가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 강화
- 학대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교정
- 학대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복지서비스로의 정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3년 정부는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아동인권 보호 및 아동안전 강화’를 목표로 두었음.
 - 이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정부는 2015년 5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을 수립함.
 -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안전한 삶을 위해서 생활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 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아동안전기반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움.
 - 실제로 영유아기는 성장의 급등기로서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이며, 대내적으로 취약성을 가진 아동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필요성을 지각하여 본 연구소에서는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3차년도 연구 진행함.
 - 1차년도 연구에서는 무상보육 이후 영유아가 육아지원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육아지원기관이 단순한 교육과 보육 공간을 넘어선 생활공간이며, 이는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음(도남희 외, 2015).
 - 2차년도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안전한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아동학대, 특히 영유아 학대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내외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최근에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가정

을 비롯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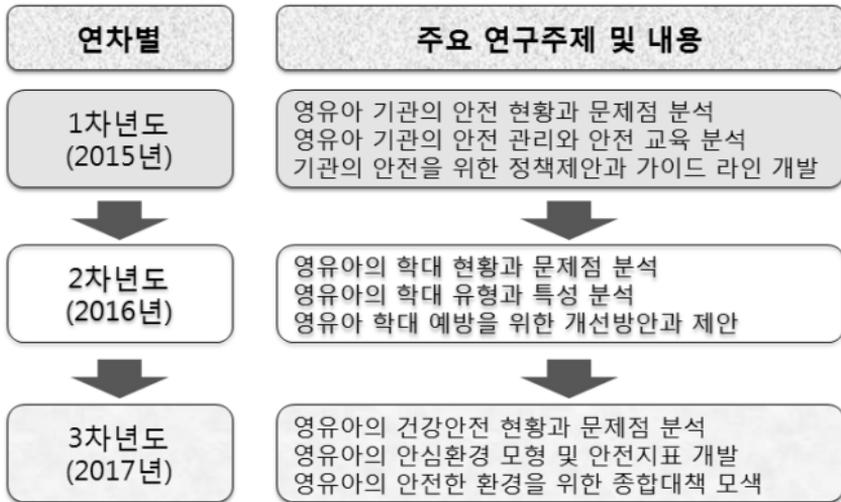
-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 않았으나 최근 영유아 학대에 대한 언론보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01년 4,133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4년은 전년과 대비하여 36.0%로 역사상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2015년에는 19,203건으로 지난 15년간 4.6배 증가함(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의 가파른 상승은 실제로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추세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15년에 신고된 건수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다루어진 건은 16,651건으로 신고된 건수의 86.7%이며,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11,715건으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의 70.4%임.
 - 2015년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된 11,715건 중 1세 미만은 2.9%, 1-3세는 11.2%, 4-6세는 14.4%로 영유아기 학대 사례의 비율이 2.5%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 영유아는 신체통제 능력과 위험에 대한 감지능력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성인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함. 특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영유아는 학대에 노출되어도 표현능력이 낮고 대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함.
- 실제로 2015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19건 중 피해 아동이 0~6세 영유아인 비율은 약 89%(17건)로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가 주로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아동학대 보호도 한 단계 진보함.
- 새로운 법의 도입으로 그동안 아동학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업무 처리

가 가능하게 되었음.

- 본 법에서는 심각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가정 보호와 함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부족하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가벼운 편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연구의 2차년도 연구로,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를 주제로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앙아동보호기관이 협동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수행 체계

- 본 연구는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이라는 3차년도 연구의 2년차 연구로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를 주제로 하였음.
- 3차년도의 연구주제 및 내용은 다음 [그림 I-2-1]과 같음.
 - 우선 1차년도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기관이 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교통연구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협력기관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였음.
 -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기관 차원에서의 안전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영유아의 교통과 차량 안전에 대한 내용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영유아의 안전한 공간구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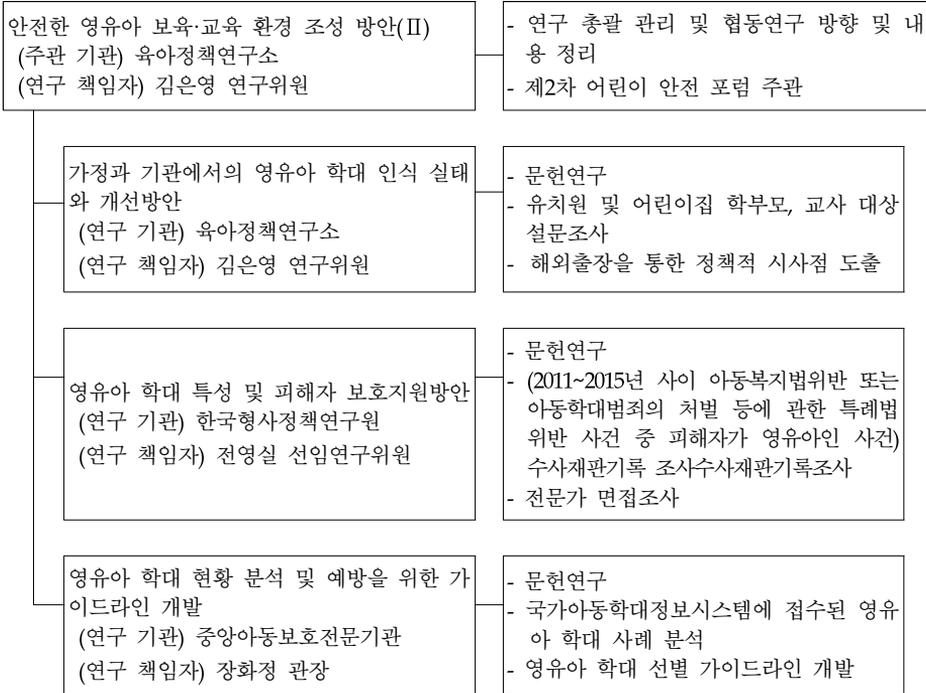
[그림 1-2-1] 「안전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3차년도 연구 연도별 주제 및 세부 내용

- 한편 2차년도 연구인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본 연구수행을 위해서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기관이 되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구팀과 연구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각 기관별 연구팀과 연계하고 상호 지원하였음. 2차년도 연구의 세부 제목은 다음 [그림 1-2-2]와 같음.



[그림 1-2-2] 「안전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II」 연구명

- 2차년도 협동연구인 연구주제와 연구책임자, 상세 연구 내용은 다음 [그림 1-2-3]과 같음.



[그림 1-2-3] 「안전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II」 연구 내용

- 영유아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이라는 과제로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영유아 학대 관련 인식을 조사하고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 형사사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영유아 학대 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이라는 과제로 수사재판기록조사를 중심으로 영유아 학대의 특성을 분석하고 피해자보호 지원방안을 제안하였음.
- 현장에서 직접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중앙아

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영유아 학대 현황 분석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는 과제로 기존의 통계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중 영유아 학대 현황을 분석하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음.

3. 연구 일정과 역할 분담

-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진과 사전 회의를 통해 연구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각 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주제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연구내용과 방법을 논의하였음.
- 연구 진행 중에는 협동연구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3차에 걸쳐 협동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장소는 상호이해를 위해 각 기관에서 1차례씩 개최하였음.
 - 협의회와는 별도로 보고서의 질 관리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원내 자문진 5인과 원외 자문진 3인을 구성하여 협동기관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주관하여 개최하였음.
 - 협동연구의 추진 일정은 다음 <표 I-3-1>과 같음.

<표 I-3-1> 협동연구 추진 일정

일정	내용	참석자
2016년 3월 11일	협동연구 사전 회의	협동연구 전체 연구진
2016년 5월 18일	협동연구 착수보고회	협동연구 전체 연구진 육아정책연구소 자문진 4인
2016년 7월 15일	협동연구 기관 간 협의회	협동연구 전체 연구진
2016년 9월 2일	협동연구 중간보고서 심의회	협동연구 전체 연구진 육아정책연구소 자문진 4인 외부 교수진 2인
2016년 11월 8일	협동연구 최종보고회	협동연구 전체 연구진 육아정책연구소 자문진 3인 외부 교수진 2인
2016년 12월 6일	협동연구 기관 간 협의회	협동연구 전체 연구진
2016년 12월 15일	제2차 어린이 안전 포럼	협동연구 전체 연구진 외부 토론자 6인 원내외 참석자 60인

- 협동연구의 연구진 역할 분담은 다음 <표 I-3-2>와 같음.

<표 I-3-2> 협동연구 연구진 역할 분담

기관	담당자	내용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연구위원	-협동연구 및 개별 연구 총괄 -설문조사지 개발 및 결과 해석 -정책 제언 -포럼 개최 및 발표
	박원순 부연구위원	-해외 사례 조사
	이재희 부연구위원	-선행 연구 분석 -설문조사 결과 해석
	이혜민 연구원	-관련 제도 정리 -설문조사지 개발 및 결과 분석 -포럼 준비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전영실 선임연구위원	-개별 연구 총괄 -수사재판기록 수집 및 분석 -정책 제언 -포럼 발표
	윤정숙 연구위원	-수사재판기록 수집 및 분석
	유진 부연구위원	-수사재판기록 수집 및 분석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개별 연구 총괄 -가이드라인 개발 -정책 제언 -포럼 발표
	강지영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자료 심층 분석
	김경희 팀장	-전문가 자문회의 계획 수립 및 진행 -가이드라인 개발
	김미경 상담원	-연구지원

- 또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정책 방안 제언을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6인을 토론자로 초빙하여 제2차 어린이 안전포럼을 개최하였음.
- ‘어린이 안전포럼’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기획한 포럼으로, 2015년에는 1차년도 주제인 영유아의 생활공간인 유치원·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조성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음.
- 2016년 제2차 어린이 안전포럼은 2차년도 주제인 ‘아동학대’로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를 주제로 다뤘고, 12월 15일에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실

에서 개최되었음.

- 이 날 포럼에서는 각 협동연구 연구진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며,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하였음.
- 제2차 어린이 안전포럼 토론자로는 최혜영 교수(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안정은 장학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박현선 교수(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은정 소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양진혁 사무관(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류승표 국장(어린이집안전공제회 경영기획국)이 참석하였으며, 이외에도 현장 및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4. 연구의 의의

- 협동연구의 경우 연구기관 간 또는 학계 간 연구를 통해 개별 연구기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본 협동연구의 경우에도 각 기관에서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접근을 취하여 연구를 실행하고자 하였음.
 - 예컨대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대한 현장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에 채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및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기관이었음.
 -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경우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를 분석하기에 적합하였음.
 - 마지막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의 DB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으므로, 세부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기관이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기관의 고유 역량을 발휘하여, 다른 기관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측면의 연구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음.

5. 보고서 구성

- 본 보고서의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수행체계, 연구일정 및 역할분담, 연구의 의의, 보고서 구성을 기술함.
- 2장에서는 아동학대, 특히 영유아학대 관련 선행연구 등을 정리하고 최근 국내·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자 함.
- 3장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교사 대상 ‘영유아 학대’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서술하였음.
 -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통해 기관에서의 학대와 가정에서의 학대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영유아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또한 4장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영유아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 시스템을 통하여 영유아 학대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의 특성을 분석하여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5장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1~2015년 사이에 아동복지법위반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건 중 피해자가 영유아인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재판기록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였음.
 - －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음.
 -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법제도 운영현황을 검토하면서 영유아 특성을 고려할 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음.
-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각 기관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협동연구 차원, 즉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II. 연구의 배경

1.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아동학대의 정의가 있음.
 -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임.
-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10가지 금지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표 II-1-1〉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료: 아동복지법 제17조 [법률 제13259호, 2015.3.27.,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함(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 신체학대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 신체 가해 행위 및 도구 등을 활용한 간접적 신체 가해 행위 등을 포함함.
 - 정서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등을 말함.
 - 성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나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함.
 -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뜻하며, 방임은 세부적으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로 분류됨.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 1항에서는 아동학대 유형을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로 분류함(유엔 아동권리협약 국문; p. 7~8).

2. 아동학대의 원인

-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발생 요인에 대해서 통합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함.
- 학술데이터는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시스템(K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누리미디어(DBpia), 학술교육원(earticle), 교보문고 스콜라, 학지사 뉴논문 등을 활용함.
 - ‘아동학대’, ‘영아학대’, ‘유아학대’ ‘학대’, ‘가정폭력’을 키워드로 하여 논문을 검색함.
 - 학술지논문 527개 학위논문 345개를 찾아 총 872개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피학대 아동의 연령이 취학 전인 논문, 성학대 제외, 장애 아동 학대 제외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종 20개의 논문을 분석함.
- 메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아동학대 발생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관련 요인이며, 교사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II-2-1〉 영유아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효과 크기	Zr 값	신체학대 요인	정서학대 요인	방임 요인
Large	0.40 이상	·어머니성격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지식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지식 ·교사의 자아존중감 ·교사의 직무특성	·어머니 성격 ·양육태도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지식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Medium	0.25~0.40	·결혼가정 여부 ·교사의 자아존중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교사에 대한 사회적지지 ·어머니 성격	·양육스트레스 ·교사의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Small	0.10 ~ 0.25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애착 ·어머니 우울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근무형태 ·교사 대 영유아비율 ·양육태도 ·교사 직무특성 ·출생순서 ·아버지직업 ·부모의 기타스트레스 ·교사가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지지 ·어머니 음주여부 ·교사의 근로조건 ·부모건강	·부부갈등 ·애착 ·교사 직무태도 ·출생순서 ·교사의 자녀유무 ·어머니 우울 ·어머니 자기효능감 ·아동연령 ·부모의 기타 스트레스 ·교사 부모의 양육태도 ·어머니 음주 ·부모건강 ·결혼만족도	·부모의 기타 스트레스 ·교사 직무특성 ·부부갈등 ·애착 ·어머니우울 ·교사의 사회적지지 ·애착 ·주거환경 ·교사의 근로조건 ·시설수준 ·교사 자녀유무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교사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아동연령 ·어머니 근무형태 ·어머니 종교 ·교사 성격(내적통제) ·교사 학력

3. 아동학대의 영향

-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인지기능과 상관이 있으며, 장기적 영향도 있음.
 -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하고 방임될수록 아동의 공격성과 과잉활동은 증가함(김준호·김선애, 1997).
 -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부부폭력의 목격 순으로 아동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김평화·윤혜미, 2013).
 - 방임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의 문제는 증가함(유정아·정익중, 2014).
 -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불안감, 우울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민대기, 2014).
 - 아동학대는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아동학대는 우울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친구관계나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우울에 영향을 줌(전해숙, 2008).
 - 지속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 수준과 공격성 수준이 높음. 아동학대는 초등학교시기에 최신효과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지속효과가 큰 영향을 미침(김수정·정익중, 2013).
 - 아동학대 경험은 아동의 탄력성과 인지기능,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학대경험이 심각한 아동일수록 낮은 탄력성을 보임(주소영·이양희, 2008).
 - 신체, 정서 및 방임학대를 하는 경우 아동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침(김상미·남진열, 2014).
- 아동학대는 아동의 학교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아동학대는 아동의 위축,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공격성, 과잉 행동, 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포함하여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김수정·정익중, 2013, 재인용⁴⁾).
 - 초등학생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요인이 높을수록 아동의 적응

변인이 낮아지며, 행동문제와 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이복희, 2007).

- 아동학대는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완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김소연·전종설, 2015).
- 정서, 방임과 같은 학대경험과 학업성취, 학교규범준수, 교사관계, 친구관계 등의 학교적응은 부적상관을 보임(김미정·염동문, 2012).
- 아동학대는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격성의 증가와 인지학습능력의 저하를 매개로 하여 소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정익중, 2008).
- 방임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학대는 아동의 우울성향, 자기효능감을 통해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나은숙·정익중, 2007).

4. 국내 제도 및 정책

가. 영유아 학대 관련 법령

1) 영유아 학대 관련법

- 아동학대 관련법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신고 의무와 교육, 아동학대 발생 시의 처리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음.
- 영유아 학대 관련 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보호심판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등이 있음.
- 각 법령의 아동학대 관련 조항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재인용한 논문은 다음과 같음(김광혁, 2009; 정익중, 2008; Lamont, 2010; Shonk & Cicchetti, 2001; Mills, 2004; Stirling, Amaya-Jackson, & Amaya-Jackson, 2008).

〈표 II-4-1〉 영유아 학대 관련법 및 주요 내용

관련 법	조항	주요 내용
아동복지법	제3조 7항	아동학대의 정의
	제15조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제17조	학대를 금지행위로 규정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을 규정
	제28조의2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아동학대 예방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6조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
	제23조의2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
	제45조 3항	설치·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행위 의심 시 즉시 보고, 조사·검사 실시 규정
	제46조, 제47조, 제48조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자격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3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 법 위반 이력과 명단 등 공표
	전 조항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 처벌, 처리절차, 아동보호사건 처리, 피해아동보호명령 처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등 명시
아동보호심판 규칙	전 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배상명령 처리 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법)	제5조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우선 적용 명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국제협력 강화
	제34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시 수사기관에 신고
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유아의 인권 보장
	제32조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유치원의 폐쇄 등을 명시

자료: 참고문헌 p. 150에 제시한 각 법령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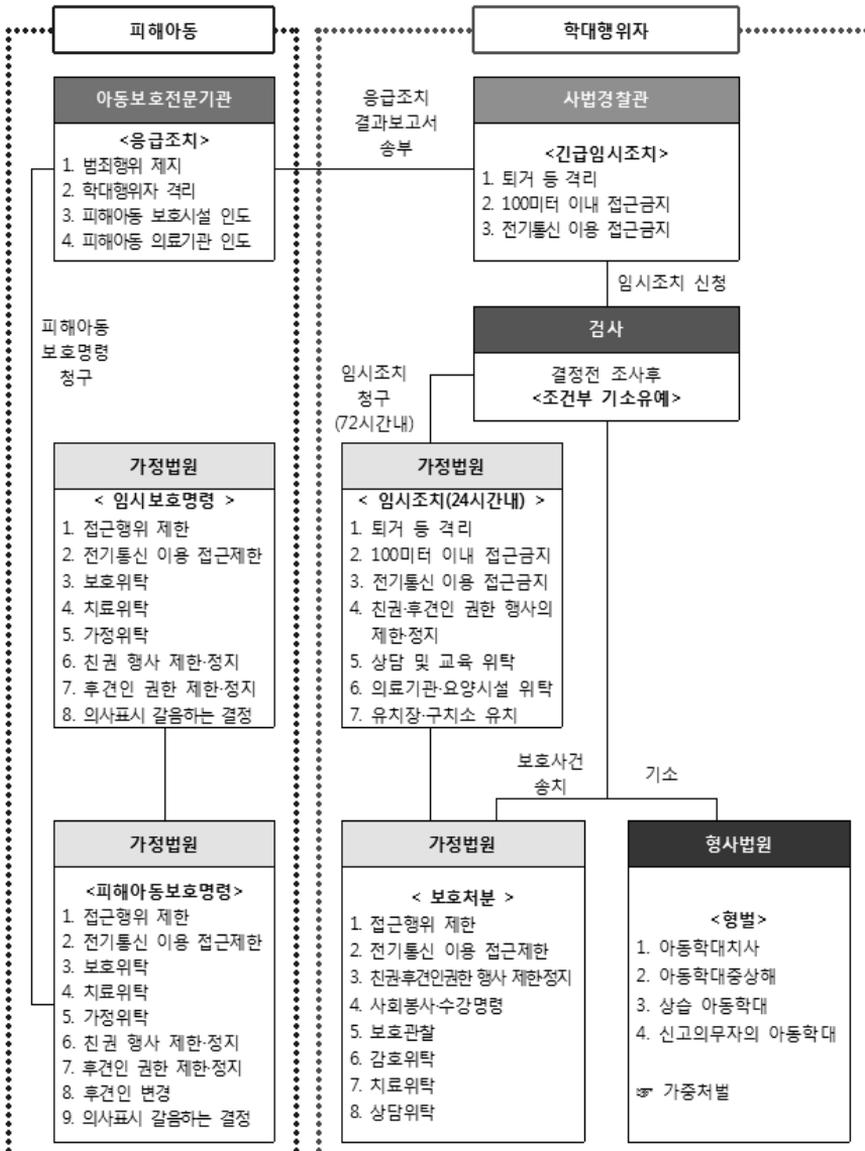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2년에 발생된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3년 12월 31일 의결되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됨.
-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4-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요 내용

주요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24개 직군, 약 168만 명) 지정	-기존 신고의무자에 더해 성폭력피해 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등 직군의 종사자(약 3천 명)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기한 명확화	-	-신고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함
신고자 보호조치 ²⁾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도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함으로써 안심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신고자 비밀엄수의무 위반시 형량 강화	-위반할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상향 조정)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고소에 대한 특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인 피해아동은 직계존속인 부모를 고소할 수 없음.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특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와 합의하게 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이 어려움	-피해아동과 합의가 있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함.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강화	-인지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와 분리되는 것을 거부할 때 적극적인 분리보호 조치가 곤란하였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와 함께 있길 원하더라도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함.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2016. 5. 19). 아동학대 신고자, 강력범죄 신고자처럼 신변 보호. p. 3-5 재구성



자료: 관계부처 협동(2014. 2. 2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안), p. 30.

[그림 11-4-1]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사건 처리 흐름도

2) 구체적 내용: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명으로 조서 작성,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지 않도록 함. 신고자가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 조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은 기존 24개 직군에서 확대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5. 19).

〈표 II-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번호	신고의무자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6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9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2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3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4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자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법률 제14172호, 2016.5.29. 개정, 2017.5.30. 시행]

□ 아동복지법

- 2014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4-4〉 「아동복지법」 개정 주요 내용

주요내용	시행 전	시행 후
1)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게 됨.	-	-
2) 학대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함.	주소지 소재 학교에 취학함으로써 학대행위자에게 손쉽게 노출	주소지 이외의 보호시설 등 소재 학교에 취학함으로써 학대행위자의 접근 차단
3)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됨.	-	-
4)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에 제한이 없음	아동관련기관은 직원 채용시 반드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기간 중 취업 여부를 확인·점검, 해임 요구

자료: 법무부·보건복지부(2013. 12. 31). 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p. 3-4 재구성

- 2015년 3월에 공포되어 시행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함(보건복지부, 2016). 또한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고지하고,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기관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보건복지부, 2016).
- 2016년 3월에는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한층 강화시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 여기에는 지자체의 가정복지 후 모니터링, 아동보호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3. 15).

나. 국내 최근 정책 동향

□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수립

- 2014년 2월 28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함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4. 2. 28).
- 발표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4-5〉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주요 내용

대책	주요내용	세부내용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 학대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체계 구축	-신고의무자 직군의 교육 및 아동학대 간이접 검표 보급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신고 불이행 시 과태로 부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고위험군 발굴 및 가정방문을 통한 조기발견
	· 학대 피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	-초기 현장출동 단계부터 경찰이 반드시 개입하여 수사 실시 -가해자 부모에 대한 퇴거, 접근·통신 금지, 친권행사 제한·정지 이행 -학대 고위험군 가정의 거주지 이전시 담당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업무 인수·인계, 피해아동 졸업시까지 지속적 모니터링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 아동학대 고위험군의 가정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속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시군구의 각종 사회서비스(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지원을 통해 학대 발생 요인이 되는 가정 내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강화	·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의무규정인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의 아동안전교육 충실 이행	
	· 아동학대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송출 및 온라인교육 등을 통한 일반 국민 인식 개선	
가해자 처벌 강화	·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제도 활용, 경미한 학대에도 부모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상담 수강 의무 부과	
	·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학대중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	
	· 아동학대관련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동안 아동관련기관 운영이나 취업 등 제한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4. 2. 28). 아동학대 신고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공동 대응. p. 3-5 재구성

□ 중장기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2015년 5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을 수립함.
-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5년 단위 아동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중앙부처·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관리하는 중기플랜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5. 13).
-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4개 영역을 제시하였는데, ‘안전한 삶’의 개요는 발달주기별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가정·학교에서의 생활안전, 성범죄·아동학대로부터의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5. 13).

□ 아동학대 방지 대책 수립

- 정부는 2016년을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의 원년으로 선포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전면적 시스템을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3. 29).



자료: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3. 29). 정부,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다. p. 3.

[그림 II-4-2]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

-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는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강화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대응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또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내용이 있음.

□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굴

- 유치원에 다녔던 아동이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받다가 숨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16. 3. 18.)를 열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기로 함.
 - 매뉴얼을 통해 2일 이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무단결석하거나 영유아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기로 함(KTV 국민방송, 2016. 3. 18).
-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부터 의료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3월부터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있음.
 - 영유아 점검 대상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에서 건강검진을 포함한 아동 중에서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 정보가 없는 아동(3,0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6,494명)의 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출입국 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을 우선 대상으로 점검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2. 25).
-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굴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보건복지부·교육부·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6. 4. 18).
- 2016년 4~5월에는 아동보호시설 내 아동학대를 일제 점검하였으며(2016. 5. 24, 뉴스 1), 2016년 6~7월에는 고위험 가구인 5,000가구의 양육 안전점검을 실시함(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6. 10. 13).

다. 각 부처의 역할 및 주요 정책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은 관련 정책을 수립, 지원하고 있음.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 부처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표 II-4-6〉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부처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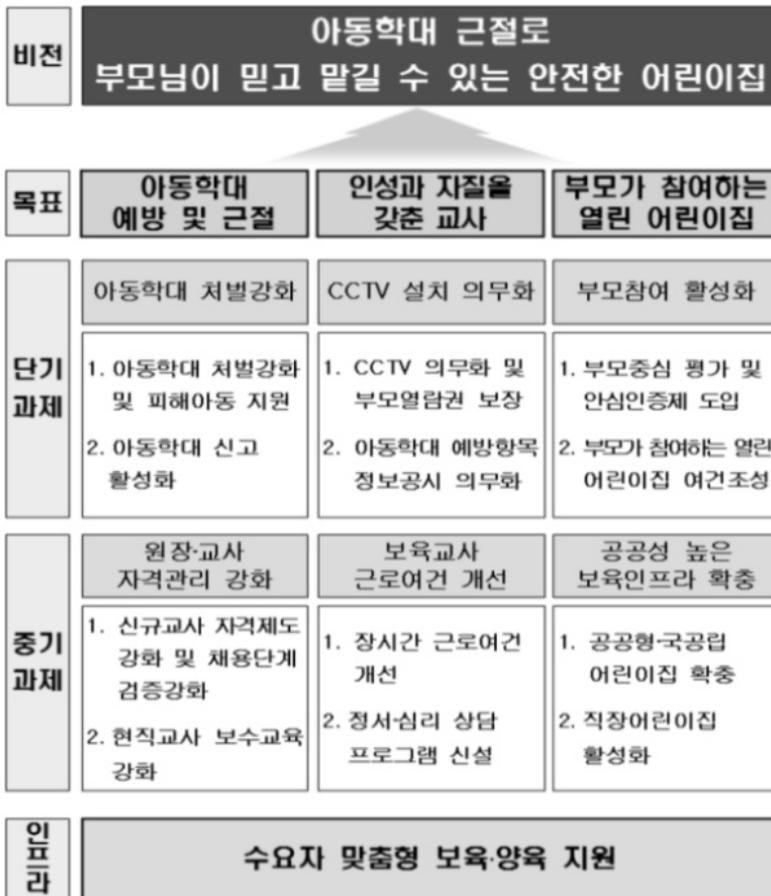
부처	역할
보건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관련 법·제도 마련 및 개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및 자격 관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신고의무자·아동·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 제작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 제작, 배포, 송출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 및 아동학대예방주간 행사 및 홍보 실시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과과정 포함,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지원(초·중·고 교과과정 포함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중등학교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학원강사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 및 위협에 대한 예방 협조(피해 아동의 입학, 전학 등의 신속한 조치와 편의도모)
	보육·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학대발생 보육·교육시설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징계
여성 가족부	가정폭력예방과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가정폭력예방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내 피해아동 보호지원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련한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법 교육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행위자 교정·교화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련한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법 교육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행위자 교정·교화 지원체계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 아동분야 사업안내 II. p. 189-190.

□ 어린이집 아동폭력(학대) 근절 대책 마련 및 실시

- 2015년 1월,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함.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는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아동학대 행위를 3회 이상 위반 시 시설의 폐쇄가 가능하였지만,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one strike-out) 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 28).
- 기존에는 해당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을 때 기존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근무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이를 영구히 불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 28).



자료: 보건복지부(2015. 1.).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안. p. 3.

[그림 II-4-3]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의심 시 부모의 CCTV 열람을 제도화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 28). 그 결과 2015년 1월,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은 24.8%(10,874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1월에는 설치율 100%를 달성함(이미화 외, 2016).
- 우수한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자격관리를 강화하며, 그 일환으로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 도입할 예정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 28). 장기적으로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을 검토하고,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서 대면교육 및 현장실습을 대폭 강화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 28). 예비교사 뿐 아니라 현직교사에 대해서도 인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교육과 연계하여 인성 중심의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 28).
-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을 지원하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체교사를 확대하여 직무교육 시에도 파견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 28). 정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자 하여, 상담 전담요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하고자 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 28).

□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제

- 교육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
 - 2015년 12월,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굴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조사 및 매뉴얼을 마련함(교육부 보도자료, 2016. 3. 18).
 - 2016년 3월,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4~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환경을 일제 점검함. 영유아 뿐 아니라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의 양육환경 점검을 실시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5. 19).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안건이 지속적으로 상정되고 있음.
 - 2016년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된 아동학대 안건은 다음과 같음.

〈표 II-4-7〉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 아동학대 안건(2016년)

안건	일자	상정 부처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점검 및 대책	'15.12.28, '16.1.17, '16.1.29, '16.3.18, '16.4.25	교육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대책	'16.1.29, '16.2.26	복지부
아동권리헌장 제정안	'16.4.25	복지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16.3.18	여가부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중점 추진사항	'16.5.20	복지부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	'16.9.30	복지부

자료: 교육부(2016. 11). 내부자료.

- 가장 최근 주재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16. 9. 30. 개최)에서는 기존에 마련·추진 중인 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을 논의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9. 29).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4-8〉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사항

논의사항	세부 내용
조기발견 체계 작동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내년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함.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서 누락 없이 발견하도록 학적정보가 관리·연계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 개선 -기존 대책에 포함된 신고의무자 및 이웃의 신고 활성화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추진
피해아동 등 아동 보호 체계 보완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점검 -드림스타트나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지자체-민간기관 간 업무표준 지침 마련을 통해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종합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
부모교육 내실화	-대상별로 마련한 부모교육 제도화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에 대해 전문가가 찾아가는 교육 등 실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보완	-상·하반기 정기적인 어린이집 CCTV 관리 운영 실태 및 해당 영상의 모니터링(학대 징후 확인을 위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의 보육행위 단속 -현재 신청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며, 아동학대 발생 시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및 학대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자가 체크리스트 마련, 진단에 따라 전문 상담·교육 참여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9. 29).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 반면교사 삼아 대책 보완. p. 3-4.

5. 국외 제도 및 정책

가. 국제기구

□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 (United Nations, 1989).
- 이 협약은 아동이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세계 인권선언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언한 국제인권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그리고 발달권과 참여권에 관한 총 54개의 조항에 담고 있음(United Nations, 198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n.d.).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³⁾

- 세계보건기구는 아동학대(child abuse 혹은 child maltreatment)와 유기가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음을 지적함.
- 세계보건기구(1999)는 아동학대를 ‘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아동을 위탁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상황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ill-treat), 성적 학대, 유기 혹은 방기(neglect or negligent treatment), 상업적 착취나 기타 착취,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존엄성에 대한 실질적, 잠재적 위해의 원인’(세계보건기구, 199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59에서 재인용)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가 이러한 아동학대 및 유기와 관련하여 특별히 아동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이 있음을 밝혔는데, 연령, 성, 그리고 특수성이 그 세 가지 요인임. 첫째, 연령은 어릴수록 나이든 아이들에 비하여 아동학대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고, 두 번째, 성별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는 여아가 다양한 아동학대의 대상이 될 확률이 많았음. 세 번째로, 아동학대와 유기에 취약한 아동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는 미숙아, 쌍생아, 장애와 같은 것들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하여 아동학대와 유기 대상이 되기 더 쉬운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3) 해당 부분은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을 바탕으로 작성함.

나. 미국

□ 아동학대 예방 관련법

- 미국은 1974년 일명 CAPTA(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함.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2010년 12월 20일 “CAPTA Reauthorization Act of 2010”으로 개정됨.
 - CAPTA는 연방정부의 역할을 연구, 평가, 기술 지원, 자료 수집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아동학대와 유기를 다룰 아동학대 및 유기 대응센터(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를 설립하는 역할, 아동복지 정보 센터(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를 설립하는 역할로 규정함(강은영·김희균, 2015;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1).
- 미국은 입양지원과 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AACWA)을 개정하여 입양 등으로 가족을 떠나 보호받는(out-of-home care)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입양과 안전한 가족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ASFA)을 제정함(전영실·노성훈, 2011;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6; Stein, 2000).
 - 이전까지 미국의 입양과 관련된 철학은 가족 보호, 가족의 재결합을 기반하고 있었으나 ASFA를 계기로 가족 재결합의 노력이 아동을 위협에 처하게 한다면 아동의 복지를 위협하는 가족 중심주의를 포기하게 함(전영실·노성훈, 2011; Stein, 2000).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⁴⁾

- 건강한 가족 아메리카(Healthy Families America: HFA)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임.
 - HFA는 심리사회적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위기 가정으로 분류된 가정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함(Healthy Families America, 2016a). HFA는 현재 미국의 35개 주와 워싱턴 D.C., 캐나다 및 6곳의 미국령에서 실행되고 있음(Healthy Families America, 2016a).
 - HFA는 각 가정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녀를 위한 유익한 환

4) 해당 부분은 Healthy Families America 홈페이지(<http://www.healthyfamiliesamerica.org>)를 바탕으로 작성함.

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전영실·노성훈, 2011).

- 지역예방서비스대책기구(Task Force on Community Preventive Services, 2003)는 HFA와 같은 가정방문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서 약 40%의 아동학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힘(Oshana, Harding, Friedman, & Holton, 2005; Task Force on Community Preventive Services, 2003에서 재인용).

□ 유아교육·보육 기관에서의 학대방지 대책⁵⁾

- 전미유아교육협회(NAEYC)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선언함(NAEYC, 1996).
 - 유아교육·보육 기관에서는 유자격 교사를 아이들 수에 맞게 적절한 수만큼 고용해야 함. 적정한 교직원의 수에 비하여 아동이 많으면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교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혹은 교사가 아이들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할 위험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임.
 - 가려진 공간의 최소화해야 함.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쉬운 사적이거나 가려진 공간은 실내나 실외를 막론하고 없애도록 노력해야 함. 물리적인 환경이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음.
 -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대예방교육의 실시가 필요함.
 - 안전한 환경을 위한 명확한 지침과 절차가 있어야 함.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외부인이 접근하는 것은 통제되어야 함.
 - 교사에 대한 지속적 감독과 부모 참여가 있어야 함.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나 직원 혹은 자원봉사자가 혼자 떨어져 아이들과 함께하는 경우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주의를 요함.
 - 학대예방을 위해 “노터치 지침”을 세우지 말아야 함.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제한해서

5) 해당 부분은 'NAEYC(1996).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Early Childhood Professionals to Prevent Child Abuse'를 바탕으로 작성함.

는 안 된다는 것임.

- 교원 채용 시 검증이 필요함. 교원의 신규 임용 시 유아교육·보육 기관에서는 교사의 범죄 기록 조회, 교육 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한 자세하고 신중한 조사가 필요함.

다. 일본

□ 아동학대 예방 관련법

- 일본에서는 1933년 아동학대방지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전쟁고아 등 요보호아동이 급증하여 1947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며 아동학대방지법은 아동복지법으로 통합·흡수되었음(배상균, 2015).
-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별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게 언론에 부각되어 2000년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됨(김잔디, 2014).
 - 아동학대방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가 그 보호하는 아동의 '심신의 성장'과 '인격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김잔디, 2014).
 -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이후에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및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연이어 일본 국회를 통과함(김잔디, 2014; 배상균, 2015).
 - 이로 인해 2000년 이전 일본에서 아동학대에 대하여 "법은 가정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적, 사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관행이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하게 되었음.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

-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2004년부터 11월을 "아동학대 방지 추진 월간"으로 지정하고 매년 이를 기념한 대대적인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함(배상균, 2015).
- 아동학대방지법에서 신고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

하고 추가적인 아동학대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일본은 2013년 현재 아동학대를 상담할 수 있는 207개의 아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김미숙, 2014; 오미희, 2015). 이러한 상담으로 학대의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조사를 통해 아동과 가정을 조사하여 아동의 필요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함(김미숙, 2014).

□ 아동학대 사후 조치

- 아동학대 혹은 의심 사례로 신고된 경우 외에도 기타 상담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살펴봄(일본의 후생노동성, 2016년 12월 16일 인출).
 - 후생성(2013)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통하여 보호자가 자녀에 대하여 비행, 육아 상담을 통해 “거짓말을 자주 한다”, “말을 듣지 않는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등의 경우 아동학대 잠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을 지적함(배상균, 2015; 厚生労働省 『子ども虐待対応の手引き, 2009에서 재인용).
-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된 후에는 아동학대방지법에 따라 아동상담소장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고 접수된 아동을 면담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에 따라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김잔디, 2014).
 - 지역 아동상담소와 지자체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아동학대 징후의 발견 시 매뉴얼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아동학대 조사 시에 지역 유관기관의 직원이 복수로 참여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후생노동성, 2009; 배상균, 2015, 재인용).
- 아동이 친권자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 복지에 현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가정법원은 아동을 장기간 양부모에게 위탁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음(김잔디, 2014).

라. 영국

□ 아동학대 예방 관련법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국의 법의 연원은 1868년 빈민구제법(Poor Law Act)부터 살펴볼 수 있음.
- 이후 1886년 제정된 유아후견법(Guardianship of Infants Act)은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라는 전통적인 사상에서 나아가 어머니의 권리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버지가 사망한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그 자녀에 대하여 21세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을 갖도록 하는 등의 오늘날에 비하면 제한된 내용이었음(송수진, 2016).
 - 오늘날 영국에서 아동에 관한 기본법은 1989년 제정된 아동법(Children Act)으로 이 법은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부모뿐 아니라 공공 기관, 지역 아동보호 당국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음(송수진, 2016; 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6).
 - 그러나 이 법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는 아동의 복지가 가장 중요하기에 아동이 가정을 최대한 유지하고, 부모와 가족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협의를 통한 아동보호의 원칙을 세우고 있음(송수진, 2016; 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6).
 - 다만 아동이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아동을 가정에서 퇴거시킬 수 있음(송수진, 2016; 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6).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

- 보육기관, 병원에서 학대의 흔적을 발견하였음에도 클림비를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클림비(Victoria Climbie) 사건을 계기로 2004년 아동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부서(Social Service Department)가 아동서비스 부서(Children's Services Department)로 바뀌는 등 아동보호체계가 강화됨(Laming, 2003).
 - 아동학대 문제를 사후 대책을 중심으로 한 접근에서 조기에 개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함(송수진, 2016).

- 지역사회와 민관이 협력하여 아동 보호문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5).
 - 1884년에 세워진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이하 NSPCC)라는 자선단체도 아동학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5).
 - 영국 정부는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이하 Working Together)을 마련하여 아동보호 당국, 경찰, NSPCC 등의 기관들과, 보건 당국, 각급 학교, 보육 기관, 성인 사회복지 관청, 주택 관청, 교정 당국, 이민 당국, 아동 및 가정법원, 군 당국, 자원봉사 및 민간 영역, 종교 단체와 같은 다양한 관련 기관 간에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5).
 - 모든 지방자치단체마다 의무적으로 아동학대로 고통 받고 있거나 고통 받을 위기에 처한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역의 아동 보호 위원회인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이하 LSCB)를 세워 상호 협력함(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2011).
- 지역의 아동보호 당국에 접수된 사례는 반드시 24시간 안에 다음 조치 단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다음의 절차를 취함(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5).
 - 정해진 시간 동안 아동이 보호당국의 개입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종류의 지원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5).
 - 보다 엄정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아동의 발달적 요구, 부모의 역량, 가정과 환경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함(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5).
- 아동의 발달과정, 문해 능력, 아동과 그 가족의 건강을 위해 Sure Start Center를 설치함(Ritchie, 2016).
 - Sure Start Center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부모에게 문제

가 있는 경우 이를 발견해 복지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가장 영향력 있는 서비스는 부모교육임(Ritchie, 2016).

□ 유아교육·보육 기관에서의 학대방지 대책⁶⁾

- 지역의 LSCB에 참여하여 해당 기관의 아동이나 그 부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지역의 아동보호 당국, 치안 당국, 보건 당국, 및 다양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를 공유함.
- 어린이집에서는 신입교사들이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직접 현장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 직원들은 범죄경력 등을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를 통해 모두 조회 받고 채용함.
- 어린이집에 머무는 동안 아동이 다친 것이 확인이 되면 무조건 보고해야 하며, 가정에서 자녀가 다친 경우에도 기관에 그 경위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 가정에서 아동학대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함.
- 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은 아동과 단 둘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 함.

마. 독일

□ 아동학대 예방 관련법

- 독일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형법과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에서 규정함.
 - 형법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호자에 의한 피보호자에 대한 학대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괴롭히거나 학대를 가한 경우, 보호의 의무를 악의적으로 태만히 행한 경우, 그리고 부양, 보호 및 교육의무를 위반하여 피보호자의 신체 및 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입힌 경우를 포함함(송수진, 2016).
 - 1991년에 시행된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은 2005년 개정을 통해 청소년청(Jugendamt)이 아동학대예방조치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

6) 해당 부분은 '영국 런던 소재 어린이집(House of Commons Nursery) 책임자인 Anjali와의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양영임, 2016). 아동의 복리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만 있다면 청소년청이 직접 가정에 개입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청소년청과 협력하여 부모를 지원하고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초기에 개입할 수 있음(양영임, 2016).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

- 독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는 청소년청(Jugendamt)이 있음.
 - 청소년청은 청소년복지위원회(youth welfare committee, JHA)와 행정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모와 법적 보호자에게 예방적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 청소년청은 모두 독립되어 있어서 위계적으로 중앙조직이나 상부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예산을 모두 책임짐(Dreber, 2009).
 - 청소년청의 아동보호를 위한 역할은 아동보호, 가족 상담, 별거 및 이혼 상담, 보호자 및 관리자 지정, 양육 지원, 입양 배정 등임(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 유아교육·보육 기관에서의 학대방지 대책⁷⁾

-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 대상 교사교육을 실시함.
 - 독일의 교사들은 모두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법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있음. 예비교사교육 시에 6개월간 이러한 법에 관한 내용을 배우며, 이를 가르치는 강사는 변호사임.
 - 현직교사 대상 법에 대한 세미나 혹은 연수(14주)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 달연수를 실시함.
- 교사들은 시에서 배포한 아동 보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아동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 어떻게 아이들 보호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음.
 - 자료는 주로 아동 보호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아동학대 징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7) 해당 부분은 '독일 베를린 소재 유치원(kiddies international) 교사인 Yana와의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 기관에서 아동학대 발견 시의 절차는 1) 교사가 징후 발견, 2) 학급 내 다른 팀 교사(모든 학급마다 3명의 교사)에게 말함, 3) 주임교사에게 말함, 4) 교사 모두가 그 건에 대해 토론(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판단), 5) 모든 상황에 대해 문서(주에서 준 양식으로 독일 내 16개주가 모두 양식을 가지고 있음) 작성, 6) 유치원 운영 회사에 보고, 7) 이 모든 상황을 부모에게 알림(함께 해결책을 찾거나 안 되면 청소년청에 의뢰).
-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고할 수 있음. 교사는 3년마다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을 갱신하며, 이 때 원장이 양식을 통해 경찰에게 해당 교사는 아무 일이 없었음을 보고해야만 자격 갱신이 가능함.

Ⅲ. 학부모와 교사의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

- 본 장에서는 영유아 학대 및 실태, 의견 등에 대하여 영유아 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 주로 유의성이 나타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함.

1. 학부모의 인식

- 조사 대상자의 특성
- 총 조사 대상 영유아 부모는 1,139명이었으며 배경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III-1-1〉 조사 대상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139)	100.0	전체	(1,139)	100.0
응답자			영유아 구분		
어머니	(720)	63.2	영아	(427)	37.5
아버지	(419)	36.8	유아	(712)	62.5
지역규모			재원기관		
대도시	(552)	48.5	어린이집	(883)	77.5
중소도시	(397)	34.9	유치원	(256)	22.5
읍면지역	(190)	16.7	가구소득		
모 취업여부			265만원 미만	(160)	14.0
모 취업	(588)	51.6	265~370만원 미만	(304)	26.7
모 미취업	(486)	42.7	370~480만원 미만	(252)	22.1
해당없음(편부 등)	(65)	5.7	480만원 이상	(423)	37.1
장애 및 질병여부			학력		
있음	(25)	2.2	고졸이하	(74)	6.5
없음	(1,114)	97.8	전문대졸	(222)	19.5
가정 형태			대졸	(683)	60.0
한부모가정	(94)	8.3	대학원졸 이상	(160)	14.0
다문화가정	(12)	1.1	보조양육자 유무		
재혼가정	(7)	0.6	있음	(391)	34.3
해당없음	(1,026)	90.1	없음	(748)	65.7

□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정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정도는 7점 척도 중 3.8점으로 보통에서 조금 더 심각한 편이라고 인식함.
-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 순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함.

〈표 III-1-2〉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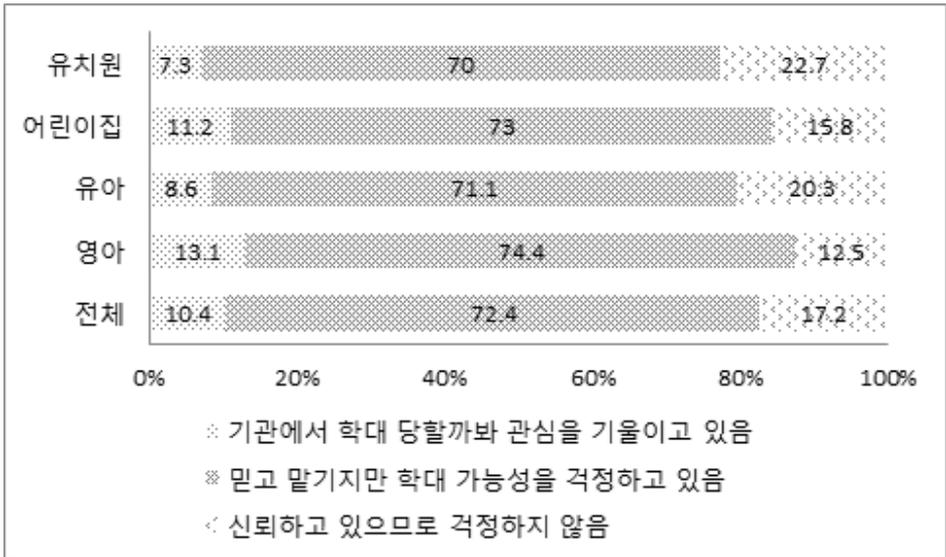
구분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	1.72	4.5	1.58	4.2	1.50	(1,139)
영유아							
영아	3.8	1.74	4.6	1.58	4.4	1.50	(427)
유아	3.7	1.70	4.4	1.58	4.1	1.48	(712)
t	0.72		1.99*		3.92***		
재원 기관							
어린이집	3.8	1.71	4.6	1.56	4.4	1.46	(883)
유치원	3.6	1.72	4.2	1.66	3.7	1.53	(256)
t	-1.72		-2.72**		-5.85***		
모취업							
취업	3.8	1.71	4.5 ^a	1.58	4.2	1.50	(588)
미취업	3.8	1.71	4.6 ^a	1.54	4.3	1.47	(486)
해당없음(편부 등)	3.2	1.69	3.8 ^b	1.73	3.8	1.66	(65)
F	3.01		5.10**		1.80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4.2 ^a	1.78	4.7 ^a	1.60	4.5 ^a	1.51	(74)
전문대졸	3.9	1.69	4.6	1.73	4.4	1.64	(222)
대졸	3.8	1.71	4.5	1.54	4.2	1.45	(683)
대학원졸 이상	3.5 ^b	1.71	4.2 ^b	1.50	4.0 ^b	1.44	(160)
F	3.72*		3.32*		3.55*		

* $p < .05$, ** $p < .01$, *** $p < .001$

주: 1)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성이 높음을 나타냄.

2) Scheffe 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시 믿고 맡기지만 학대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신뢰하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비율, 기관에서 학대 당할까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응답 순이었음.
- 기관에서 학대를 당할까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응답은 영아가 유아보다,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남.



[그림 Ⅲ-1-1] 자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시 아동학대 우려 사항

-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시 아동학대를 우려해서 하원 이후 아이 몸을 탐색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하원 이후 아이표 정 살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질문하고, 상황에 따라 CCTV 열람한다는 응답 순이었음.

<표 Ⅲ-1-3> 자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시 아동학대 우려 관련 행동

단위: %(명)

구분	하원 이후 아이 몸 탐색	하원 이후 아이 표정 살핌	유치원 / 어린이집 일을 질문	상황에 따라 CCTV 열람	(수)
전체	76.2	61.3	60.8	16.1	(121)
영유아					
영아	72.9	51.3	71.9	22.4	(57)
유아	79.5	71.6	49.4	9.7	(64)
재원 기관					
어린이집	75.9	59.9	63.2	17.2	(102)
유치원	77.7	69.9	46.4	9.5	(19)

주: 중복응답 결과임.

□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 가정에서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는 경험 비율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적은 월 1회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대체로 매우 특수

한 상황에서만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4〉 가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동 경험

단위: %(명)

구분	경험 있음	빈도				지속성		계(수)
		월 1회 미만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회 이상	대체로 지속적 으로	매우 특수한 상황 에서만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62.7	65.7	18.6	12.2	3.5	4.7	95.3	100.0(711)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리는 행위	26.7	59.9	23.7	11.4	4.9	7.9	92.1	100.0(308)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11.5	68.4	17.8	10.0	3.8	8.4	91.6	100.0(130)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 외의 곳을 때린 행위	7.8	61.0	27.2	4.9	6.9	11.6	88.4	100.0(90)
아이를 잡고 흔든 행위	7.4	80.9	15.3	2.0	1.9	6.7	93.3	100.0(85)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 머리, 귀, 등을 때린 행위	5.3	81.4	4.7	7.7	6.1	7.7	92.3	100.0(58)
아이를 꼬집는 행위	5.1	69.5	17.6	9.3	3.6	14.8	85.2	100.0(59)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힌 행위	1.2	94.1	-	5.9	-	7.2	92.8	100.0(14)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행위	0.7	83.8	-	16.2	-	28.3	71.7	100.0(8)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지른 행위	59.7	38.6	22.9	23.9	14.6	25.4	74.6	100.0(687)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행위	25.7	47.9	25.5	18.6	8.0	18.3	81.7	100.0(296)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한 행위	21.6	63.6	21.9	11.2	3.2	9.8	90.2	100.0(248)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붓는 행위	10.4	55.6	27.5	10.6	6.3	12.5	87.5	100.0(78)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갈등상황을 보여주는 행위	10.4	71.5	20.6	4.8	3.1	10.5	89.5	100.0(428)
아이에게 애정표현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행위	1.4	43.5	6.5	17.2	32.8	41.2	58.8	100.0(15)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행위	5.6	34.3	25.1	21.6	19.0	45.9	54.1	100.0(62)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몸을 만지는 행위	1.2	54.0	35.8	10.2	-	23.9	76.1	100.0(13)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1.0	55.7	28.8	15.5	-	24.1	75.9	100.0(12)
아이에게 강제로 몸을 만져달라고 말하는 행위	0.1	100.0	-	-	-	-	100.0	100.0(1)
아이를 혼자 집 혹은 고립된 장소에 있게 한 행위	3.4	71.6	15.8	6.4	6.2	5.3	94.7	100.0(40)
술, 약물, 컴퓨터, 핸드폰에 중독되어 아이를 돌보는데 문제가 있는 행위	1.6	37.3	27.4	24.9	10.4	37.6	62.4	100.0(19)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행위	1.2	48.8	35.1	8.3	7.8	15.2	84.8	100.0(15)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0.3	34.0	66.0	-	-	-	100.0	100.0(3)

- 성학대의 경우에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낮았으나 대체로 지속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행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영유아에게 가정에서 학대 (의심) 행위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1%가 아이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날 때라고 응답함.

〈표 III-1-5〉 영유아에게 가정에서 학대 (의심) 행동을 주로 하는 경우 상황

단위: %(명)

구분	내 마음이 우울할 때	아이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날 때	이유 없이 화가 날 때	해야 할 일이 많아 짜증이 날 때	아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 못할 때	술을 마셨을 때	훈육하기 위해서	기타	(수)
전체	7.2	84.1	1.6	13.4	9.0	0.5	2.4	7.6	(975)

주: 중복응답 결과임.

- 영유아에게 가정에서 학대 행위 상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전체 응답자의 78.8%가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평상시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한다가 55.6%로 나타남.

〈표 III-1-6〉 영유아에게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주로 하는 경우 이 상황을 줄이기 위한 노력

단위: %(명)

구분	평상시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함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조절함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함	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	중독을 예방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함	술을 자제하려고 노력함	기타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못함/안함	(수)
전체	55.6	50.4	78.8	6.1	0.9	0.9	3.4	1.5	(975)

주: 중복응답 결과임.

-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해당 기관의 가정방문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5%가 제출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 37.1%, 제출하지 않았다는 응답 20.4%로 나타남.

〈표 III-1-7〉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해당 기관의 가정방문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제출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모르겠음	계(수)
전체	42.5	20.4	37.1	100.0(1,139)
영유아				
영아	36.8	22.3	40.9	100.0(427)
유아	46.4	19.1	34.5	100.0(712)
X ² (df)		10.14(2)**		
재원 기관				
어린이집	37.6	23.5	38.9	100.0(883)
유치원	61.9	8.3	29.8	100.0(256)
X ² (df)		53.8(2)***		
지역규모				
대도시	38.2	23.0	38.8	100.0(552)
중소도시	43.5	16.5	40.0	100.0(397)
읍면	48.5	23.1	28.4	100.0(190)
X ² (df)		13.68(4)**		
모취업 여부				
취업	43.7	22.7	33.6	100.0(588)
미취업	40.2	17.8	42.0	100.0(486)
해당없음(편부 등)	49.1	19.6	31.3	100.0(65)
X ² (df)		9.56(4)*		

* $p < .05$, ** $p < .01$, *** $p < .001$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시 학대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는지 여부와 각 행동의 학대 인식에 대해서 질문함.
 - 신체학대의 모든 행동이 평균 3.8점 이상으로 나와 학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음. 목격한 비율은 영유아의 머리카락이나 몸 등을 손이나 팔, 다리로 미는 행동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정서적 학대 중 영유아가 상처 받을만한 심한 말이나 욕을 하는 것과 말 안 듣는 영유아에게 간식이나 점심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행동에 대하여 학대 인식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목격 여부는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이 가장 높음.
 - 성 학대에서는 모든 행동의 학대 인식이 평균 3.9점 이상으로 나타나 학대로 인식함.
 - 방임 행동 중 학대인식 중 기저귀나 옷이 더러워졌는데 장시간 두는 행

동이 가장 높았음. 방임은 정서적 학대와 더불어 목격 비율이 높음.

〈표 III-1-8〉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 시 학대 의심 행동에 대한 인식 및 이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는지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학대 인식					평균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음	계(수)
	전혀 학대가 아님	별로 학대가 아닌 것 같음	대체로 학대인 것 같음	확실한 학대임				
영유아의 몸이나 머리를 잡고 심하게 혼드는 행동	0.1	0.8	6.8	92.4	3.9	4.4	100.0(1,139)	
얼굴, 뺨, 등관 등을 손이나 팔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	0.1	0.4	5.5	94.0	3.9	4.3	100.0(1,139)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0.2	0.8	5.5	93.5	3.9	3.9	100.0(1,139)	
영유아의 머리나 몸 등을 손이나 팔, 다리로 미는 행동	0.2	1.9	19.6	78.3	3.8	6.6	100.0(1,139)	
영유아가 상처 받을만한 심한 말이나 욕을 하는 것	0.1	0.6	10.2	89.2	3.9	7.0	100.0(1,139)	
말 안 듣는 영유아에게 간식이나 점심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행동	-	2.5	19.3	78.2	3.8	8.0	100.0(1,139)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	0.2	5.2	38.1	56.5	3.5	18.4	100.0(1,139)	
영유아가 하고 싶어 하는 놀이나 활동을 고의적으로 못하게 하는 행동	0.4	10.8	41.0	47.8	3.4	10.5	100.0(1,139)	
교사가 영유아에게 또래끼리 서로의 몸이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도록 시키는 행동	0.1	0.7	3.0	96.1	4.0	0.9	100.0(1,139)	
영유아가 거부하는데도 몸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행동	0.2	0.8	5.3	93.8	3.9	1.6	100.0(1,139)	
영유아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교사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	0.4	0.3	3.1	96.1	3.9	1.4	100.0(1,139)	
기저귀나 옷이 더러워졌는데 장시간 그냥 두는 행동	0.1	5.1	31.6	63.3	3.6	11.5	100.0(1,139)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행동	0.4	6.9	40.5	52.3	3.4	14.1	100.0(1,139)	
특정 공간에 장시간(10분 이상) 혼자 있게 하는 행동	0.6	11.4	48.4	39.7	3.3	9.8	100.0(1,139)	
영유아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해주지 않는 행동	0.4	11.6	53.3	34.7	3.2	11.9	100.0(1,139)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인식도가 높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학대의심 행위의 대상 아동은 다른 아동이 61.3%로 가장 많았으며, 내 자녀 20.8%, 둘 다 해당하는 비율은 17.9%임.

〈표 III-1-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학대 의심 행위의 대상 아동

				단위: %(명)
구분	내 자녀	다른 아동	둘 다 해당	계(수)
전체	20.8	61.3	17.9	100.0(390)
영유아				
영아	20.9	67.8	11.3	100.0(126)
유아	20.7	57.6	21.6	100.0(264)
X ² (df)		6.95(2)*		
보조양육자				
있음	27.3	53.7	19.0	100.0(128)
없음	17.6	65.0	17.4	100.0(262)
X ² (df)		6.07(2)*		

* $p < .05$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조치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는 영아 부모,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읍면 지역인 경우, 취업하지 않은 경우, 가구소득이 370~480만원인 경우, 고졸 이하의 경우,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I-1-1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조치 사항

										단위: %(명)
구분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함	가해 교사나 원장에 항의함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함	피해아 동의 부모에게 알림	언론사나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게시함	전문기관 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내 자녀/피해아 동을 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기타	(수)
전체	8.0	27.6	16.3	15.7	4.3	3.3	28.5	28.6	4.9	(390)
영유아 구분										
영아	10.5	27.2	16.0	19.0	5.8	5.9	27.0	29.4	2.6	(126)
유아	6.6	27.8	16.4	13.8	3.5	1.8	29.4	28.1	6.2	(264)
재원 기관										
어린이집	8.3	29.1	16.3	15.3	4.5	3.4	29.8	27.5	3.7	(287)
유치원	7.3	22.6	16.2	16.9	3.8	2.7	24.4	32.3	8.8	(103)
지역규모										
대도시	6.5	32.8	15.4	15.7	3.9	2.9	29.4	29.2	4.6	(184)
중소도시	11.2	24.8	20.7	14.7	4.6	3.9	25.5	25.9	7.4	(130)
읍면	5.4	23.9	10.7	17.3	4.5	2.9	32.0	31.9	1.4	(76)

(표 III-1-10 계속)

구분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함	가해 교사나 원장에 계 항의함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함	피해아 동의 부모에게 알림	언론사나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게시함	전문기관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내 자녀/피해아 동을 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기타	(수)
모취업 여부										
취업	9.5	26.4	19.3	18.8	6.1	3.8	25.4	25.6	4.3	(185)
미취업	6.3	27.1	13.3	14.3	2.3	1.7	32.0	31.2	5.8	(178)
해당없음(편부 등)	9.5	38.6	14.6	3.1	4.7	9.7	27.2	31.8	2.8	(27)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8.5	24.5	15.7	11.1	5.0	-	29.6	28.8	3.7	(51)
265~370만원 미만	7.6	22.6	19.7	11.7	2.4	4.6	32.2	31.1	3.1	(115)
370~480만원 미만	6.8	21.0	15.6	16.6	5.5	3.6	26.8	32.1	3.5	(76)
480만원 이상	8.8	36.0	14.1	20.1	5.0	3.2	26.1	24.7	7.5	(148)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4.1	39.4	19.9	17.0	-	-	15.5	33.1	10.3	(18)
전문대졸	9.5	21.0	12.6	18.5	4.7	2.9	29.7	30.8	3.4	(70)
대졸	5.8	29.5	17.1	15.3	5.6	4.4	28.9	26.6	6.2	(242)
대학원졸 이상	16.4	24.7	16.3	13.1	-	-	29.2	32.5	-	(60)
보조양육자 여부										
있음	8.8	25.7	12.7	17.5	5.2	3.5	33.2	30.6	2.2	(128)
없음	7.7	28.5	18.0	14.8	3.9	3.1	26.3	27.6	6.2	(262)

주: 중복응답 결과임.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의 1순위는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가 48.1%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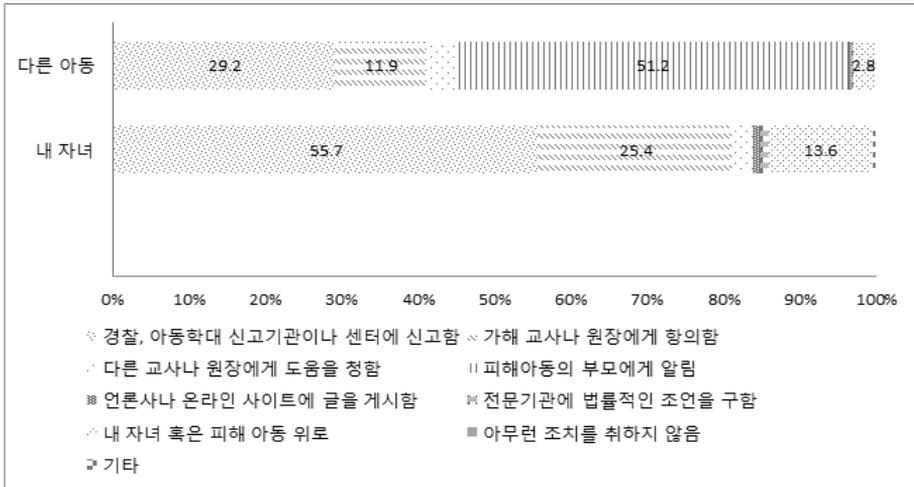
〈표 III-1-1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	보육/교육은 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해당 교사의 보육이나 비난 등 해당 아동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관)를 알지 못해서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1순위	48.1	1.7	10.8	2.3	1.1	15.6	15.3	100.0(112)
2순위	16.6	14.3	9.3	9.9	8.8	32.4	6.6	100.0(112)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조치사항 1순위는

내 자녀일 경우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한다는 응답비율이 **55.7%**로 가장 높았고, 다른 아동일 경우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알린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았음.



[그림 Ⅲ-1-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조치사항

- 아동학대 관련 생각 동의정도에 대한 질문 결과, ‘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 ‘사람의 매가 존재함’, ‘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한다는 동의 정도가 4점 척도에서 **2.6**점으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1-12>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구분	단위: 점(명)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2.6	2.4	2.6	2.6	2.4	2.2	2.3	2.3	(1,139)
영유아									
영아	2.6	2.5	2.6	2.6	2.3	2.2	2.3	2.3	(427)
유아	2.6	2.4	2.6	2.6	2.4	2.2	2.3	2.3	(712)
t	0.70	3.46**	-0.33	-0.73	-0.62	-0.26	-0.69	-0.09	
모취업 여부									
취업	2.6	2.4 ^a	2.6 ^a	2.6 ^a	2.3 ^a	2.2 ^a	2.3 ^a	2.3 ^a	(588)

(표 III-1-12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수)
미취업	2.5 ^a	2.4 ^a	2.6 ^a	2.6 ^a	2.3 ^a	2.1 ^a	2.3 ^a	2.2 ^a	(486)
해당없음(편부 등)	2.8 ^b	2.7 ^b	3.0 ^b	2.9 ^b	2.7 ^b	2.6 ^b	2.6 ^b	2.5 ^b	(65)
F	3.52 [*]	5.74 ^{**}	9.29 ^{***}	8.25 ^{**}	7.08 ^{**}	11.19 ^{***}	6.80 ^{**}	4.79 [*]	

* $p < .05$, ** $p < .01$, *** $p < .001$

- 주: 1) ①'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라는 생각, ②'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 ③'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 ④'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 ⑤'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 ⑥'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 ⑦'이 정도가 아동학대?'라는 생각, ⑧'왜 아이가 말을 안 할까? 학대가 아닌 건가?'라는 생각
 2)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
 3) Scheffe 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아동학대 관련 교육 정도

- 아동학대 관련 지식이나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한 질문 결과, TV 등 언론을 통해서 얻는다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관련 책 순으로 나타남.
- 부모 배경별로 유아 부모인 경우,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읍면지역인 경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가구소득이 370~480만원인 경우, 전문대졸인 경우, 보조 양육자가 없는 경우가 TV 등 언론 통해서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I-1-13> 아동학대 관련 지식이나 정보 획득 경로

구분	단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전체	92.4	77.9	17.7	26.1	5.7	2.7	3.5	4.3	5.4	2.3	1.9	(1,139)
영유아												
영아	89.9	73.7	19.0	21.0	6.9	3.2	4.4	5.6	4.8	2.0	3.1	(427)
유아	94.0	80.8	16.9	29.6	4.8	2.4	2.9	3.5	5.8	2.4	1.1	(712)
재원 기관												
어린이집	91.7	77.3	18.8	25.6	6.1	2.8	4.1	4.9	5.0	2.3	2.0	(883)
유치원	94.8	80.5	13.6	28.4	4.1	2.4	1.1	1.9	7.0	2.2	1.5	(256)
지역규모												
대도시	90.5	75.6	18.4	24.1	6.9	2.9	3.5	4.7	5.6	3.2	2.4	(552)
중소도시	92.9	79.1	17.9	25.0	5.4	2.8	3.1	3.1	3.4	2.3	1.3	(397)
읍면	94.7	79.9	16.1	32.0	3.8	2.2	4.2	5.9	8.6	0.5	2.1	(190)
모취업												
취업	92.9	77.4	19.1	29.0	6.5	3.7	4.7	4.5	6.6	2.0	1.8	(588)
미취업	91.8	79.2	16.3	22.8	3.8	0.9	1.7	3.0	3.6	2.8	2.1	(486)
해당없음(편부 등)	91.8	73.3	16.4	25.0	11.8	7.7	5.0	12.6	7.5	-	1.3	(65)

(표 III-1-13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93.2	79.4	14.5	27.7	2.6	1.3	1.4	5.2	5.3	3.7	1.6	(160)
265~370만원 미만	90.3	75.0	14.9	22.4	4.8	1.2	1.5	3.3	5.8	1.7	3.6	(304)
370~480만원 미만	96.3	77.4	16.4	23.1	7.3	3.7	5.4	5.5	4.4	3.6	1.3	(252)
480만원 이상	91.2	79.8	21.9	30.1	6.6	3.8	4.6	4.0	5.7	1.3	1.2	(423)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91.5	73.4	10.9	38.0	4.4	0.9	-	2.5	1.5	3.6	5.4	(74)
전문대졸	94.6	76.9	12.0	21.9	2.8	1.0	2.4	4.5	4.2	1.3	2.8	(222)
대졸	91.9	78.5	20.0	26.8	6.8	3.7	4.2	4.9	6.4	2.2	1.4	(683)
대학원졸 이상	91.4	79.0	19.4	24.1	5.7	1.8	3.6	2.4	4.7	3.1	1.3	(160)
보조양육자												
있음	91.5	79.4	18.2	29.2	6.1	3.1	3.6	4.8	6.6	2.5	1.6	(391)
없음	92.8	77.2	17.5	24.6	5.4	2.5	3.4	4.1	4.7	2.2	2.0	(748)

주: 1) ① TV 등 언론, ② 인터넷, ③ 관련 책, ④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⑤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⑥ 유아교육진흥원의 부모교육, ⑦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부모교육, ⑧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모교육, ⑨ 기타 공공기관에서의 부모교육, ⑩ 기타, ⑪ 특별한 관련 정보나 지식을 얻은 적이 없음

2) 중복응답 결과임.

- 육아기간 중 받은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횟수에 대한 질문 결과 1회 뿐 임이 절반 이상이었음.

〈표 III-1-14〉 육아기간 중 받은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횟수

구분	단위: %(명)				계(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58.2	18.9	6.5	16.4	100.0(363)

- 아동학대 교육 1회당 교육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 1시간 미만이 절반 정도 로 나타남.

〈표 III-1-15〉 1회당 평균 교육시간

구분	단위: %(명)				계(수)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시간 이상	
전체	49.5	45.3	3.9	1.3	100.0(363)

- 수강한 영유아학대 예방교육 효과 정도에 대한 질문에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II-1-16〉 수강한 영유아학대 예방교육의 효과 정도

단위: %(명)

구분	큰 효과가 있었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	별 다른 효과가 없었음	전혀 효과가 없었음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25.0	57.6	13.0	0.9	3.5	100.0(363)

- 영유아 학대 관련 부모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의 1순위는 영유아 기질에 따른 행동 특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영유아 발달특성, 아동인권 순이었음.

〈표 III-1-17〉 영유아 학대 관련 부모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

단위: %(명), N=1,139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계
1순위	18.8	29.7	11.7	10.1	10.0	2.9	5.1	4.1	2.5	3.3	0.4	0.8	0.4	0.1	100.0
2순위	6.7	21.6	6.7	9.0	15.6	6.7	11.2	7.1	4.9	7.1	1.2	1.4	0.7	0.1	100.0
3순위	5.5	9.9	6.2	8.0	13.7	6.4	11.9	9.1	11.5	9.6	2.8	2.1	3.4	-	100.0

주: ①영유아 발달 특성, ②영유아 기질에 따른 행동 특성, ③아동 인권, ④부모됨의 가치, ⑤ 영유아 양육방법, ⑥부모 우울증 해소 방법, ⑦화를 다루는 법, ⑧부부 및 가족 관계, ⑨ 피해아동 발견 후 대처방법, ⑩아동학대의 영향 및 결과, ⑪아동학대 지원 기관 관련 정보 소개, ⑫아동학대 관련 법률, ⑬아동학대 관련 정부의 지원 정책, ⑭기타

□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의 1순위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였고, 다음으로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부족, 교사의 성격이나 정신건강 문제 순임.

〈표 III-1-18〉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단위: %(명), N=1,139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1순위	41.7	1.5	27.7	16.0	6.0	4.3	1.1	0.8	0.7	0.2	100.0
2순위	13.6	3.0	26.3	19.9	14.3	13.3	3.6	3.8	2.2	-	100.0
3순위	14.3	3.5	11.6	14.4	15.0	17.9	5.9	11.5	5.5	0.4	100.0

주: ①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②원장이나 교사들 간의 갈등, ③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부족, ④교사의 성격이나 정신건강 문제, ⑤영유아 발달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 ⑥학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 ⑦아동의 기질 및 행동 문제, ⑧ 기관 차원의 관리 및 모니터링 부족, ⑨정책적 지원의 부족, ⑩기타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는 교사양성과정 강화(인성교육 등)가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인력 확충, 교사 처우개선 순임.

〈표 III-1-1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계(수)
전체	22.7	28.7	13.3	4.3	4.5	0.7	7.6	2.0	7.6	1.3	2.5	0.7	3.8	0.2	100.0(1,139)
영아	27.7	24.1	14.0	5.4	3.5	0.4	6.7	3.1	8.9	1.1	1.9	0.4	3.0	-	100.0(427)
유아	19.3	31.9	12.8	3.6	5.2	1.0	8.2	1.3	6.8	1.5	2.9	0.9	4.3	0.3	100.0(712)
$X^2(df)$	28.93(13)**														

** $p < .01$

주: ①유치원/어린이집 인력 확충, ②교사양성과정 강화(인성교육 등), ③교사 처우 개선, ④아동학대 관련 전문요원 양성, ⑤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실시, ⑥신고의무제 강화, ⑦기관 내 CCTV 설치, ⑧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⑨학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강화, ⑩학대 원장 및 학대 교사 명단 공개, ⑪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 관련 상담 강화, ⑫영유아 정서 및 행동문제 평가 및 상담, ⑬교사의 인·적성 검사 강화, ⑭기타

-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질문 결과, 양육 스트레스가 42.6%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부부 및 가족 갈등 15.4%,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 8.8%,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8.4% 순임.
- 영아 부모는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에 대해, 유아 부모는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문제에 대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I-1-20〉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전체	42.6	7.0	15.4	8.8	1.7	3.5	8.4	6.5	5.4	0.6	0.1	100.0(1,139)
영유아												
영아	47.7	7.9	13.7	9.6	1.6	2.8	6.0	5.4	4.4	0.8	0.2	100.0(427)
유아	39.1	6.4	16.5	8.2	1.8	3.9	10.0	7.3	6.1	0.5	-	100.0(712)
$X^2(df)$	21.04(10)*											
재원 기관												
어린이집	44.5	7.5	15.4	8.4	1.4	3.2	8.2	5.8	4.8	0.8	0.1	100.0(883)
유치원	35.2	5.2	15.5	10.4	2.8	4.6	9.1	9.3	7.9	-	-	100.0(256)
$X^2(df)$	21.51(10)*											

* $p < .05$

주: ①양육스트레스, ②사회·경제적 스트레스, ③부부 및 가족갈등, ④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⑤중독(술, 도박, 게임 등) 문제, ⑥자녀의 기질 및 행동 문제, ⑦양육지식 및 기술의 부족, ⑧훈육과 학대의 차이에 대한 무지, ⑨부모 역할에 대한 무지, ⑩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⑪기타

-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로 양육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지원이라는 응답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 25.9%,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홍보 16.4% 순임.

〈표 III-1-21〉 가정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

구분	단위: %(명)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25.9	16.4	41.5	8.8	4.4	2.7	0.3	100.0(1,139)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28.8	15.3	39.6	12.3	2.1	2.0	-	100.0(160)
265~370만원 미만	19.2	12.8	50.7	10.2	5.6	1.4	-	100.0(304)
370~480만원 미만	35.3	16.1	37.9	5.6	2.6	2.1	0.5	100.0(252)
480만원 이상	24.1	19.7	37.7	8.3	5.5	4.3	0.4	100.0(423)
X ² (df)	42.60(18) ^{***}							

*** $P < .001$

주: 1) ①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 ②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홍보, ③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 ④기타 문제(가족 갈등 등)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⑤아동학대 관련 법규 홍보, ⑥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⑦기타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남의 가정의 일이고 부모의 양육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아동학대라는 확신이 없어서 순임.

〈표 III-1-22〉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구분	단위: %(명)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1.8	28.3	4.3	14.3	34.2	16.6	0.5	100.0(1,139)

주: 1) ①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신고를 하는 것이 귀찮아서, ②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③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라서, ④신고 시 신분이 노출되어 보복이나 비난을 당할까 두려워서, ⑤남의 가정의 일이고 부모의 양육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⑥아동학대라는 확신이 없어서, ⑦기타

□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및 요구

-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한 질문 결과, 아동학대 발생 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 4점 척도 중 2.5점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음. 반면 아동학대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1.7점으로 가장 낮았음.

-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에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

〈표 III-1-23〉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

단위: 점(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전체	2.1	2.5	1.9	1.7	2.1	1.9	2.3	2.2	2.1	2.2	2.2	(1,139)
영유아												
영아	2.2	2.5	1.9	1.8	2.1	1.9	2.3	2.2	2.2	2.2	2.2	(427)
유아	2.1	2.4	1.8	1.7	2.1	1.8	2.3	2.2	2.1	2.2	2.2	(712)
t	1.03	0.49	1.13	2.37*	0.45	1.93	0.60	1.34	0.99	0.50	-0.55	
지역규모												
대도시	2.1	2.5	1.9	1.7	2.1	1.9	2.2	2.2	2.1	2.1	2.2	(552)
중소도시	2.2	2.4	1.8	1.7	2.0	1.9	2.3	2.2	2.1	2.2	2.2	(397)
읍면	2.1	2.5	1.9	1.7	2.2	1.8	2.4	2.3	2.2	2.3	2.4	(190)
F	0.21	0.04	0.24	0.66	2.04	0.05	1.53	1.09	1.90	3.22*	3.32*	
모취업 여부												
취업	2.1	2.5	1.9	1.7 ^a	2.1	1.9	2.3	2.2	2.2	2.2	2.2	(588)
미취업	2.1	2.4	1.8 ^a	1.6 ^a	2.1	1.8 ^a	2.2	2.2	2.1	2.1	2.2	(486)
해당없음(편부 등)	2.3	2.5	2.1 ^b	2.1 ^b	2.3	2.1 ^b	2.4	2.3	2.2	2.3	2.3	(65)
F	1.20	0.12	5.70**	9.05***	1.76	4.45*	0.77	1.16	1.35	1.58	0.38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1.9	2.5	1.6 ^a	1.4 ^a	2.0	1.6 ^a	2.2	2.1	1.9	1.9	2.2	(74)
전문대졸	2.0	2.4	1.7 ^a	1.6 ^a	2.0	1.7 ^a	2.1	2.1	2.0	2.1	2.3	(222)
대졸	2.2	2.5	1.9 ^b	1.8 ^b	2.1	1.9 ^b	2.3	2.2	2.2	2.2	2.2	(683)
대학원졸 이상	2.2	2.5	2.0 ^b	1.8	2.1	1.9	2.3	2.2	2.1	2.3	2.2	(160)
F	3.49*	0.29	7.17**	5.40**	1.36	6.47**	2.29	1.03	2.96*	2.73*	0.15	

* $p < .05$, ** $p < .01$, *** $p < .001$

주: 1) ①유아 대상 체벌을 금지함, ②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유치원을 폐쇄함, ③유치원장/어린이집원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④아동학대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⑤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취업을 제한함, ⑥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로 기존에 3년 이상 유기징역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됨, ⑦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을 상실할 수 있음, ⑧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함, ⑨아이돌보미,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됨, ⑩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상담,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⑪2일 이상 무단 결석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실시해야 함

2)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정도가 높음.

〈표 III-1-24〉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지금 번호로 정확히 알고 있음	과거 번호로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계(수)
전체	5.2	1.1	93.7	100.0(1,139)

- 아동학대 발생 시 현재 신고번호(통합번호 112)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5.2%에 불과하였으며, 모르는 경우가 93.7%로 대부분이었고, 과거 번호

로 알고 있는 경우가 1.1%임.

-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후에 신고자나 피해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가 4점 척도 중 평균 2.6점으로 가장 높음. 반면 학대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2.1점으로 가장 낮음.

<표 III-1-25>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인지 정도

구분	단위: 점(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전체	2.1	2.4	2.4	2.5	2.3	2.6	2.5 (1,139)
영유아							
영아	2.2	2.5	2.4	2.5	2.2	2.6	2.5 (427)
유아	2.1	2.4	2.5	2.5	2.3	2.6	2.5 (712)
t	2.70**	2.20*	-0.46	-0.09	-0.65	-0.21	0.78
지역규모							
대도시	2.1	2.4	2.4 ^a	2.4 ^a	2.2 ^a	2.5 ^a	2.4 ^a (552)
중소도시	2.1	2.5	2.4 ^a	2.5	2.2	2.6	2.5 ^a (397)
읍면	2.2	2.5	2.6 ^b	2.6 ^b	2.4 ^b	2.7 ^b	2.7 ^b (190)
F	1.85	2.34	4.13*	3.48*	3.50*	4.17*	4.93**
모취업							
취업	2.2	2.5	2.5	2.5	2.3	2.6	2.5 (588)
미취업	2.1	2.4	2.4	2.5	2.3	2.5	2.5 (486)
해당없음	2.2	2.6	2.6	2.3	2.2	2.5	2.5 (65)
F	2.32	3.73*	3.79*	1.19	0.08	0.51	0.67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2.1	2.5	2.5	2.7	2.3	2.6	2.6 (160)
265-370만원 미만	2.1	2.5	2.5	2.4	2.2	2.5	2.5 (304)
370-480만원 미만	2.1	2.4	2.4	2.4	2.2	2.6	2.4 (252)
480만원 이상	2.2	2.5	2.5	2.5	2.3	2.6	2.5 (423)
F	0.50	0.52	0.66	3.55*	0.51	0.23	0.58

* $p < .05$, ** $p < .01$

주: 1) ①학대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②가능한 한 증거사진 등을 확보함, ③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함, ④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 ⑤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음, ⑥신고 후에 신고자나 피해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함, ⑦신고 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함

- 2)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음.
- 3) Scheffe 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에 대한 질문 결과,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과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90.6%로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표 III-1-26〉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 설치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도움이 될 것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도움이 안 될 것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평균	계(수)
전체	24.3	66.3	8.5	0.9	3.1	100.0(1,139)
영유아						
영아	28.2	61.9	8.9	1.0	3.2	100.0(427)
유아	21.6	69.3	8.2	0.9	3.1	100.0(712)
$X^2(df)/t$	7.95(3)*				1.64	
모취업 여부						
취업	24.3	66.0	8.7	0.9	3.1	100.0(588)
미취업	23.4	67.9	8.2	0.4	3.1	100.0(486)
해당없음(편부 등)	29.7	57.1	8.8	4.4	3.1	100.0(65)
$X^2(df)/F$	14.73(6)*				0.03	
보조양육자 여부						
있음	28.5	61.8	7.8	1.9	3.2	100.0(391)
없음	22.1	68.6	8.8	0.4	3.1	100.0(748)
$X^2(df)/F$	11.94(3)**				1.13	

* $p < .05$, ** $p < .01$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질문 결과,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CCTV를 열람하기 어렵기 때문 31.9% 순임.

〈표 III-1-27〉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CCTV를 열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녹화내용이 지워져서 제대로 확인 못하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기타	계(수)
전체	47.5	31.9	11.6	5.7	3.3	100.0(106)

-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은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라는 응답비율이 2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20.8%,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14.9%순임.

〈표 III-1-28〉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전체	20.8	14.0	4.7	4.8	26.5	3.7	14.9	2.3	8.0	0.2	100.0(1,139)
어린이집	21.6	14.0	5.2	5.0	26.9	3.4	14.8	2.2	6.9	-	100.0(883)
유치원	17.8	14.2	2.9	4.1	25.1	4.7	15.4	2.6	12.4	0.8	100.0(256)
$\chi^2(df)$	18.43(9)										

* $p < .05$

주: ①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②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③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④아동학대 신고자 신변 보호, ⑤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⑥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⑦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⑧지속적인 교사, 부모 상담 지원, ⑨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 강화, ⑩기타

2. 교사의 인식

□ 조사 대상자의 특성

- 교사 1,247명의 응답을 분석함.
 - 기관별로는 유치원 교사 395명, 어린이집 교사 852명이 응답하였고, 담당 영유아별로 영아반 교사 543명, 유아반 교사 704명이 응답함.
- 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III-2-1〉 조사 대상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247)	100.0	전체	(1,247)	100.0
기관 구분			학력		
유치원	(395)	31.7	고졸이하	(78)	6.3
어린이집	(852)	68.3	전문대졸	(531)	42.6
지역규모			대졸	(534)	42.8
대도시	(468)	37.5	대학원졸 이상	(104)	8.3
중소도시	(447)	35.8	연령		
읍면지역	(332)	26.6	29세 이하	(384)	30.8

(표 III-2-1 계속)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기관 상세 구분			30-39세	(433)	34.7
국공립단설유치원	(24)	1.9	40세 이상	(430)	34.5
공립병설유치원	(104)	8.3	경력		
사립사인유치원	(242)	19.4	2년 미만	(120)	9.6
사립법인유치원	(25)	2.0	2년 이상 5년 미만	(292)	23.4
국공립어린이집	(144)	11.5	5년 이상 10년 미만	(474)	38.0
민간어린이집	(278)	22.3	10년 이상	(361)	28.9
가정어린이집	(221)	17.7	담당 영유아		
직장어린이집	(87)	7.0	영아(만0~2세)	(543)	43.5
법인단체어린이집	(39)	3.1	유아(만3~5세)	(704)	56.5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83)	6.7	교사 자격(최상 자격증)		
소속 기관 규모			유치원 정교사 2급	(185)	14.8
20인 이하	(283)	22.7	유치원 정교사 1급	(187)	15.0
21~39인	(157)	12.6	유치원 원감	(16)	1.3
40~79인	(345)	27.7	유치원 원장	(7)	0.6
80~99인	(138)	11.1	3급 보육교사	(12)	1.0
100~199인	(254)	20.4	2급 보육교사	(140)	11.2
200인 이상	(70)	5.6	1급 보육교사	(478)	38.3
교사 성별			어린이집 원장	(222)	17.8
남성	(3)	0.2			
여성	(1,244)	99.8			

□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의 심각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정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 정도는 7점 척도 중 4.0점으로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 3.5점, 유치원 3.2점으로 보통보다는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함.
- － 어린이집의 학대 심각성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의 학대 심각성 정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인식함.
- － 교사 학력에 따라서는 유치원에서만 학력이 높아질수록 학대의 심각성 정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함.

〈표 III-2-2〉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단위: 점(명)

구분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0	1.67	3.5	1.72	3.2	1.56	(1,247)
소속 기관							
어린이집	4.0	1.70	3.1	1.67	3.4	1.60	(852)
유치원	3.9	1.59	4.2	1.60	2.8	1.39	(395)
t	-0.77		11.15**		-6.45**		
담당 영유아							
영아	3.9	1.75	3.0	1.69	3.3	1.62	(543)
유아	4.1	1.60	3.9	1.66	3.1	1.51	(704)
t	-1.27		-8.88***		2.26*		
지역규모							
대도시	4.1	1.65	3.6	1.73	3.3 ^a	1.54	(468)
중소도시	3.9	1.70	3.5	1.72	3.1 ^b	1.52	(447)
읍면	4.0	1.64	3.3	1.72	3.1	1.63	(332)
F	2.05		2.13		3.60*		
교사 연령							
20-29세	4.2 ^a	1.55	4.0 ^a	1.70	3.4 ^a	1.55	(384)
30-39세	4.2 ^a	1.62	3.5 ^b	1.68	3.2 ^a	1.56	(433)
40세 이상	3.7 ^b	1.77	3.0 ^c	1.65	2.9 ^b	1.54	(430)
F	13.19***		36.83***		10.82***		
교사 학력							
고졸 이하	3.9	1.76	2.9 ^a	1.63	3.2 ^a	1.52	(78)
전문대졸	4.1	1.70	3.5 ^b	1.74	3.4 ^a	1.61	(531)
대졸	3.9	1.62	3.5	1.74	3.1 ^b	1.51	(534)
대학원졸 이상	3.8	1.63	3.4	1.63	2.4 ^c	1.33	(104)
F	1.63		2.79*		11.54***		

* $p < .05$, *** $p < .001$

주: 1)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성이 높음을 나타냄.

2) Scheffe 검증 결과로 a, b, c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 중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모든 행동이 4점 척도에 3.2점 이상으로 대체로 학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신체학대 중에서는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힌 행위,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행위가 확실히 학대라고 인식함. 반면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리는 행위나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

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낮음.

〈표 III-2-3〉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 중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명), 점, N=1,247

구분	전혀 학대가 아님	별로 학대가 아닌 것 같음	대체로 학대인 것 같음	확실한 학대임	평균	계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놓힌 행위	-	-	4.1	95.9	4.0	100.0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행위	-	-	2.7	97.3	4.0	100.0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 머리, 귀, 등을 때린 행위	-	0.2	12.6	87.2	3.9	100.0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 외의 곳을 때린 행위	-	0.8	11.6	87.6	3.9	100.0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0.3	4.3	24.0	71.5	3.7	100.0
아이를 꼬집은 행위	0.1	2.3	22.1	75.5	3.7	100.0
아이를 잡고 혼든 행위	0.2	5.3	29.4	65.1	3.6	100.0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리는 행위	0.4	12.3	34.3	52.9	3.4	100.0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2.8	27.6	36.2	33.4	3.0	100.0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붓는 행위	-	1.0	18.0	81.1	3.8	100.0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행위	0.2	5.1	30.0	64.7	3.6	100.0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한 행위	0.1	5.7	34.6	59.6	3.5	100.0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갈등상황을 보여주는 행위	0.2	7.5	43.3	49.0	3.4	100.0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향을 지른 행위	1.0	11.5	44.1	43.5	3.3	100.0
아이에게 강제로 몸을 만져달라고 말하는 행위	-	0.6	5.0	94.5	3.9	100.0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몸을 만지는 행위	0.1	0.6	7.3	92.0	3.9	100.0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0.2	1.8	15.7	82.3	3.8	100.0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행위	0.1	2.2	12.6	85.1	3.8	100.0
술, 약물, 컴퓨터, 핸드폰에 중독되어 아이를 돌보는데 문제가 있는 행위	0.1	0.1	9.6	90.2	3.9	100.0
아이를 혼자 집 혹은 고립된 장소에 있게 한 행위	0.1	2.1	16.8	81.0	3.8	100.0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행위	0.1	0.6	14.9	84.4	3.8	100.0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	1.3	16.9	81.8	3.8	100.0
아이에게 애정표현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행위	0.8	19.2	39.4	40.7	3.2	100.0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인식이 높음을 나타냄.

- 정서학대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붓는 행위가 학대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지른 행위는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 성 학대에 있어서는 인식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방임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애정표현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3.8점 이상으로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매우 높았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게서 정서적 학대로 인한 행동적 징후의 목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신체적 학대 징후 중에는 알 수 없는 멍과 매를 맞은 자국이 있을 경우를 목격한 비율이 16.1%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징후에 대한 학대 의심정도는 모두 3.5~3.7점으로 의심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정서적 학대로 인한 행동적 징후 중에는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또래들 간에 소외되어 혼자 서성일 때, 겁이 많고 눈치를 보는 행동을 할 때를 본적이 있는 경우를 목격한 비율이 매우 높았음.
 - 성적학대 의심 징후 중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인 행동에 대한 목격 비율이 12.8%로 가장 높았음. 아픔을 호소하고 견거나 앓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아동학대 의심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방임 중에는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할 때를 목격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이 징후에 대한 학대 의심 정도는 가끔 의심하는 정도임.

〈표 III-2-4〉 아동에게서 신체적·행동적 징후 목격 경험/아동학대로 의심 정도

단위: %(명), 점, N=1,247

구분	본 적 있음	학대 의심 정도					평균	계
		전혀 의심하지 않음	별로 의심하지 않음	가끔 의심함	매우 의심함			
알 수 없는 멍과 매를 맞은 자국이 있을 때	16.1	0.5	1.6	44.9	53.0	3.5	100.0	
다쳤거나 상처가 있어도 치료를 받은 흔적이 없을 때	9.5	0.5	3.8	37.3	58.5	3.5	100.0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가 있을 때	4.6	0.6	5.9	39.1	54.4	3.5	100.0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가 있을 때	2.9	0.4	2.2	33.4	63.9	3.6	100.0	
몸에 설명되지 않는 화상이나 골절상을 입은 흔적이 있을 때	1.3	0.4	1.4	24.5	73.7	3.7	100.0	
신체적 상처로 자주 병원에 갈 때	0.6	0.5	6.9	38.5	54.1	3.5	100.0	

(표 III-2-4 계속)

구분	본 적 있음	학대 의심 정도				평균	계
		전혀 의심하지 않음	별로 의심하지 않음	가끔 의심함	매우 의심함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때	49.5	1.6	22.5	52.6	23.3	3.0	100.0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또래들 간에 소외되어 혼자 서성일 때	45.3	2.2	31.6	54.3	11.9	2.8	100.0
겉이 많고 눈치를 보는 행동을 할 때	43.8	0.8	15.1	53.5	30.6	3.1	100.0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극단적 행동을 할 때	33.5	0.6	10.3	50.1	38.9	3.3	100.0
활동에서 호기심과 탐구심이 없을 때	31.7	2.6	32.9	46.5	18.0	2.8	100.0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을 때	29.4	1.0	21.0	51.5	26.5	3.0	100.0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순종적일 때	23.5	1.8	22.5	49.6	26.1	3.0	100.0
강박증이나 공포를 보일 때	11.7	0.5	8.1	46.8	44.6	3.4	100.0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할 때	10.4	1.5	19.8	49.5	29.2	3.1	100.0
과도한 수면부족 증세를 보일 때	7.1	1.5	16.5	50.4	31.5	3.1	100.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할 때	12.8	0.8	10.4	44.7	44.0	3.3	100.0
이유 없이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	6.8	0.6	8.1	46.4	44.8	3.4	100.0
나이에 맞지 않는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일 때	4.4	0.7	7.4	41.4	50.5	3.4	100.0
신체적으로 접촉을 할 때 깜짝 놀랄 때	3.4	0.5	6.8	41.1	51.6	3.4	100.0
아픔을 호소하고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2.9	0.5	5.8	34.9	58.9	3.5	100.0
입천장의 손상이 있을 때	2.6	1.3	21.5	46.4	30.8	3.1	100.0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할 때	28.2	0.3	5.5	47.2	47.0	3.4	100.0
날씨나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당한 옷을 지속적으로 입고 다닐 때	17.2	0.3	5.9	46.8	47.0	3.4	100.0
어린이집/유치원이 끝난 후 늦은시간까지 집에서 혼자 있다고 할 때	8.1	0.5	4.2	44.9	50.4	3.5	100.0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을 때	8.0	0.9	5.7	43.9	49.6	3.4	100.0
항상 배고파하고 영양결핍으로 보일 때	6.7	0.6	6.2	40.6	52.7	3.5	100.0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할 때	4.4	0.6	3.8	37.7	58.0	3.5	100.0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인식이 높음을 나타냄.

-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전체적으로 부모와의 개별면담을 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 피해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경우 순임.
- 전체적인 경향과 다르게 경력 2~5년 정도의 교사와 고졸 이하 교사는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2-5〉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행한 조치

구분	경찰, 아동학대 다른 교사나 부모와 신고기관이나 원장에게 의 개별 센터에 신고함 도움을 청함 면담			전문 기관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피해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살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기타 (수)	
	8.0	82.0	86.4	6.8	79.7	0.4	1.5	(910)
전체								
소속 기관								
어린이집	8.6	83.3	84.9	7.6	78.6	0.5	1.8	(603)
유치원	6.8	79.5	89.3	5.2	81.8	0.3	1.0	(307)
담당 영유아								
영아	8.2	82.5	83.3	7.9	75.9	0.8	1.6	(365)
유아	7.9	81.7	88.4	6.1	82.2	0.2	1.5	(545)
교사 경력								
2년 미만	5.0	82.5	81.3	2.5	80.0	1.3	2.5	(80)
2~5년 미만	4.6	84.3	85.2	7.4	80.6	-	2.3	(216)
5~10년 미만	8.9	80.1	87.3	5.5	77.6	0.3	1.7	(361)
10년 이상	10.7	82.6	87.7	9.5	81.8	0.8	0.4	(253)
교사 학력								
고졸 이하	12.0	86.0	82.0	18.0	82.0	2.0	2.0	(50)
전문대졸	5.0	83.7	84.4	5.3	76.6	0.3	1.3	(398)
대졸	10.1	80.4	88.6	6.3	82.5	0.5	1.6	(378)
대학원졸 이상	10.7	78.6	88.1	9.5	79.8	-	2.4	(84)

주: 중복응답 결과임

-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응답자는 4사례에 불과함.
- 향후 아동에게서 징후 발견 시 취할 행동의 1순위는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 부모와의 개별 면담 순임.

〈표 III-2-6〉 향후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취할 행동

구분	경찰, 아동학대 다른 교사나 신고기관이나 원장에게 센터에 신고함 도움을 청함			부모와의 개별 면담	전문기관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피해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살핌	기타 (수)	
	14.8	66.2	13.1	1.2	4.7	-	(337)	
1순위								
2순위	37.7	17.8	29.4	5.3	9.5	0.3	(337)	

주: 중복응답 결과임.

- 아동이 기관에 무단결석할 경우 해당 아동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III-2-7〉 아동이 기관에 무단결석할 경우 해당 아동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모르겠음	계(수)
전체	62.1	24.3	13.6	100.0(1,247)
소속 기관				
어린이집	50.6	32.6	16.8	100.0(852)
유치원	87.1	6.3	6.6	100.0(395)
$X^2(df)$		155.41(2) ^{***}		
담당 영유아				
영아	49.0	35.2	15.8	100.0(543)
유아	72.3	15.9	11.8	100.0(704)
$X^2(df)$		77.35(2) ^{***}		
지역규모				
대도시	60.9	22.0	17.1	100.0(468)
중소도시	65.1	22.4	12.5	100.0(447)
읍면	59.9	30.1	9.9	100.0(332)
$X^2(df)$		15.21(3) ^{**}		
교사 연령				
20~29세	67.7	14.6	17.7	100.0(384)
30~39세	60.7	27.7	11.5	100.0(433)
40세 이상	58.6	29.5	11.9	100.0(430)
$X^2(df)$		31.85(4) ^{***}		
교사 경력				
2년 미만	68.3	13.3	18.3	100.0(120)
2~5년 미만	61.3	17.8	20.9	100.0(292)
5~10년 미만	60.8	25.3	13.9	100.0(474)
10년 이상	62.6	31.9	5.5	100.0(361)
$X^2(df)$		51.39(6) ^{***}		
교사 학력				
고졸 이하	38.5	39.7	21.8	100.0(78)
전문대졸	60.8	24.7	14.5	100.0(531)
대졸	64.0	23.2	12.7	100.0(534)
대학원졸 이상	76.9	16.3	6.7	100.0(104)
$X^2(df)$		29.90(6) ^{***}		

** $p < .01$, *** $p < .001$

-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 라는 생각에 동의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대한 동의정도가 가장 낮았음.

〈표 III-2-8〉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단위: 점(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수)
전체	2.6	2.2	2.3	2.3	2.1	2.0	2.3	2.3	(1,247)
소속 기관									
어린이집	2.6	2.2	2.3	2.3	2.1	2.0	2.3	2.3	(852)
유치원	2.5	2.1	2.3	2.4	2.2	2.1	2.3	2.3	(395)
t	-3.39*	-1.27	0.63	1.59	2.35*	1.37	0.29	-0.04	
담당 영유아									
영아	2.7	2.2	2.3	2.3	2.0	2.0	2.3	2.3	(543)
유아	2.5	2.2	2.4	2.4	2.2	2.1	2.3	2.3	(704)
t	2.57*	1.57	-1.87	-2.29*	-2.61**	-1.86	-0.44	0.56	
지역규모									
대도시	2.6	2.1	2.4	2.3	2.1	2.0	2.3	2.3	(468)
중소도시	2.6	2.2	2.3	2.3	2.1	2.0	2.3	2.3	(447)
읍면	2.6	2.2	2.3	2.4	2.2	2.0	2.3	2.3	(332)
F	0.53	3.21*	0.93	0.23	0.67	0.04	0.90	0.01	
교사 연령									
20~29세	2.5 ^a	2.1 ^a	2.4 ^a	2.4 ^a	2.2	2.1	2.3	2.2 ^a	(384)
30~39세	2.6	2.2	2.4 ^a	2.4 ^a	2.1	2.0	2.3	2.3	(433)
40세 이상	2.7 ^b	2.3 ^b	2.2 ^b	2.2 ^b	2.1	2.0	2.3	2.4 ^b	(430)
F	4.19*	8.75***	6.97**	9.15***	2.05	0.70	1.25	3.93*	
교사 경력									
2년 미만	2.4	2.0	2.2	2.3	2.1	2.0	2.1	2.2	(120)
2~5년 미만	2.6	2.1	2.3	2.3	2.1	2.0	2.3	2.3	(292)
5~10년 미만	2.6	2.2	2.4	2.4	2.1	2.1	2.3	2.3	(474)
10년 이상	2.6	2.2	2.3	2.3	2.1	2.0	2.4	2.4	(361)
F	2.70*	2.23	2.45	1.49	0.71	1.00	2.18	1.38	
교사 학력									
고졸 이하	2.7	2.4 ^a	2.2	2.2	2.1	2.0	2.4	2.5	(78)
전문대졸	2.6	2.2	2.4 ^a	2.4	2.1	2.0	2.3	2.3	(531)
대졸	2.6	2.1 ^b	2.4	2.3	2.1	2.0	2.3	2.3	(534)
대학원졸 이상	2.5	2.2	2.1 ^b	2.2	2.1	2.1	2.3	2.3	(104)
F	1.60	2.99*	3.90**	2.03	0.21	0.05	0.15	1.71	

* $p < .05$, ** $p < .01$, *** $p < .001$

주: 1) ①'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라는 생각, ②'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 ③'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 ④'한 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 ⑤ '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 ⑥'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 ⑦'이 정도가 아동학대?'라는 생각, ⑧'왜 아이가 말을 안 할까? 학대가 아닌 건가?'라는 생각
 2)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
 3) Scheffe 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시 목격 혹은 본인이 행한 적 있는 행동에 대해

서 알아본 결과, 정서적 학대를 목격하거나 본인이 한 적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2-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시 목격 혹은 본인이 행한 적 있는 행동

단위: %(명)

구분	목격한 적 있음	본인이 한 적 있음	빈도				지속성		계(수)
			월 1회 미만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회 이상	대체로 지속적 으로	매우 특수한 상황 에서만	
영유아의 머리나 몸 등을 손이나 팔, 다리로 미는 행동	7.5	0.9	72.7	27.3	-	-	-	100.0	100.0(11)
영유아의 몸이나 머리를 잡고 심하게 흔드는 행동	1.7	0.1	100.0	-	-	-	-	100.0	100.0(1)
얼굴, 뺨, 등관 등을 손이나 팔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	1.3	-	-	-	-	-	-	-	-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0.8	-	-	-	-	-	-	-	-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	31.8	17.6	56.8	26.8	11.8	4.5	3.6	96.4	100.0(220)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행동	26.4	19.0	79.7	15.2	4.2	0.8	1.3	98.7	100.0(237)
영유아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해 주지 않는 행동	20.0	9.9	68.5	20.2	9.7	1.6	3.2	96.8	100.0(124)
영유아가 하고 싶어 하는 놀이나 활동을 고의적으로 못하게 하는 행동	19.1	10.2	65.4	22.8	7.9	3.9	3.1	96.9	100.0(127)
특정 공간에 장시간(10분 이상) 혼자 있게 하는 행동	6.8	2.9	83.3	8.3	5.6	2.8	2.8	97.2	100.0(36)
영유아가 상처 받을만한 심한 말이나 욕을 하는 것	2.7	0.3	75.0	25.0	-	-	-	100.0	100.0(4)
말 안 듣는 영유아에게 간식이나 점심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행동	2.4	0.6	57.1	42.9	-	-	-	100.0	100.0(7)
영유아가 거부하는데도 몸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행동	0.2	-	-	-	-	-	-	-	-
영유아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교사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	0.2	-	-	-	-	-	-	-	-
교사가 영유아에게 포래끼리 서로의 몸이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도록 시키는 행동	0.2	-	-	-	-	-	-	-	-
기저귀나 옷이 더러워졌는데 장시간 그냥 두는 행동	1.8	0.1	100.0	-	-	-	-	100.0	100.0(1)

- 신체적 학대 행동 중 영유아의 머리나 몸 등을 손이나 팔, 다리로 미는 행동을 목격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본인이 한 적이 있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이 행동을 했을 경우 빈도는 월 1회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서적 학대 행동 중에서는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을 목격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본인이 한 적이 있는 행동은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행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본인이 한 적이 있는 경우 월 1회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학대 행동과 방임행동에 대한 목격한 비율은 각각 0.2%, 1.8%로 다른 범주의 행동 목격 비율보다 낮았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에 행한 조치는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피해아동을 위로하는 경우,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하는 경우 순임.

〈표 III-2-1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 행한 조치
단위: %(명)

구분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함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함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함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알림	언론사나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게시함	전문기관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피해아동을 위로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기타	(수)
전체	3.2	26.7	60.2	13.7	0.2	1.8	47.4	10.5	2.0	(561)

주: 중복응답 결과임.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목격 혹은 들었을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는 이유가 71.2%로 가장 많았음.

〈표 III-2-1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목격 혹은 들었을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수)
전체	71.2	11.9	1.7	5.1	10.2					(59)

주: ①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 ②보육/교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③해당 부모의 보복이나 비난 등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④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⑤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관)를 알지 못해서, ⑥피해 영유아 및 부모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⑦학대 판정 시 기관이 폐쇄되는 것이 두려워서, ⑧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⑨기타

- 향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 취할 행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 가해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하겠다는 응답 순이었음.

〈표 III-2-12〉 향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 취할 행동
단위: %(명)

구분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함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함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함	피해아동 의 부모에게 알림	언론사나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게시함	전문기관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피해아동을 위로함	기타	(수)
전체	71.9	57.1	87.0	41.3	3.1	29.6	47.4	0.1	(686)

주: 중복응답 결과임.

- 기관에서 영유아에게 아동학대와 같은 행동을 하는 상황은 전체적으로 아이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가장 높았음.

〈표 III-2-13〉 기관에서 영유아에게 아동학대 (의심) 행동을 하는 상황
단위: %(명)

구분	내 기분이 우울할 때	아이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날 때	이유 없이 화가 날 때	해야 할 일이 많아 짜증이 날 때	무언가 해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못할 때	기타	(수)
전체	1.9	59.4	0.5	6.8	9.2	1.9	(411)

주: 중복응답 결과임.

-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함이 80.5%로 가장 많았음.

〈표 III-2-14〉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
단위: %(명)

구분	평상시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함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조절함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함	아이들과 있는 동안은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노력함	기타	(수)
전체	40.9	40.6	80.5	47.0	7.5	(411)

주: 중복응답 결과임.

□ 아동학대 관련 교육

-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관련 교육 수강 여부에 대하여, 받은 적이 있다고 응

답한 비율이 98.7%로 대부분이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영아 담당교사가 유아교사보다 교육을 받은 비율이 더 높았음.

〈표 III-2-15〉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관련 교육 수강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98.7	1.3	100.0(1,247)
소속 기관			
어린이집	99.4	0.6	100.0(852)
유치원	97.2	2.8	100.0(395)
$X^2(df)$		10.29(1)**	
담당 영유아			
영아	99.4	0.6	100.0(543)
유아	98.2	1.8	100.0(704)
$X^2(df)$		4.05(1)*	

* $p < .05$, ** $p < .01$

- 교육을 받은 경우 어떤 방식의 교육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on-line교육과 off-line교육을 모두 받은 비율이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off-line교육 여부는 경력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on-line교육과 off-line교육을 모두 받는 비율은 경력이 올라갈수록 높아짐.

〈표 III-2-16〉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방식

단위: %(명)				
구분	on-line 교육	off-line 교육	on-line과 off-line 교육 모두 받음	계(수)
전체	10.0	29.1	60.9	100.0(1,231)
교사 경력				
2년 미만	12.0	42.7	45.3	100.0(117)
2~5년 미만	12.6	32.5	54.9	100.0(286)
5~10년 미만	10.0	28.2	61.8	100.0(468)
10년 이상	7.2	23.1	69.7	100.0(360)
$X^2(df)$		29.45(6)***		

*** $p < .001$

- 지난 1년간 받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는 전반적으로 2회인 경우가

47.8%로 가장 많았으며, 4회 이상 받은 비율도 21.2%나 됨.

- 교사 경력이 많을수록 교육 횟수 중 4회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2-17〉 지난 1년간 받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

					단위: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수)
전체	15.8	47.8	15.2	21.2	100.0(1,231)
교사 경력					
2년 미만	27.4	43.6	12.8	16.2	100.0(117)
2~5년 미만	17.1	50.0	12.2	20.6	100.0(286)
5~10년 미만	15.2	48.3	17.3	19.2	100.0(468)
10년 이상	11.7	46.9	15.6	25.8	100.0(360)
$X^2(df)$	24.44(9)**				

** $p < .01$

- 1회당 평균 교육시간은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1~2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3시간, 3시간 이상, 1시간 미만 순임.
- 유치원 교사가 1회당 평균 1~2시간 교육을 받는 비율이, 어린이집 교사는 2~3시간 교육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2-18〉 1회당 평균 교육시간

					단위: %(명)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시간 이상	계(수)
전체	10.0	52.4	22.9	14.7	100.0(1,231)
소속 기관					
어린이집	9.2	51.6	25.0	14.2	100.0(847)
유치원	11.7	54.2	18.2	15.9	100.0(384)
$X^2(df)$	7.86(3)*				

* $p < .05$

-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주최 기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경우가 5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45.9%, 아동보호전문기관 36.1% 순이었음.

〈표 III-2-19〉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주최 기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도청	시·도교육청	기타	(수)
전체	45.9	22.4	36.1	52.7	14.4	3.1	14.8	22.0	13.0	100.0(1,231)

주: 중복응답 결과임.

-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효과 여부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4점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아 담당교사가, 교사 연령이 높을수록, 교사 경력이 많을수록 더 효과가 있다고 인식함.

〈표 III-2-20〉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효과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별 다른 효과가 없었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	큰 효과가 있었음	잘 모르겠음	평균	계(수)
전체	3.5	52.7	41.8	2.0	3.4	100.0(1,231)
담당 영유아						
영아	3.3	48.3	47.2	1.1	3.4	100.0(540)
유아	3.6	56.2	37.5	2.7	3.3	100.0(691)
X ² (df)	14.48(3)**				2.97*	
교사 연령						
20~29세	5.8	61.5	28.6	4.0	3.2	100.0(377)
30~39세	4.0	55.6	38.6	1.9	3.4	100.0(430)
40세 이상	0.9	42.0	56.6	0.5	3.6	100.0(424)
X ² (df)	80.68(6)**				36.01***	
교사 경력						
2년 미만	6.0	59.0	28.2	6.8	3.2	100.0(117)
2~5년 미만	4.2	55.6	37.4	2.8	3.3	100.0(286)
5~10년 미만	3.0	54.9	40.6	1.5	3.4	100.0(468)
10년 이상	2.8	45.6	51.1	0.6	3.5	100.0(360)
X ² (df)	41.38(9)**				7.08***	

*** $p < .001$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과 정도가 높음을 나타냄.

- 아동학대 관련 교육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법이 31.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피해아동 발견 후 대처방법 26.7%, 피해아동

발견 방법 18.0% 순임. 2순위 응답으로는 피해아동 발견 후 대처방법이 28.0%로 가장 높았음.

〈표 III-2-21〉 아동학대 관련 교육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

단위: %(명), N=1,247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1순위	18.0	26.7	31.4	8.7	0.3	2.1	8.0	1.4	0.9	0.5	2.0	0.2	100.0
2순위	6.4	28.0	16.7	23.3	1.6	9.3	3.9	3.4	1.0	2.9	3.3	0.2	100.0
3순위	3.5	15.7	16.5	20.0	5.4	14.3	4.0	3.5	2.3	7.9	6.7	0.2	100.0

주: ①피해아동 발견 방법, ②피해아동 발견 후 대처방법, ③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법, ④학대 부모의 면담방법이나 부모 교육, ⑤아동학대 지원 기관 관련 정보 소개, ⑥피해유아에 대한 지도, ⑦아동 인권, ⑧아동학대의 영향 및 결과, ⑨아동학대 관련 법률, ⑩아동학대 관련 정부의 지원 정책, ⑪스트레스 관리 방안, ⑫기타

□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의 1순위 응답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4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사의 성격이나 정신건강 문제 15.6%, 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부족 13.5% 순임. 2순위 응답으로는 영유아 발달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이 18.6%로 가장 높았음.

〈표 III-2-2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단위: %(명), N=1,247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1순위	47.2	0.3	13.5	15.6	9.1	5.2	7.9	0.2	0.8	0.3	100.0
2순위	13.1	2.8	15.6	18.0	18.6	13.7	12.9	0.3	4.7	0.3	100.0
3순위	14.7	1.8	10.7	13.0	16.8	18.1	15.1	1.3	7.7	0.7	100.0

주: ①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②원장이나 교사들 간의 갈등, ③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부족, ④교사의 성격이나 정신건강 문제, ⑤영유아 발달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 ⑥학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 ⑦아동의 기질 및 행동 문제, ⑧기관 차원의 관리 및 모니터링 부족, ⑨정책적 지원의 부족, ⑩기타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의 1순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인력 확충이 2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사의 처우 개선 23.7%, 교사양성과정 강화(인성교육 등) 17.1% 순임.

〈표 III-2-2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단위: %(명), N=1,247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계
1순위	27.7	17.1	23.7	1.2	6.7	0.5	1.0	0.1	1.4	0.2	7.9	6.4	6.1	0.1	100.0
2순위	12.3	14.8	20.7	3.8	10.3	1.8	1.3	0.4	2.5	0.8	17.2	8.6	5.3	0.2	100.0
3순위	9.9	9.5	12.5	3.0	14.1	2.3	0.8	0.2	3.4	1.5	19.4	15.0	7.9	0.4	100.0

주: ①유치원/어린이집 인력 확충, ②교사양성과정 강화(인성교육 등), ③교사 처우 개선, ④ 아동학대 관련 전문요원 양성, ⑤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실시, ⑥신고의무제 강화, ⑦기관 내 CCTV 설치, ⑧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⑨학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강화, ⑩학대 원장 및 학대 교사 명단 공개, ⑪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 관련 상담 강화, ⑫영유아 정서 및 행동문제 평가 및 상담, ⑬교사의 인·적성 검사 강화, ⑭기타

-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의 1순위는 양육스트레스가 35.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부 및 가족갈등 16.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13.8% 순임. 2순위 응답으로는 부부 및 가족갈등이 22.3%로 가장 높았음.

〈표 III-2-24〉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단위: %(명), N=1,247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1순위	35.5	13.8	16.2	8.4	1.0	1.9	7.0	7.6	7.9	0.6	100.0
2순위	10.2	18.6	22.3	9.1	3.6	5.2	11.3	9.2	8.0	2.4	100.0
3순위	11.1	8.5	14.9	9.9	2.4	7.6	11.9	16.7	12.8	4.3	100.0

주: ①양육스트레스, ②사회·경제적 스트레스, ③부부 및 가족갈등, ④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⑤중독(술, 도박, 게임 등) 문제, ⑥자녀의 기질 및 행동 문제, ⑦양육지식의 부족, ⑧훈육과 학대의 차이에 대한 무지, ⑨부모 역할에 대한 무지, ⑩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⑪ 기타

-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가 48.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바람직한 양육방법에 대한 홍보 20.3%,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 18.7% 순임.
- 30~39세 교사가 다른 연령의 교사보다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와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40세 이상의 교사는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홍보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I-2-25〉 가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

단위: %(명)

구분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홍보	양육스트레 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	기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아동학대 관련 법규 홍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기타	계(수)
전체	48.0	20.3	18.7	7.6	1.6	3.5	0.2	100.0(1,247)
교사 연령								
20~29세	47.4	17.7	19.0	9.1	2.3	3.6	0.8	100.0(384)
30~39세	48.7	18.2	21.9	7.2	1.8	2.1	-	100.0(433)
40세 이상	47.9	24.7	15.1	6.7	0.7	4.9	-	100.0(430)
X ² (df)					28.60(12)**			

** p < .01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남의 가정의 일이고 부모의 양육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22.1% 등의 순임.

〈표 III-2-26〉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전체	0.7	43.6	1.4	12.4	22.1	19.3	0.4	100.0(1,247)

주: ①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신고를 하는 것이 귀찮아서, ②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③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라서, ④신고 시 신분이 노출되어 보복이나 비난을 당할까 두려워서, ⑤남의 가정의 일이고 부모의 양육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⑥아동학대라는 확신이 없어서, ⑦기타

□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4점 척도에 3.1~3.6점으로 대체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함. 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취업을 제한함에 대한 인지도가 모두 3.6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었으며, 3년 이상 유기징역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는 3.1점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음.

<표 III-2-27>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인지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르고 있었음	들은 적은 있으나 잘 모르고 있었음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음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	평균	계(수)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함	0.6	4.2	26.5	68.7	3.6	100.0(1,247)
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취업을 제한함	2.2	4.6	27.2	66.0	3.6	100.0(1,247)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유치원을 폐쇄함	0.8	4.7	33.8	60.7	3.5	100.0(1,247)
유치원장/어린이집원장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1.8	6.9	32.4	58.9	3.5	100.0(1,247)
아이돌보미, 유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됨	2.1	5.6	32.2	60.1	3.5	100.0(1,247)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상담,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1.3	8.0	37.3	53.4	3.4	100.0(1,247)
2일 이상 무단결석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실시해야 함	6.0	13.0	30.4	50.6	3.3	100.0(1,247)
아동학대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2.8	11.1	39.1	47.0	3.3	100.0(1,247)
유아 대상 체벌을 금지함	2.6	12.9	43.7	40.8	3.2	100.0(1,247)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을 상실할 수 있음	5.1	12.8	39.6	42.6	3.2	100.0(1,247)
3년 이상 유기징역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기준이 강화	5.9	15.2	41.4	37.4	3.1	100.0(1,247)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음을 나타냄.

-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통합 번호 112) 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금 번호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71.8%로 가장 많았음.
-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영아담당교사가 유아담당교사보다, 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10년 이상 경력의 교사가, 교사 학력이 낮을수록 신고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았음.

<표 III-2-28>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지금 번호로 정확히 알고있음	과거 번호로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계(수)
전체	71.8	10.4	17.8	100.0(1,247)
소속 기관				
어린이집	83.6	6.3	10.1	100.0(852)
유치원	46.3	19.2	34.4	100.0(395)
$\chi^2(df)$	185.03(2)***			

(표 III-2-28 계속)

구분	지금 번호로 정확히 알고있음	과거 번호로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계(수)
담당 영유아				
영아	85.1	5.5	9.4	100.0(543)
유아	61.5	14.2	24.3	100.0(704)
$X^2(df)$		84.11(2) ^{***}		
교사 연령				
20~29세	61.2	15.1	23.7	100.0(384)
30~39세	73.9	9.2	16.9	100.0(433)
40세 이상	79.1	7.4	13.5	100.0(430)
$X^2(df)$		33.98(4) ^{***}		
교사 경력				
2년 미만	60.0	18.3	21.7	100.0(120)
2~5년 미만	71.6	8.2	20.2	100.0(292)
5~10년 미만	71.1	10.1	18.8	100.0(474)
10년 이상	76.7	10.0	13.3	100.0(361)
$X^2(df)$		18.58(6) ^{**}		
교사 학력				
고졸 이하	82.1	7.7	10.3	100.0(78)
전문대졸	75.0	9.6	15.4	100.0(531)
대졸	69.3	11.0	19.7	100.0(534)
대학원졸 이상	60.6	13.5	26.0	100.0(104)
$X^2(df)$		15.28(6) [*]		

* $p < .05$, ** $p < .01$, *** $p < .001$

-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모든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도가 4점 척도에 평균 3.3~3.7점으로 인지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신고 후에 신고자나 피해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함에 대해서 평균 3.7점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았고, 학대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 대해서는 평균 3.3점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가장 낮았음.

〈표 III-2-29〉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르고 있었음	들은 적은 있으나 잘 모르고 있었음	대략적 으로 알고 있었음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	평균	계(수)
신고 후에 신고자나 피해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함	-	3.2	28.3	68.5	3.7	100.0(1,247)
신고 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함	0.5	3.2	30.8	65.5	3.6	100.0(1,247)
가능한 한 증거사진 등을 확보함	0.8	4.3	32.4	62.5	3.6	100.0(1,247)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함	0.3	2.4	30.5	66.8	3.6	100.0(1,247)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	1.1	5.8	27.8	65.3	3.6	100.0(1,247)
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음	0.9	6.0	35.9	57.2	3.5	100.0(1,247)
학대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2.8	10.7	42.8	43.7	3.3	100.0(1,247)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음을 나타냄.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4점 척도에 평균 2.7점으로 도움 정도를 보통에서 약간 도움이 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
-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의 교사가 상대적으로 도움 정도를 낮게 인식함.

〈표 III-2-3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도움이 안 될 것	어느 정도 도움 될 것	매우 도움 될 것	평균	계(수)
전체	10.7	19.2	57.8	12.2	2.7	100.0(1,247)
소속 기관						
어린이집	7.5	19.2	61.0	12.2	2.8	100.0(852)
유치원	17.7	19.2	50.9	12.2	2.6	100.0(395)
$X^2(df)/t$	30.99(3)**				-3.87***	
교사 경력						
2년 미만	5.8	20.0	61.7	12.5	2.8	100.0(120)
2~5년 미만	11.3	21.6	58.2	8.9	2.6	100.0(292)
5~10년 미만	7.4	18.6	60.3	13.7	2.8	100.0(474)
10년 이상	16.3	18.0	52.9	12.7	2.6	100.0(361)
$X^2(df)/F$	25.48(9)**				4.74**	

(표 III-2-30 계속)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도움이 안 될 것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매우 도움이 될 것	평균	계(수)
교사 학력						
고졸 이하	2.6	15.4	69.2	12.8	2.9	100.0(78)
전문대졸	8.7	17.7	58.9	14.7	2.8	100.0(531)
대졸	10.7	19.7	58.8	10.9	2.7	100.0(534)
대학원졸 이상	27.9	27.9	38.5	5.8	2.2	100.0(104)
X ² (df)/F	56.52(9) ^{***}				16.92 ^{***}	

** $p < .01$, *** $p < .001$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음을 나타냄.

- 대부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 4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CCTV 설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CCTV를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이 40.9%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표 III-2-31> CCTV 설치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의심되어도 실제로 열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녹화내용이 지워져서 제대로 확인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CCTV 설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CCTV를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기타	계(수)
전체	41.4	2.1	1.9	40.9	13.6	100.0(374)

-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에 대한 인지 및 활용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지여부에 대한 점수는 4점 척도에 평균 3점이며 활용 여부에 대한 점수는 평균 2.2점으로 인지도는 대체로 있으나 활용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영아 담당교사가 유아 담당교사보다 인지도가 높음.
 - 연령과 경력이 높을수록, 대학원졸업 이상 학력의 교사가 인지도와 활용도 모두 높음.

〈표 III-2-32〉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에 대한 인지 및 활용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인지여부					(수)	활용여부					(수)
	잘 알고 있음	대충 알아 있음	들어 본 적이 있음	모름	평균		자주 활용	가끔 활용	1~2번 활용	활용 경험 없음	평균	
전체	25.7	54.3	17.6	2.4	3.0	(1,247)	14.1	30.3	17.8	37.8	2.2	(1,217)
담당 영유아												
영아	27.1	56.2	15.5	1.3	3.1	(543)	14.4	30.4	16.8	38.4	2.2	(536)
유아	24.6	52.8	19.3	3.3	3.0	(704)	13.8	30.2	18.6	37.3	2.2	(681)
X ² (df)	8.93(3) [*]				-2.49 [*]		0.75(3)				0.75(3)	
교사 연령												
20~29세	18.8	50.5	26.6	4.2	2.8	(384)	8.7	30.4	19.0	41.8	2.1	(368)
30~39세	24.2	58.2	15.2	2.3	3.0	(433)	13.9	27.9	18.7	39.5	2.2	(423)
40세 이상	33.3	53.7	12.1	0.9	3.2	(430)	18.8	32.6	16.0	32.6	2.4	(426)
X ² (df)	54.49(6) ^{**}				25.13 ^{**}		22.08(6) [*]				22.08(6) [*]	
교사 경력												
2년 미만	16.7	50.8	29.2	3.3	2.8	(120)	11.2	31.9	17.2	39.7	2.1	(116)
2~5년 미만	20.2	54.1	22.6	3.1	2.9	(292)	9.2	29.0	17.3	44.5	2.0	(283)
5~10년 미만	25.7	53.4	18.1	2.7	3.0	(474)	12.8	29.9	17.8	39.5	2.2	(461)
10년 이상	33.0	56.8	9.1	1.1	3.2	(361)	20.4	31.4	18.5	29.7	2.4	(357)
X ² (df)	47.12(9) ^{**}				14.54 ^{**}		26.96(9) [*]				26.96(9) ^{**}	
교사 학력												
고졸 이하	28.2	48.7	21.8	1.3	3.0	(78)	19.5	23.4	11.7	45.5	2.2	(77)
전문대졸	22.4	57.6	17.3	2.6	3.0	(531)	14.5	30.0	17.6	37.9	2.2	(517)
대졸	26.8	51.3	19.3	2.6	3.0	(534)	11.7	30.8	18.7	38.8	2.2	(520)
대학원졸 이상	34.6	56.7	7.7	1.0	3.3	(104)	19.4	35.0	19.4	26.2	2.5	(103)
X ² (df)	17.40(9) [*]				3.56 [*]		14.79(9)				14.79(9)	

* $p < .05$, ** $p < .01$, *** $p < .001$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음을 나타냄.

-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4점 척도에 평균 3.2 또는 3.3점으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남.

〈표 III-2-33〉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함	평균	계(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교육	-	3.6	66.2	30.3	3.3	100.0(757)
기본원칙 및 평상시 관리·대응	-	3.0	67.6	29.3	3.3	100.0(757)
아동학대 징후 발견 혹은 무단결석/퇴학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	4.0	65.9	30.1	3.3	100.0(757)
아동학대의 정의, 유형/징후	0.1	2.9	73.8	23.1	3.2	100.0(757)
각종 안내문 및 양식	-	4.1	67.9	28.0	3.2	100.0(757)
관련 법령	0.1	5.5	67.5	26.8	3.2	100.0(757)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0.1	5.3	66.2	28.4	3.2	100.0(757)
피해아동보호절차(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	0.4	4.5	65.9	29.2	3.2	100.0(757)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냄.

- 영유아 학대 관련하여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은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가 3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22.3%, 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이 11.1% 순임.

〈표 III-2-34〉 영유아 학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 요구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전체	33.8	11.1	3.6	6.3	8.1	5.6	22.3	2.9	5.9	0.3	100.0(1,247)
소속 기관											
어린이집	35.1	11.0	2.9	5.3	7.7	5.3	24.5	2.6	5.4	0.1	100.0(852)
유치원	31.1	11.1	5.1	8.6	8.9	6.3	17.5	3.5	7.1	0.8	100.0(395)
$X^2(df)$	21.96(9)**										
지역규모											
대도시	28.6	10.5	4.5	6.6	11.3	6.0	25.2	3.2	3.6	0.4	100.0(468)
중소도시	37.1	12.3	2.5	6.5	6.3	5.8	19.9	1.8	7.6	0.2	100.0(447)
읍면	36.7	10.2	3.9	5.7	6.0	4.8	21.4	3.9	6.9	0.3	100.0(332)
$X^2(df)$	33.57(18)*										
교사 연령											
20~29세	25.0	11.5	5.2	8.1	12.2	3.6	26.0	2.6	5.2	0.5	100.0(384)
30~39세	32.6	11.1	2.8	5.8	8.8	6.7	21.5	3.9	6.5	0.5	100.0(433)
40세 이상	43.0	10.7	3.0	5.3	3.7	6.3	19.8	2.1	6.0	-	100.0(430)
$X^2(df)$	58.15(1)***										

* $p < .05$, ** $p < .01$, *** $p < .001$

주: ①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②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③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④아동학대 신고자 신변 보호 ⑤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⑥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⑦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⑧지속적인 교사, 부모 상담 지원, ⑨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 강화, ⑩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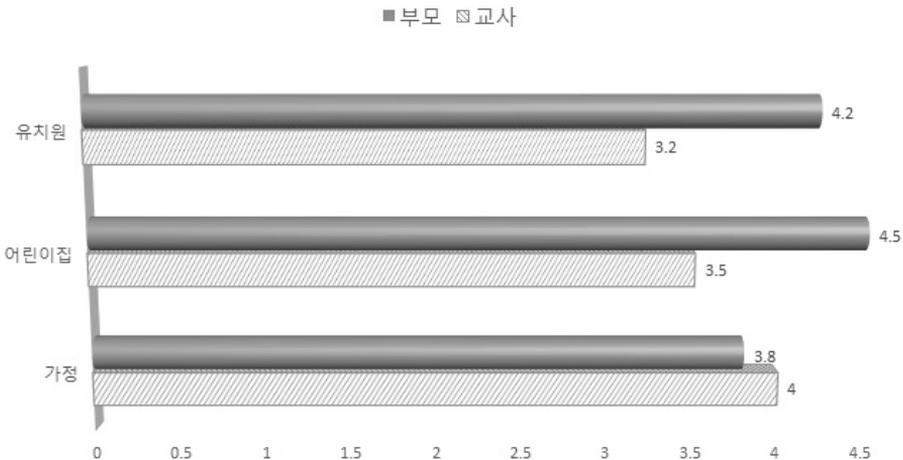
- 어린이집 교사는 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유치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아동학대 신고자 신변 보호, 교사 양성과정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읍면의 교사가 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에 대한 응답비율이 더 높았던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사항에 있어서는 대도시 교사 응답비율이 높음.
- 연령이 높을수록 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응답 비율은 높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응답비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3. 학부모와 교사 인식 비교

□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편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부모가 교사보다 심각하게 인식함. 장소에 따라서 부모는 기관에서의 학대를, 교사는 가정에서의 학대를 더 심각하게 인식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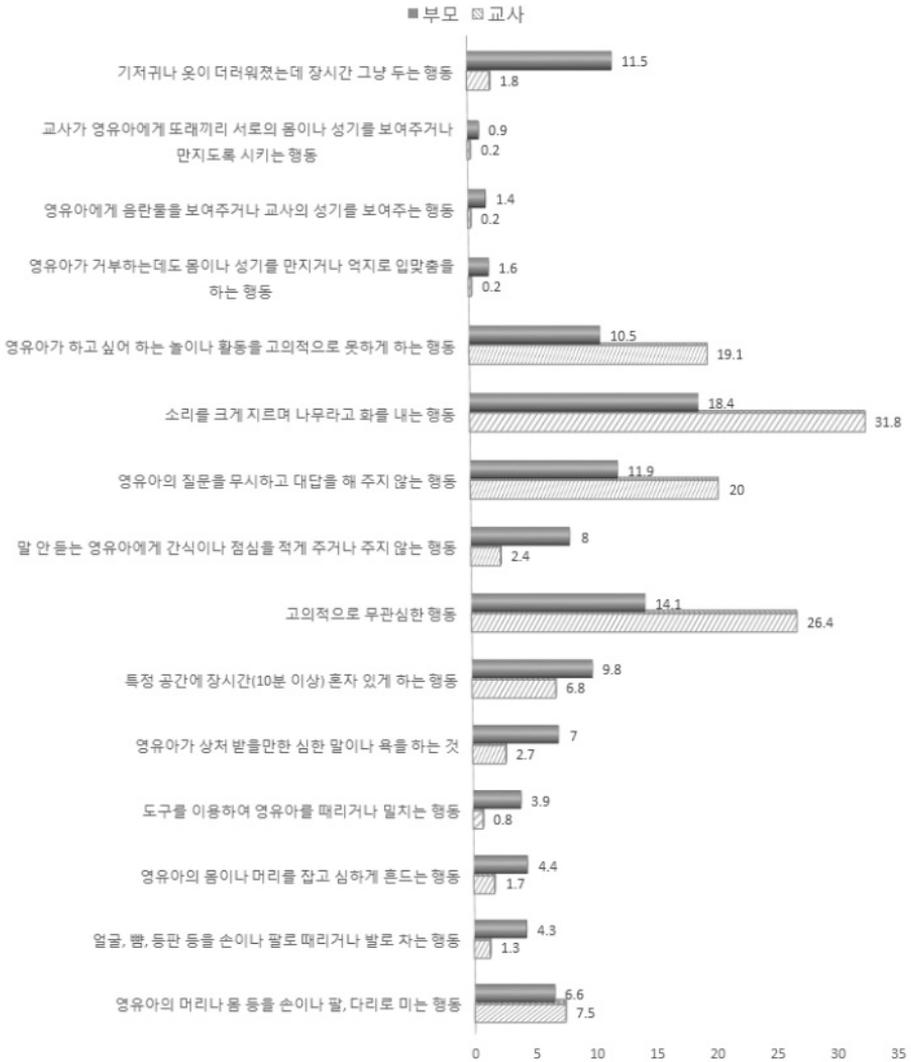
주: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성이 높음을 나타냄.

[그림 III-3-1]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 시 학대 의심 행동 목격 여부에 대해서는 **0.2%**에서 **31.8%**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율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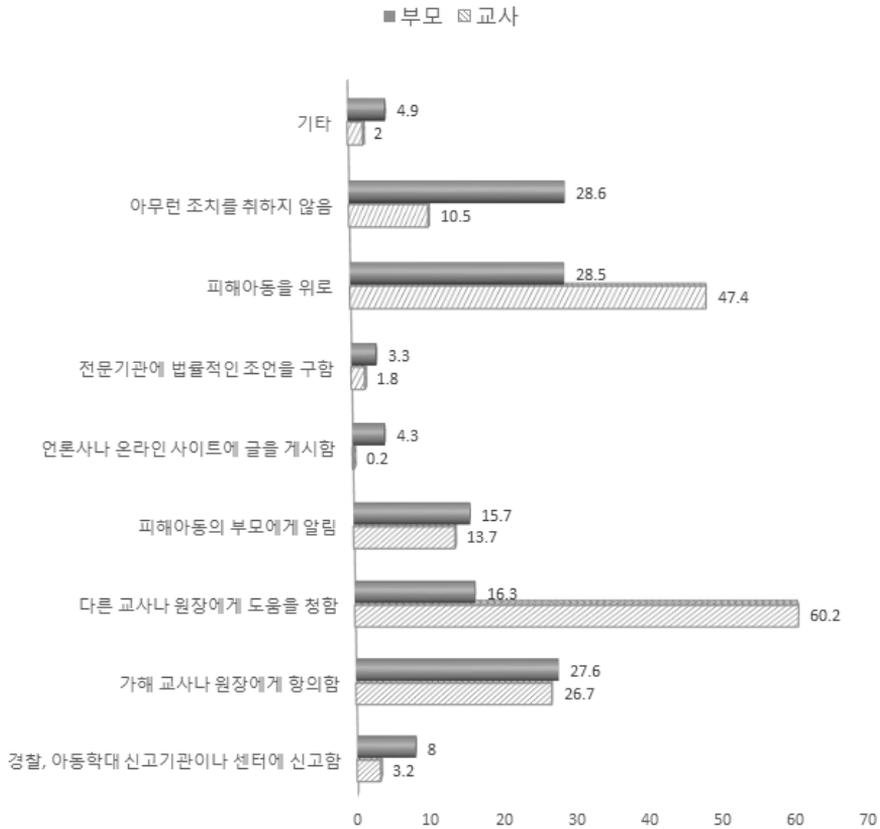
단위: %



[그림 III-3-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 시 학대 의심 행동에 대한 인식 및 이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는지 여부

- 부모와 교사 모두 가장 많이 목격한 행동은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 그 다음은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행동', '영유아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해 주지 않는 행동'으로 비율은 다르지만 순위는 유사하게 나타남.
- 부모의 경우 '기저귀나 옷이 더러워졌는데 장시간 그냥 두는 행동'을 목격했다는 응답이 **11.5%**로 교사의 응답 **1.8%**와 큰 차이를 보임.

단위: %



[그림 III-3-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조치사항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부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교사는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그 다음은 부모와 교사 모두 피해아동을 위로,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 순이었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와 교사 모두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부모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던 반면, 교사는 '보육과 교육은 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비율이 높았음. 한편 '해당 교사의 보복이나 비난 등 해당 아동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라는 응답비율은 부모가 교사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

〈표 III-3-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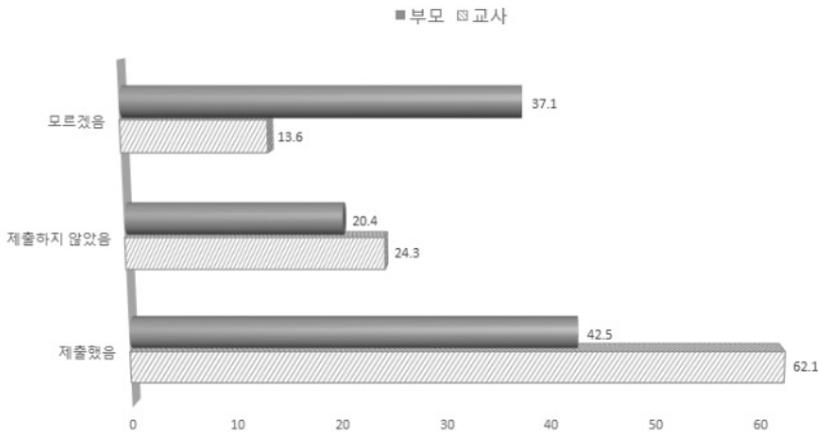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	보육/교육은 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해당 교사의 보복이나 비난 등 해당 아동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관)를 알지 못해서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부모	48.1	1.7	10.8	2.3	1.1	15.6	15.3	100.0(112)
교사	71.2	11.9	1.7	-	-	5.1	10.2	100.0(59)

주: 부모조사의 경우 1, 2순위를 응답받았고, 본 결과는 1순위 결과임.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가정방문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제출 및 수령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부모는 제출했다는 응답이 42.5%였고, 교사는 제출받았다는 응답이 62.1%로 차이를 나타냈음.

단위: %



[그림 III-3-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가정방문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제출 및 수령여부

-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2.6점으로 동의하지 않는 편에서 보통 정도의 동의를 나타냈으며, 교사에 비해 부모의 동의정도가 다소 높았음.

<표 III-3-2>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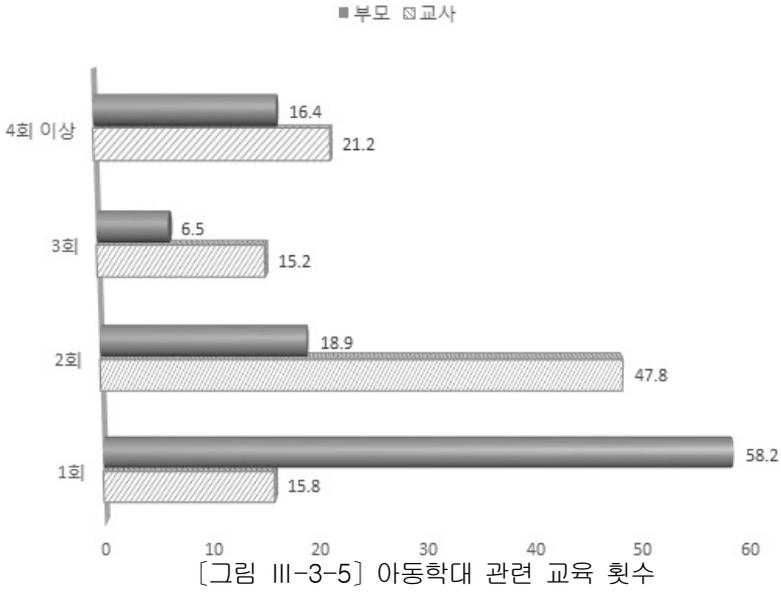
구분	단위: 점(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수)
부모	2.6	2.4	2.6	2.6	2.4	2.2	2.3	2.3 (1,139)
교사	2.6	2.2	2.3	2.3	2.1	2.0	2.3	2.3 (1,247)

주: 1) ①'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라는 생각, ②'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 ③'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 ④'한 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 ⑤'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 ⑥'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 ⑦'이 정도가 아동학대?'라는 생각, ⑧'왜 아이가 말을 안 할까? 학대가 아닌 건가?'라는 생각
2)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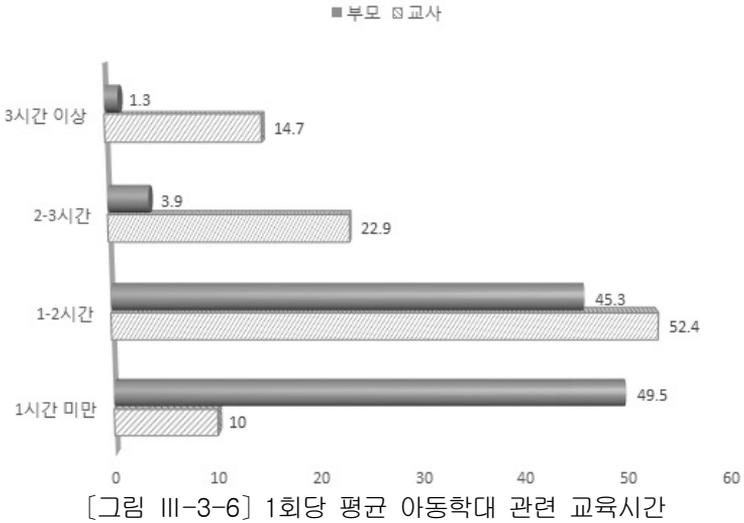
□ 아동학대 관련 교육 정도

-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와 회당 평균 아동학대 관련 교육시간은 상대적으로 교사가 더 많았음.

단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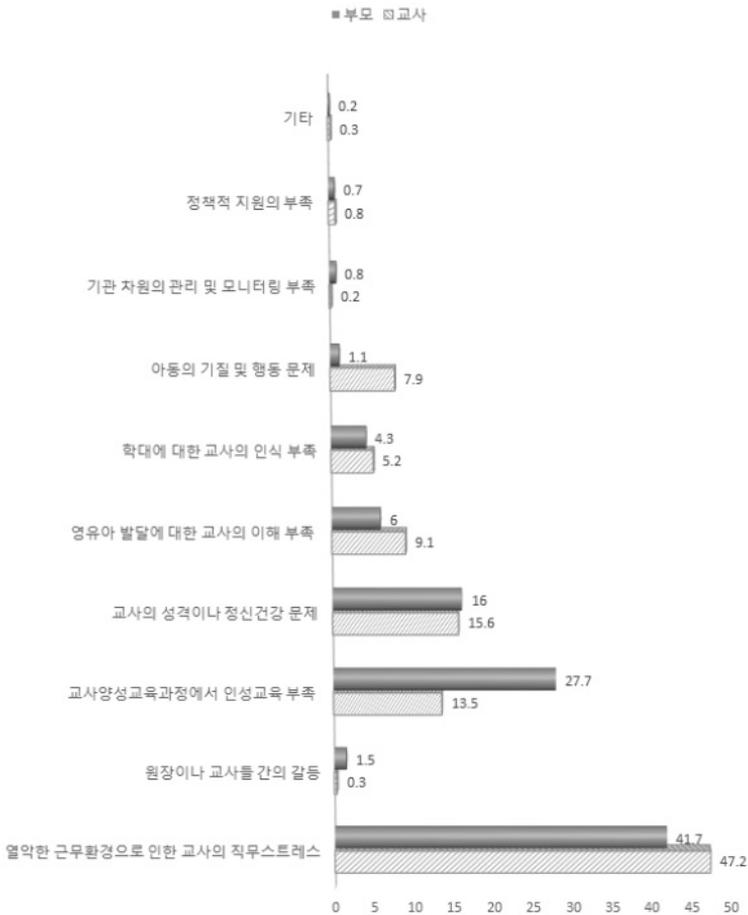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의 효과 여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유사하게 과반이었으나, 큰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부모는 **25.0%**, 교사는 **41.8%**로 교사의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음.

□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부모와 교사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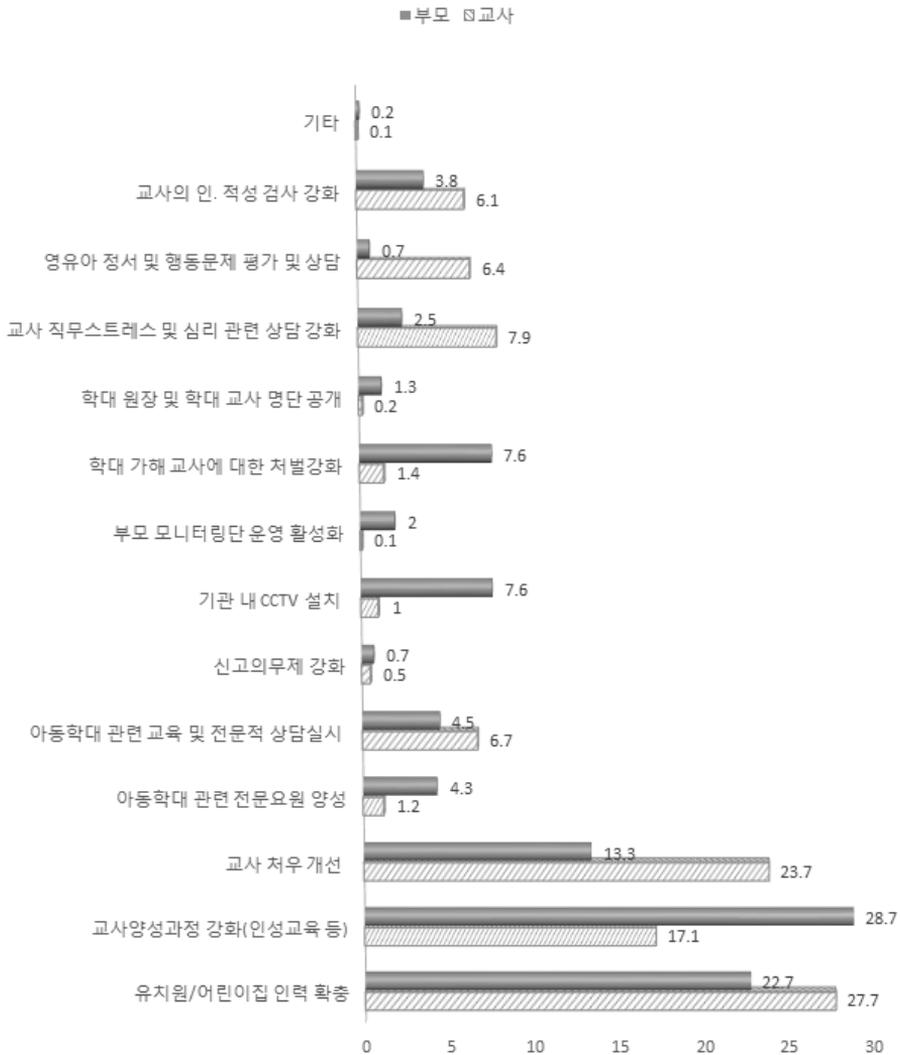
단위: %



[그림 III-3-7]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순위로 부모는 '교사양성과정 강화', 교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력 확충'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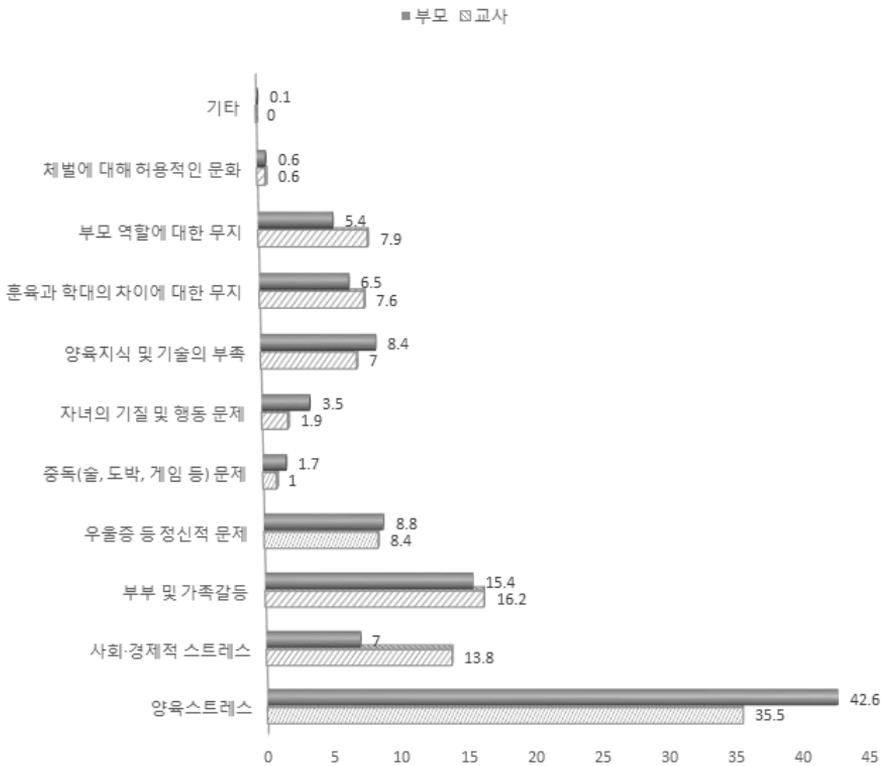
단위: %



[그림 III-3-8]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순위

-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순위는 부모와 교사 모두 양육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부모는 부부 및 가족 갈등,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양육지식 및 기술의 부족을 꼽았으며, 교사는 부부 및 가족갈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꼽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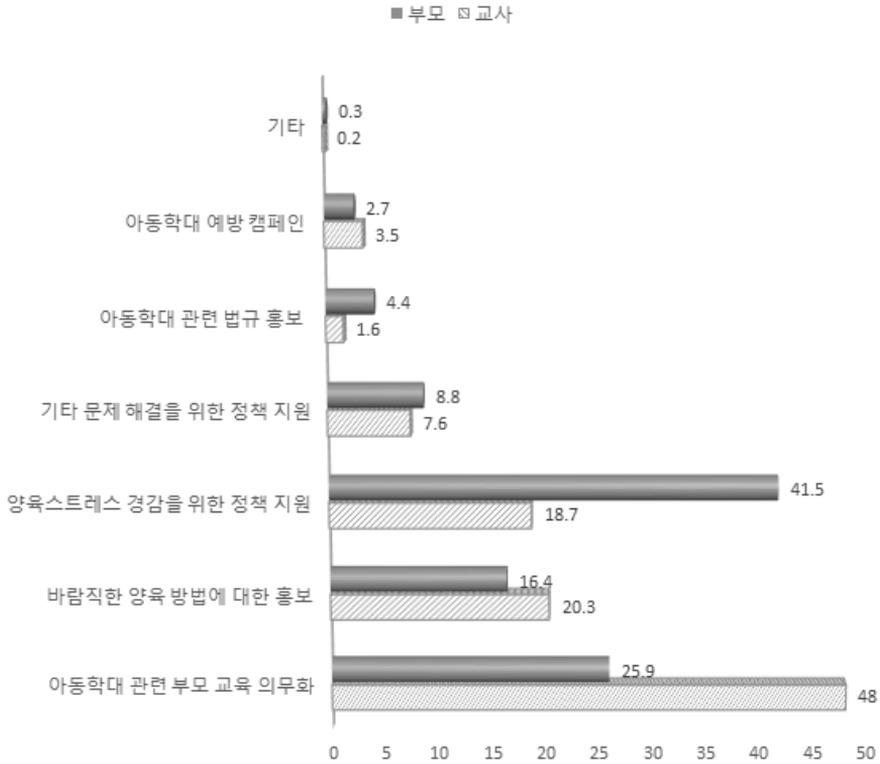
단위: %



[그림 III-3-9]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순위

-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로 부모는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교사는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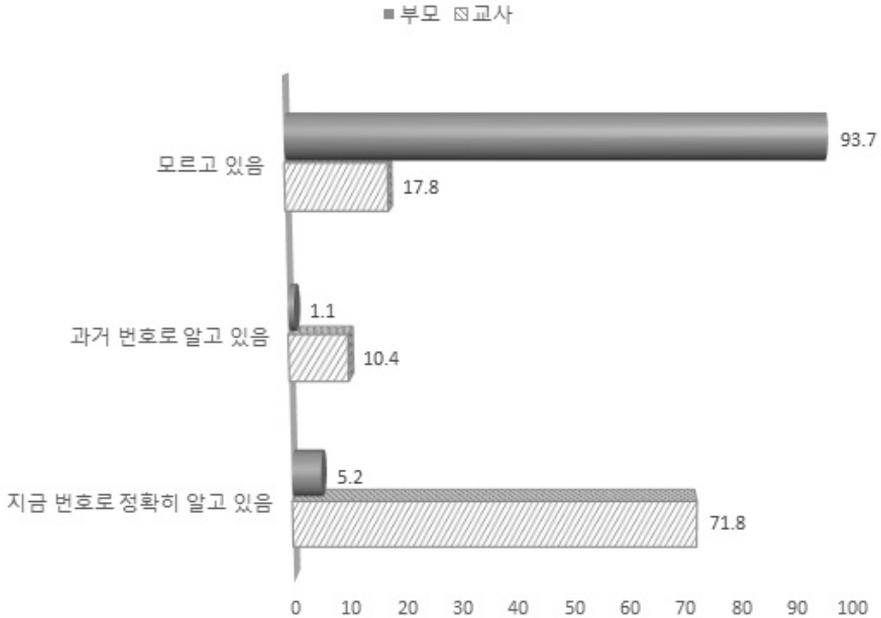
[그림 III-3-10]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경우 남의 가정의 일이고 부모의 양육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사는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및 요구
 -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1.7~3.6점까지 분포가 넓게 나타났는데, 모든 항목에 대해 교사의 인지 정도가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음.
 - 교사는 모든 항목에 대해 대체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잘 모르는 편임.

-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통합 번호 112) 인지 여부에 있어서도 교사는 70% 이상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반면, 부모의 경우는 5% 정도만 정확히 알고 있어 큰 차이를 보임.

단위: %



[그림 III-3-11]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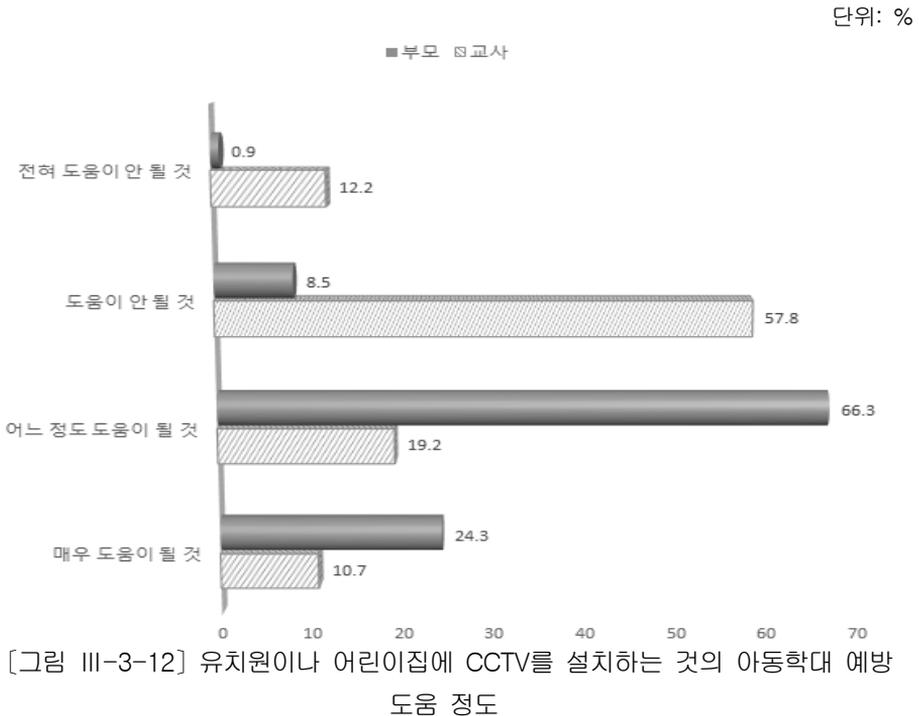
-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부모에 비해 교사의 인지 정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 부모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잘 모르는 편에 가까웠고, 교사는 모든 항목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나타남. 부모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학대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표 IV-3-3〉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인지 정도

								단위: 점(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부모	2.1	2.4	2.4	2.5	2.3	2.6	2.5	(1,139)
교사	3.3	3.6	3.6	3.6	3.5	3.7	3.6	(1,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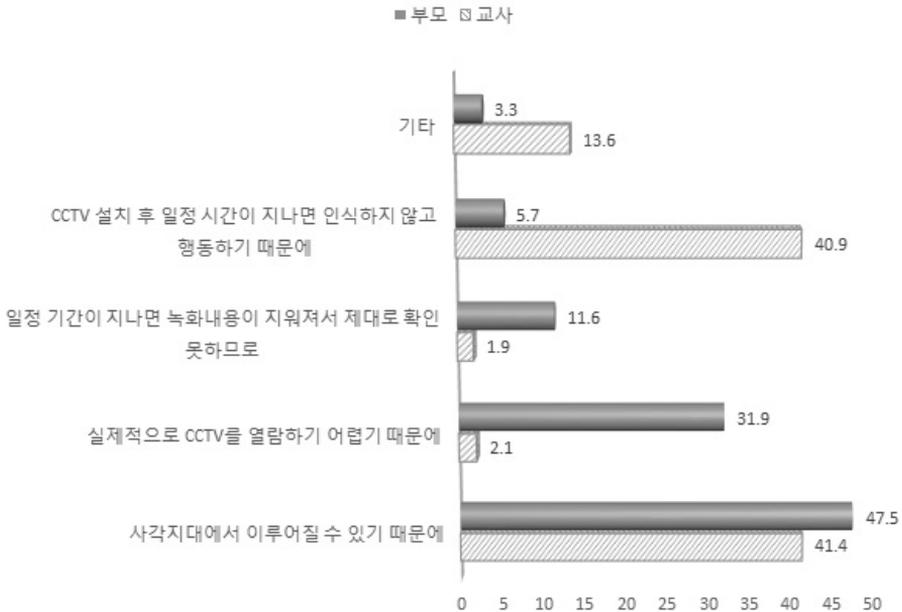
주: 1) ①학대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②가능한 한 증거사진 등을 확보함, ③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함, ④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 ⑤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음, ⑥신고 후에 신고자나 피해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함, ⑦신고 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함
 2)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음을 나타냄.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를 질문한 결과, 부모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90.6%로 대부분이었던 반면, 교사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70.0%로 완전히 반대의 양상을 나타냄.



- 대부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와 교사 모두 사각지대에서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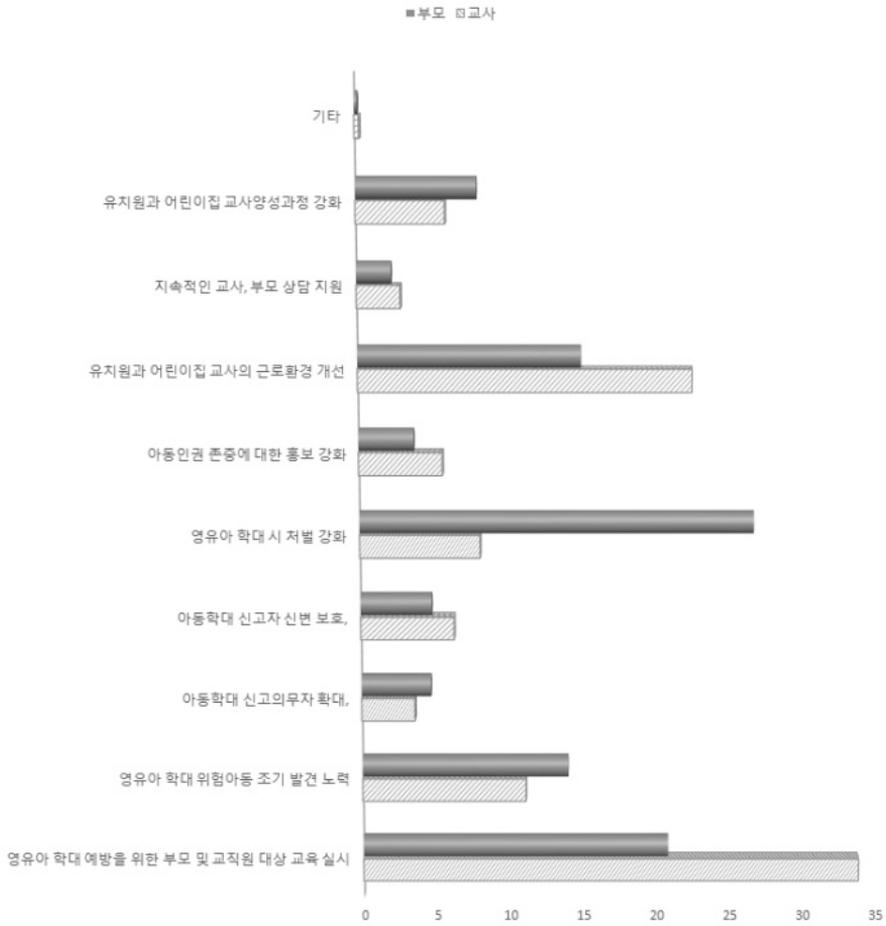
단위: %



[그림 III-3-13] 대부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로 부모는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교사는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라는 응답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임.
- 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 강화에 대해서는 부모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아동학대 신고자 신변 보호, 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교사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단위: %



[그림 III-3-14]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

IV. 영유아 학대 현황분석

- 본 장에서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영유아 학대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영유아 학대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 실제 영유아 학대로 신고된 사례들을 통하여 영유아 학대 특성을 파악하여 영유아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이론적, 임상적 연구결과에 기초하였다면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로 영유아 학대로 신고된 사례들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제시할 것임.
- 이를 위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의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하였음.
 - 영유아 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유형, 학대유형 및 특성, 신고사유를 분석하여 영유아 학대 선별 가이드라인에 필요한 요인을 제시함.

1. 영유아 학대 현황 기초 분석

가. 분석 대상 및 범위

- 영유아 학대의 현황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모든 사례 데이터를 추출하였음.
 - 전국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응급아동학대사례 및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 사례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과 척도 등을 토대로 현장 판단, 기관 내 자체사례회의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및 일반사례로 판단함.
- 아동학대사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분류되어 판단된 사

레임. 조기지원사례는 아동학대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말함. 일반사례는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라고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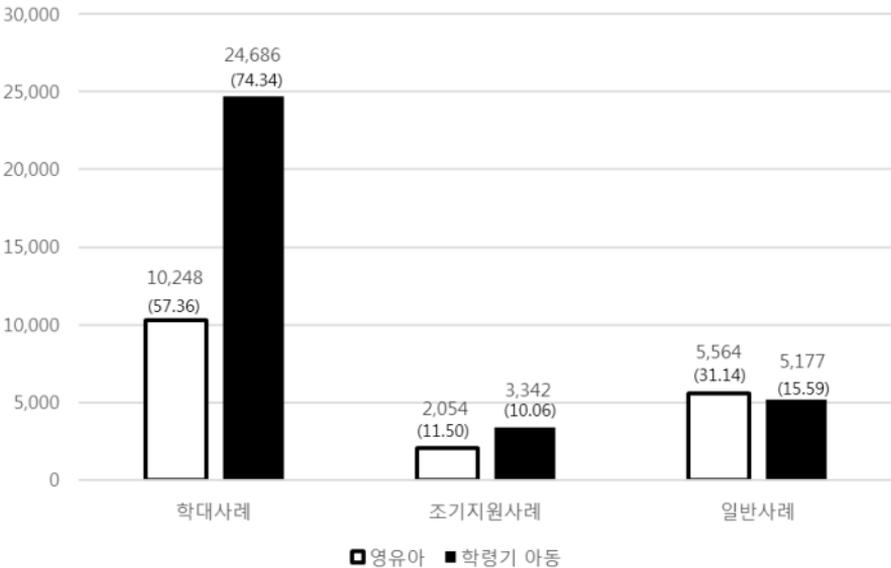
- 본 연구에서 영아는 만 0세에서 2세, 유아는 만 3세에서 6세, 학령기 아동은 만 7세 이상을 말함.

나. 기초분석 결과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학대의심사례의 총수는 51,071건이며 그 중 영유아의 사례 수는 17,866건임.

N= 51,071

단위: 건(%)



[그림 IV-1-1] 연도별 영유아 학대 사례 수

- 영유아 집단의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학대사례는 57.4%, 조기지원사례는 11.5%, 일반사례는 31.1%였으며 영유아 사례는 학령기 아동사례에 비해 일반사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고, 학대사례로 판정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남.

- 학대 피해 영유아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영유아 집단은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비율이 거의 동일한 반면, 학령기 아동 사례는 여아가 10%이상 많았으며 영유아의 연령 분포는 영아가 36.8%였으며 유아가 63.2%로 나타남. 영유아 학대사례 중 6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세, 3세, 5세의 순서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0세와 2세, 0세의 순서로 나타남.
 - 가족형태는 친부모가족은 56.8%, 친부모가족 외 가족 형태가 34.6%, 대리양육형태가 1.5%로 나타남. 영유아 학대사례의 가족형태는 친부모 가족이 가장 많은 반면 학령기 아동의 가족형태는 친부모가족 외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 학대사례 가운데 신체장애가 있는 영유아는 56명(11.4%), 정신장애가 있는 영유아는 124명(25.3%),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는 311명(63.3%)이었음. 학령기 아동 학대사례 가운데 신체장애가 있는 아동은 261명(12.4%), 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은 1,015명(48.1%),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836명(39.6%)이었음.
 - 영유아 학대사례 가운데 정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영유아는 2,862명(48.3%), 적응, 행동문제를 가진 영유아는 522명(8.8%), 발달, 신체건강 문제를 가진 영유아는 2,547명(42.9%)이었음. 학령기 아동 학대사례 가운데 정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아동은 10,321명(49.7%), 적응,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은 6,576명(31.7%), 발달, 신체건강 문제를 가진 아동은 3,862명(18.6%)이었음.
- 학대 행위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영유아 학대행위자의 경우, 남자가 38.1%, 여자가 61.5%인 반면 학령기 아동학대 행위자 성별은 남자가 63.1%, 여자가 36.9%로 나타남. 영유아 학대행위자는 여자가 더 많은 반면 학령기 아동 학대행위자는 남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 집단의 학대행위자와 영유아와의 관계는 부모인 경우가 78.6%, 친인척 3.6%, 대리양육자가 15.7%, 기타가 1.4%로 나타남. 친부나 친모에 의한 학대가 76.9%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 중 보육교직원이 1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치원교직원이 3.4%로 두 번째로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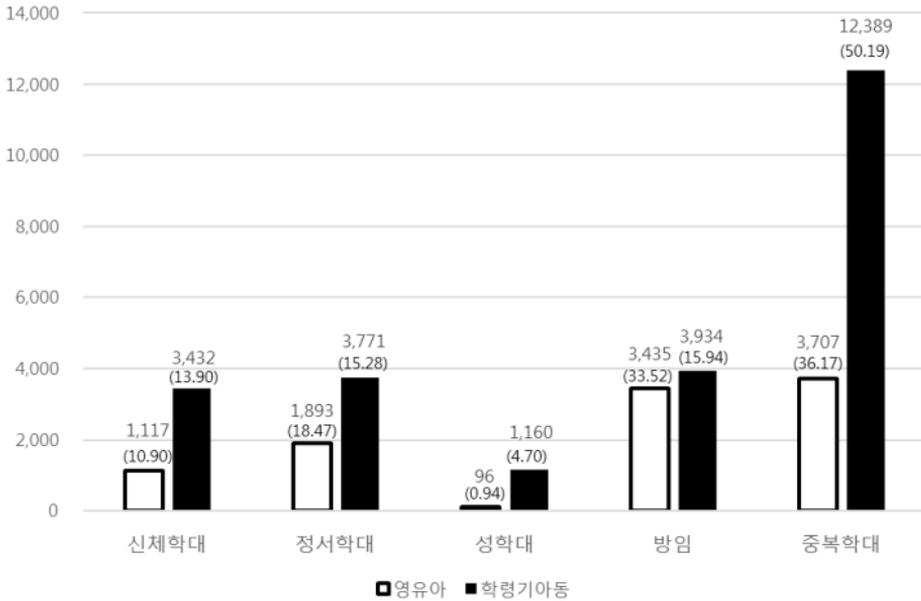
것으로 나타남.

- 영아 학대 행위자의 평균연령은 33.6세였으며, 0세 학대행위자는 30.7세, 1세 학대행위자는 35.0세, 2세 학대행위자는 34.9세로 나타남. 유아 학대 사례 행위자의 평균연령은 37.1세였으며, 3세 학대행위자는 35.4세, 4세는 36.4세, 5세 학대행위자는 37.5세, 6세 학대행위자는 38.8세로 나타남.
- 영유아 학대행위자 가운데 209명(22.5%)이 신체장애, 317명(34.1%)이 정신장애를 가졌으며 405명(43.5%)이 장애가 의심되는 상태였음. 학령기 아동 학대행위자 가운데 622명(34.3%)이 신체장애를 가졌고, 429명(23.7%)이 정신장애를 가졌으며, 763명(42.2%)이 장애가 의심되는 상태임.
- 영유아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5,373명(18.5%)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이 4,676명(16.1%), 부부 및 가족갈등이 3,452명(11.9%), 경제적 어려움이 3,177명(11.0%), 스트레스가 3,102명(10.7%), 성격 및 기질문제가 1,916명(6.6%), 배우자폭력이 1,464명(5.1%), 알콜 남용이 1,415명(4.9%), 사회적 고립이 894명(3.1%), 위생문제가 668명(2.3%), 어릴적 학대경험이 648명(2.2%), 무기력이 612명(2.1%)의 순서로 나타남. 학령기 아동 학대행위자의 특성은 13,865명(20.1%)이 부적절한 양육태도, 11,178명(16.2%)이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7,496명(10.9%)이 부부 및 가족갈등, 7,293명(10.6%)이 스트레스, 6,456명(9.4%)이 경제적 어려움, 5,797명(8.4%)이 성격 및 기질문제, 4,923명(7.1%)이 알콜 남용, 3,400명(4.9%)이 배우자 폭력, 1,625명(2.4%)이 사회적 고립, 1,277명(1.9%)이 어릴적 학대경험, 1,082명(1.6%)이 위생문제, 1,004명(1.5%)이 무기력을 경험함.
- 학대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영유아 학대 유형 중 영아의 경우 신체학대는 8.4%, 정서학대는 15.7%, 성학대는 0.1%, 방임은 47.8%, 중복학대는 28.0%였으며, 유아의 경우 신체학대는 12.4%, 정서학대는 20.1%, 성학대는 1.4%, 방임은 25.2%, 중복학대는 36.2%로 나타남. 학령기 아동 학대사례 중 중복학대가 5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임은 15.9%, 정서학대는 15.3%, 신체학대는 13.9%, 성학대는 4.7%였음.

N= 34,934(영유아:10,248, 학령기아동:24,686)

단위: 건

(%)



[그림 IV-1-2] 영유아 대 학령기 아동 학대 유형

2. 영유아 학대 심화 분석

가. 로지스틱 회귀분석

○ 로지스틱 회귀분석 대상 및 목적

- 가정 내 영유아학대로 신고·접수되면 일반사례, 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로 판정되는데, 이 가운데 학대사례 및 조기지원사례로 판정을 예측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음.
- 영유아 특성, 행위자 및 가족특성, 그리고 사례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예측변인을 밝히고자 함.

1) 가정 내 영유아 학대 로지스틱 회귀분석

○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 영유아 성별, 연령, 신체장애 여부, 정신장애 여부, 정신건강문제 수, 행동문제 수, 발달 문제 수
- 행위자 성별, 연령, 신체장애 여부, 정신장애 여부, 가구유형, 어릴 적 학대경험 여부,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여부, 성격 및 기질문제 여부, 스트레스 여부, 사회적 고립 여부, 경제적 어려움 여부, 배우자 폭력 여부, 알콜 남용 여부, 나태 및 무기력 여부
- 신고자 유형, 학대 유형별 학대 행위 수, 학대사실을 보고한 사람 수, 격리조치 필요 요인 수, 사례판정 유형

○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영유아가 여자인 경우, 발달 문제를 가질수록 일반사례에 비해 영유아 학대사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표 IV-2-1〉 가정 내 영유아 학대 사례 및 조기지원사례 예측 변인 요약

구분	일반사례 기준 영유아학대사례	일반사례 기준 조기지원사례
영유아 특성	여아가 남아에 비해 80% 높음 발달문제 행동 1개 증가 시 50% 높아짐	없음
행위자 특성	어릴 적 학대 경험 시 160% 증가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시 85% 증가 스트레스 경험 시 99% 증가 경제적 어려움 시 61% 증가 알콜 남용 시 254% 증가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시 48% 증가 스트레스 경험 시 49% 증가 경제적 어려움 시 69% 증가 알콜 남용 시 121% 증가
사례 특성	신고의무자 신고 시 65% 증가 신체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1,345% 증가 정서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2,014% 증가 방임 행위 1개 증가 시 4,165% 증가 성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511% 증가 학대사실 보고인 수 1명 증가 시 590% 증가 격리조치 필요요인 수 1개 증가 시 968% 증가	신체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473% 증가 정서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413% 증가 방임 행위 1개 증가 시 269% 증가 학대사실 보고인 수 1명 증가 시 43% 증가 격리조치 필요요인 수 1개 증가 시 368% 증가

- 학대행위자가 어릴 적 학대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양육지식 및 기술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를 보고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알콜 남용 문제를 경험할 때 일반사례에 비해 영유아 학대 사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 사례 특성과 관련하여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때, 신체, 정서, 방임, 성학대 행위 수가 증가할 때, 그리고 학대 사실 보고인 수 및 격리조치 필요 요인수가 증가할 때 일반사례에 비해 영유아 학대 사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2) 가정 외 영유아학대 로지스틱 회귀분석

○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 영유아 성별, 연령, 신체장애 여부, 정신장애 여부, 정신건강문제 수, 행동문제 수, 발달 문제 수
- 행위자 성별, 연령,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여부, 성격 및 기질문제 여부, 스트레스 여부
- 신고자 유형, 학대 유형별 학대 행위 수, 학대사실을 보고한 사람 수, 격리조치 필요 요인 수, 사례판정 유형

○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학대행위자가 양육지식 및 기술이 부족할 때 일반사례에 비해 영유아 학대 사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 사례 특성과 관련하여서 신체, 정서, 방임, 성학대 행위 수가 증가할 때, 그리고 학대 사실 보고인 수 및 격리조치 필요 요인수가 증가할 때 일반사례에 비해 영유아학대 사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표 IV-2-2〉 가정 외 영유아 학대 사례 및 조기지원사례 예측 변인 요약

구분	일반사례기준 영유아학대사례	일반사례 기준 조기지원사례
영유아 특성	없음	없음
행위자 특성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시 393% 증가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시 2.22배 증가
사례 특성	신체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875% 증가 정서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9,281% 증가 방임 행위 1개 증가 시 12,420% 증가 성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9,785% 증가 학대사실 보고인 수 1명 증가 시 134% 증가 격리조치 필요 요인 수 1개 증가 시 656% 증가	신체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152% 증가 정서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756% 증가 방임 행위 1개 증가 시 1,660% 증가 성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787% 증가 학대사실 보고인 수 1명 증가 시 29% 증가 격리조치 필요 요인수 1개 증가 시 339% 증가

나. 잠재집단 분석

○ 잠재집단 분석 목적 및 기능

- 신고·접수된 가정 내 영유아학대 사례 가운데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어떠한 하위집단으로 분류되는지를 살펴보고자 잠재집단 분석을 실시함. 잠재집단 분석은 영유아 학대사례를 영유아, 학대행위자 및 가족, 그리고 사례 특성에 따라 몇 개의 하위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리고 분류된 하위집단들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나타냄.

1) 가정 내 영유아학대 잠재집단 분석

○ 잠재집단 분석 변수

- 영유아 연령, 신체장애 여부, 정신장애 여부, 문제행동 수
- 행위자 성별, 연령, 신체장애 여부, 정신장애 여부, 어릴 적 학대경험 여부,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여부, 성격 및 기질문제 여부, 스트레스 여부, 사회적 고립 여부, 경제적 어려움 여부, 배우자 폭력 여부, 알콜 남용 여부, 나태 및 무기력 여부, 가구유형
- 학대 유형별 학대 행위 수, 학대사실을 보고한 사람 수, 격리조치 필요 요인 수

○ 잠재집단 분석 결과

- 가정 내 영유아학대 잠재집단 분석 결과, 4집단으로 분류되며, 방임집단, 정서학대 집단, 저위험 집단, 신체 및 정서학대 집단으로 분류됨.
- 방임집단에 속한 영유아의 평균연령은 2.28세이며, 장애가 있을 가능성은 2%임. 문제행동은 평균적으로 1개 정도이며, 행위자의 평균 연령은 32세가량임. 약 80%의 행위자가 여성이며 행위자가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9%이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음.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60%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으며, 방임과 함께 성학대를 경험할 가능성도 10%이상으로 높음.
- 정서학대집단은 학대행위자의 어릴적 학대 경험 확률이 높고, 성격 및 기질 상의 문제 및 알콜 남용문제를 가질 확률 역시 높음. 경제적 어려

움 및 배우자 폭력 발생 확률도 높음.

- 저위험집단은 전반적인 위험요인의 확률이나 학대행위가 적음. 대부분의 변수 값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신체 및 정서학대집단은 성격 및 기질 문제,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할 확률이 다소 높음. 정서학대 집단과 비교하여 신체학대 집단의 경우 정서학대와 중복하여 발생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위자 위험요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음.

〈표 IV-2-3〉 각 하위집단별 특성 요약

구분	방임집단	정서학대집단	저위험집단	신체 및 정서학대집단
영유아 특성	영유아 평균연령 2세	영유아 평균연령 3세	영유아 평균연령 3세	영유아 평균연령 3세
행위자 특성	여성일 확률 80% 행위자 장애,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경제적 어려움, 한부모 가구 확률 높음	행위자의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성격 및 기질 문제,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 폭력, 알콜 남용 확률 높음	대체로 위험 요인 확률 낮음	행위자의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성격 및 기질 문제,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사례 특성	성학대 발생 가능성 10%		학대 행위 빈도 수 낮음	정서학대와 중복발생

2) 가정 외 영유아학대 잠재집단 분석

○ 가정 외 영유아학대 잠재집단 분석 변수

- 영유아 연령, 신체장애여부, 정신장애여부, 문제행동 수
- 행위자 성별, 연령, 신체장애 여부, 정신장애 여부,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여부, 성격 및 기질문제 여부, 스트레스 여부, 경제적 어려움 여부
- 학대 유형별 학대 행위 여부, 학대사실을 보고한 사람 수, 격리조치 필요 요인 수

○ 가정 외 영유아학대 잠재집단 분석 결과

- 가정 외 영유아학대 잠재집단 분석 결과, 2개 집단으로 분류되며, 성학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대를 중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기타학대 집단과 성학대를 포함한 모든 학대유형을 경험할 확률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됨.
- 성학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대를 중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기타학대 집단의 영유아는 영유아 연령이 평균 3.25세이며, 장애를 가질 가능성은 1.2%임. 행위자의 평균연령이 성학대 및 기타학대 집단에 비해 10세 이상 어리며, 행위자가 여성일 가능성이 95%임.
- 각 학대 유형을 경험할 확률이 신체학대 66%, 정서학대 44%, 방임 28%임. 또한 성학대와 다른 학대유형이 함께 발생하는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경험 확률이 높음. 영유아 및 행위자의 연령이 성학대와 다른 학대유형이 함께 발생하는 집단에 비해 어림. 경제적 어려움은 거의 없음.
- 성학대를 포함한 모든 학대유형을 경험할 확률을 가진 집단은 남성 가해자일 가능성이 74%가량이며, 영유아의 연령도 4.5세, 가해자의 연령은 50대에 가까움. 격리조치 필요 요인 수가 하나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기타학대집단보다 높음.

〈표 IV-2-4〉 각 하위집단별 특성 요약

구분	기타학대집단	성학대 및 기타학대집단
영유아 특성	영유아 평균연령 3세	영유아 평균연령 4세
행위자 특성	여성일 확률 95% 평균연령 36세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성격 및 기질문제 스트레스	남성일 확률 74% 평균연령 48세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성격 및 기질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례특성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3. 영유아 학대 신고사유 분석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2015년도 사례 중 만 0-6세 영유아학대 건수는 3,336건(28.5%)임. 이 사례들 중 가족 내에서 발생한 사례와 가족 외에서 발생한 사례의 규모에 따라 층화확률비례추출함.
 - 추출된 사례는 총 204명임. 분석에 사용된 사례의 영유아 성별은 남자 104명(51%), 여자 100명(49%)임. 연령은 6세가 41명(20.1%)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4세 36명(15.7%), 3세 32명(15.7%), 5세와 2세가 28명(13.7%), 0세 20명(9.8%), 1세 19명(9.3%)의 순서로 나타남.
- 학대 유형은 다음과 같음.
 -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71건(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방임이 43건(21.1%), 정서 41건(20.1%), 신체 40건(19.6%), 성 9건(4.4%)의 순서로 나타남. 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134건(66.2%), 가정 외 학대가 39건(33.8%)으로 나타남.
 - 가정 내에서 발생한 영유아 학대의 경우 방임이 61건(42.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가 48건(33.6%), 정서학대가 18건(12.6%), 기타 9건(6.3%), 성학대 7건(4.9%) 순서로 나타남.
 - 가정 외에서 발생한 영유아 학대의 경우에는 신체학대가 47건(55.3%)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과 기타가 13건(15.3%), 정서학대 8건(9.4%), 성학대 4건(4.7%)의 순서로 나타남.
- 신고사유는 다음과 같음.
 - 가정 내·외별로 신고사유 분류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 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학대로 판정된 사례의 신고사유 중 신체학대 관련 행위는 영유아를 때리는 행위, 영유아에게 멍, 상흔이 있는 경우, 영유아를 누르는 행위, 영유아를 꼬집는 행위, 영유아를 밀치는 행위, 영유아를 찌르는 행위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정서학대 관련 행위는 영유아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 영유아에게 겁을 주는 행위, 영유아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억지로 밥을 먹이는 행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성학대 관련 행위는 영유아의 성기를 접촉하는 행위, 영유아에게 부부관계를 노출하는 행위, 영유아가 성행위를 모방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성폭행을 하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방입 관련 행위는 영유아를 돌보지 않는 행위, 영유아를 보호자 없이 방치하는 행위, 영유아에게 냄새가 나거나 위생상태가 더러운 경우, 검진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병원에서 무단이탈한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방에 가두는 경우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기타 행위는 영유아의 울음소리가 나는 경우, 영유아의 이상행동이 관찰되는 경우, 영유아가 부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영유아의 상해에 대한 부모의 반응, 영유아가 등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4. 시사점

-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유아 위험요인(다양한 발달상의 문제: 신체발달지연, 언어문제, 영양결핍, 대소변문제, 위생문제, 틱, 잦은 병치레, 주요병력 등, 여자 영유아인 경우), 행위자 관련 위험요인(행위자의 어린적 학대경험, 양육지식 및 기술 부족,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알콜 남용)이 발견될 경우 영유아 및 가족을 접촉하는 전문가의 예방적 노력과 조기개입 및 일반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
- 영유아 및 부모를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지는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의료종사자 등은 위험요인들이 발견될 경우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관찰하여 영유아 학대 여부 및 영유아 학대 가능성을 살펴야함.
- 학대가 의심될 경우,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의뢰하도록 해야 함. 0세에서 12세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희망복지지원단, 서

울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 보건소 산후도우미 등이 빈곤위기가정, 영유아 가정을 방문할 때 학대관련 영유아, 행위자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적절한 모니터링 및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보육교사들도 부모의 양육기술 및 지식 부족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부모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가 필요할 경우 동 주민센터,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이 지역 내 복지자원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도록 해야 함.
- 행위자의 알콜 남용, 스트레스, 어릴 적 학대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등을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이 마련되어 사례관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발적으로 부모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사례관리자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찾아가는’ 형태로 영유아 학대 알콜 남용, 스트레스, 빈곤 등의 위험요인을 가진 ‘부모’에 대한 ‘조기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린 시절의 학대로 인한 정서문제 및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관리 및 대처능력, 알콜 남용 문제 해결 등을 바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적절한 직업훈련 및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잠재집단 분석에서 학대유형별로 영유아 및 행위자 위험요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방임의 경우 영유아의 어린 연령(만 2세 정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편모가정, 모의 장애 및 양육지식 및 기술이 부족한 특성이 있었음. 따라서 이러한 영유아학대 위험가구는 주의해서 모니터링 하거나 예방적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정서학대는 양육자가 스트레스 및 기질문제, 배우자 폭력, 알콜 남용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위험요인을 가진 양육자에 대해 개입하고 영유아와 건강한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중복하여 일어나는 경우도 스트레스, 기질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에 지원하도록 해야 함.

- 가정 외 학대를 예측하는 요인은 행위자의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이었음. 가정 외 학대의 행위자 대부분이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임을 고려할 때,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훈육방법의 교육 및 재교육이 필요하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훈육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하도록 해야 함.
- 예방적 측면에서 영유아 발달특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양육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부모의 경우 산모수첩, 영유아 출생신고,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서 내에 영유아학대 예방 가이드라인이나 영유아 발달단계, 대처방법 등의 정보가 담긴 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교사의 경우 영유아 관련 직군 양성과정 내 영유아 학대나 발달특성과 이에 따른 대처방법 등에 대한 커리큘럼이 필요하고 보육·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배치되는 영유아 담당자는 별도로 교육을 이수하여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을 증진시켜야 함.
-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부모-자녀 관계의 초기에는 영유아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높은 시기이므로 보편적 형태의 가정방문서비스의 제도화가 필요함. 특히, 영유아학대 위험이 있는 빈곤, 약물남용,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집중적 가정방문서비스가 필요함. 또한 가정방문을 통하여 영유아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학대를 발견했을 시에는 조기발견 및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교사의 경우에는 적절한 휴식 등의 업무량 조절, 업무환경 조성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조기발견의 측면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영유아 학대 예방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영유아 학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함.
- 정부의 아동학대 상시발굴체계 구축 시 영유아 학대 특성으로 밝혀진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알콜 남용 등의 요인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함.

V. 영유아 학대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 본 장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아동복지법위반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확정된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영유아인 사건의 수사재판기록 조사를 통하여 영유아학대의 특성을 살펴보았음(총 186건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조사).
-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및 전담검사, 전담판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영유아학대의 특성은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크게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구분하여 특성을 파악해 보았음.

1. 영유아학대 사건 특성 분석

가. 학대유형

- 학대유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일학대가 67.7%, 중복학대는 32.3%로 나타났음.
 - 이를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를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단일학대의 비율은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가 각각 66.3%, 69.0%로 나타나 비가족학대의 경우 단일학대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음.
 - 중복학대의 비율은 가족학대 가운데 33.7%, 비가족학대 중 69.0%였음.
- 학대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학대만 발생한 경우가 4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함께 일어난 경우가 15.1%로 나타남. 신체학대는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 모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가족학대의 경우 43.0%인데 비해 비가족학대 중 신체학대 비율은

53.0%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음.

-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같이 발생한 경우도 가족학대의 경우 12.8%인데 비해 비가족학대는 17.0%로 다소 높게 나타남. 한편, 가족학대의 경우 12.8%가 유기로 조사되었으며, 방임과 유기가 함께 일어난 경우도 5.8%로 나타났음.
- 비가족학대의 경우 신체학대의 비율이 높은 반면, 가족학대의 경우 보호자의 보살핌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유아에게 방임 및 유기가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V-1-1〉 학대유형(가족/비가족학대)

		단위: 건(%)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단일 학대	신체학대	37(43.0)	53(53.0)	90(48.4)
	정서학대	1(1.2)	7(7.0)	8(4.3)
	성학대	2(2.3)	4(4.0)	6(3.2)
	방임	5(5.8)	4(4.0)	9(4.8)
	유기	11(12.8)	0(0.0)	11(5.9)
	매매 및 불법입양	1(1.2)	1(1.0)	2(1.1)
	계	57(66.3)	69(69.0)	126(67.7)
중복 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11(12.8)	17(17.0)	28(15.1)
	신체학대+성학대	2(2.3)	1(1.0)	3(1.6)
	신체학대+방임	7(8.1)	6(5.9)	13(7.0)
	신체학대+유기	1(1.2)	0(0.0)	1(0.5)
	방임+정서학대	0(0.0)	2(2.0)	2(1.1)
	방임+성학대	0(0.0)	1(1.0)	1(0.5)
	방임+유기	5(5.8)	0(0.0)	5(2.7)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2(2.3)	3(3.0)	5(2.7)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1(1.2)	1(1.0)	2(1.1)
	계	29(33.7)	31(31.0)	60(32.3)
계	86(100.0)	100(100.0)	186(100.0)	

나. 학대지속여부 및 지속기간

- 영유아의 학대지속여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53.8%는 단발성이었던 반면, 46.2%는 학대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단발성 사건의 비율은 가족학대의 경우 48.8%, 비가족학대는 58.0%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학대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비가족학대 중 42.0%였으며 가족학대의 경우 51.2%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대의 지속성은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의 차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남.
- 학대가 지속된 비가족학대 사건 중 지속기간이 일주일 이내였던 사건은 39.0%, 한 달 이내인 사건은 29.3%로 68.3%는 학대가 지속된 기간이 한 달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됨. 이 비율은 가족학대의 경우 현저히 낮아져 26.8%로 나타났다.
- 학대가 지속되었던 가족학대 사건 가운데 41.5%가 지속기간이 한 달 이상 6개월 이내로 나타나, 비가족학대의 19.5%에 비하여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음.
- 특히 학대가 지속된 가족학대 사건 가운데 14.6%는 1년 이상 학대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 학대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발견과 개입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표 V-1-2〉 학대지속여부 및 지속기간(가족/비가족학대)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단위: 건(%) χ^2
학대 지속여부	지속됨	44(51.2)	42(42.0)	86(46.2)	1.562
	단발성	42(48.8)	58(58.0)	100(53.8)	
계		86(100.0)	100(100.0)	186(100.0)	
학대가 지속된 경우	일주일 이내	3(7.3)	16(39.0)	19(23.2)	19.268**
	한 달 이내	8(19.5)	12(29.3)	20(24.4)	
	6개월 이내	17(41.5)	8(19.5)	25(30.5)	
	1년 이내	7(17.1)	5(12.2)	12(14.6)	
	1년 이상	6(14.6)	0(0.0)	6(7.3)	
계		41(100.0)	41(100.0)	82(100.0)	

** $p < .01$

2. 영유아학대 가해자 특성 분석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먼저 성별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자가

68.3%, 남자가 31.7%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해자의 성별을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구분해서 보면, 가족학대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52.3%로 여성의 47.7%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비가족학대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86.0%였으며, 남성인 경우는 14.0%에 불과하였음.

〈표 V-2-1〉 가해자 성별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단위: 건(%) χ^2
가해자 성별	남자	45(52.3)	14(14.0)	59(31.7)	33.293*
	여자	41(47.7)	86(86.0)	127(68.3)	
계		86(100.0)	100(100.0)	186(100.0)	

* $p < .05$.

- 영유아학대 가해자의 혼인상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결혼(재혼)이 52.7%, 미혼이 14.1%, 동거(사실혼)가 10.3%, 이혼이 8.7%, 별거가 7.1% 등으로 나타났다.

〈표 V-2-2〉 가해자 혼인상태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단위: 건(%)
미혼	6(7.1)	20(20.2)	26(14.1)	
결혼(재혼)	38(44.7)	59(59.6)	97(52.7)	
동거(사실혼)	18(21.2)	1(1.0)	19(10.3)	
이혼	9(10.6)	7(7.1)	16(8.7)	
별거	12(14.1)	1(1.0)	13(7.1)	
사별	2(2.4)	5(5.1)	7(3.8)	
알 수 없음	0(0.0)	6(6.1)	6(3.3)	
계	85(100.0)	99(100.0)	184(100.0)	

- 가해자 혼인상태를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구분해서 보면, 가족학대의 경우에는 결혼(재혼)이 44.7%, 동거(사실혼)가 21.2%, 별거가 14.1%, 이혼이 10.6%, 미혼이 7.1%, 사별이 2.4%였음.
- 가족내 영유아학대 사례에서 가해자가 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를 보면, 동거, 이혼, 별거 등의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할 경우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비가족학대의 경우에는 가해자 결혼상태가 결혼(재혼)인 경우가 59.6%였으며, 미혼은 20.2%, 이혼은 7.1%, 사별은 5.1% 등이었음.
- 가해자의 가구월평균 소득을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구분해서 보면, 가족학대의 경우에는 가구월평균소득이 100만원대인 비율이 30.2%였으며, 200만원대가 20.9%, 100만원 미만인 17.4%, 500만원 이상이 3.5%, 300만원대와 400만원대가 각각 2.3%였음. 가구월평균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는 23.3%였음.
- 가족학대의 경우 가구월평균 소득이 100만원대 이하인 비율이 47.6%로 절반 가까이 되었음.
 - 비가족학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100만원대인 비율이 25.0%였으며, 200만원대가 13.0% 등이었고, 가구월평균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51.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비가족학대의 경우 수사재판과정에서 가구월평균 소득을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가족학대에 비해 훨씬 많은 것임.
 - 여기서의 자료를 보면 영유아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이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영유아학대 발생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줌.

〈표 V-2-3〉 가해자의 가구월평균 소득

구분	단위: 건(%)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월 100만원 미만	15(17.4)	3(3.0)	18(9.7)
10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	26(30.2)	25(25.0)	51(27.4)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	18(20.9)	13(13.0)	31(16.7)
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	2(2.3)	4(4.0)	6(3.2)
400만 원 이상~500만원 미만	2(2.3)	4(4.0)	6(3.2)
500만원 이상	3(3.5)	0(0.0)	3(1.6)
알 수 없음	20(23.3)	51(51.0)	71(38.2)
계	86(100.0)	100(100.0)	186(100.0)

나. 학대 동기(가해자 기준)

- 수사재판과정에서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의 범행 동기를 보면, 가족학대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잘못이나 문제로 인해 학대를 하게 되었다(가해자 말을 듣지 않거나, 잘못을 저지른 경우, 울거나 보채 경우를 합한 비율)는 비율이 47.6%였음.
-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거나, 술김에, 스트레스성, 귀찮아서, 관심없어서 등 가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학대를 하게 되었다는 비율은 23.9%였으며, 경제적 이유 등 구조적 이유라는 비율은 18.6%였음.
- 가해자 개인의 잘못과 경제적 이유까지 합한 비율을 보면 42.5%였음. 가족내에서 영유아를 학대를 할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아동이 유발했다고 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지만, 가해자 개인의 잘못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비율도 적지 않았음. 한편 전자에 속하는 경우 보호자의 잘못된 양육방식으로 학대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비가족학대의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의 범행동기를 보면, 피해아동의 잘못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비율이 72%로 상당히 많았으며,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학대가 발생하였다는 비율은 5.0%에 불과하였음.

〈표 V-2-4〉 가해자 진술에 따른 범행동기(가족/비가족학대)

구분	단위: 건(%)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피해 아동이 가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말을 안 들어서)	15(17.4)	38(38.0)	53(28.5)
피해 아동이 잘못을 저질러서 (심한 장난, 거짓말, 물건 고장 냄 등)	10(11.6)	22(22.0)	32(17.2)
울거나 보채서 (시끄럽게 해서)	16(18.6)	12(12.0)	28(15.1)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13(15.1)	2(2.0)	15(8.1)
술에 취해 술김에	6(7.0)	0(0.0)	6(3.2)
스트레스성	2(2.3)	3(3.0)	5(2.7)
귀찮아서	3(3.5)	0(0.0)	3(1.6)
관심 없음(방임)	2(2.3)	0(0.0)	2(1.1)
경제적 이유	16(18.6)	0(0.0)	16(8.6)
혐의 부인(의도치 않음 또는 전면 부인)	1(1.2)	16(16.0)	17(9.1)
기타	2(2.3)	7(7.0)	9(4.8)
계	86(100.0)	100(100.0)	186(100.0)

-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 모두에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보다는 피해아동의 문제로 인해 학대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만, 특히 비가족학대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영유아학대의 경우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며, 적어도 학대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3. 영유아학대 피해자 특성 분석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 영유아학대 피해자의 연령을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를 구분하여 보면, 가족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만 12개월 미만인 경우가 19.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세가 18.6%였음.
- 반면 비가족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만 2세와 3세가 각각 동일하게 19.0%로 가장 많았으며 만 7세인 경우는 2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V-3-1〉 사건피해자 연령

구분	단위: 건(%)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0세	17(19.8)	8(8.0)	25(13.4)
1세	8(9.3)	17(17.0)	25(13.4)
2세	9(10.5)	19(19.0)	28(15.1)
3세	12(14.0)	19(19.0)	31(16.7)
4세	7(8.1)	12(12.0)	19(10.2)
5세	16(18.6)	13(13.0)	29(15.6)
6세	3(3.5)	10(10.0)	13(7.0)
7세	14(16.3)	2(2.0)	16(8.6)
계	86(100.0)	100(100.0)	186(100.0)

- 전체적으로 만 3세 미만인 피해자의 비율이 높아 언어습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대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음.

- 특히 가족학대의 경우 가장 취약한 연령인 만 0세 피해자 비율이 높아 학대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영유아학대 피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영유아가 전체의 57.3%로 여자 피해자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피해자의 성별차이는 특히 비가족학대에서 크게 나타났는데, 남자 영유아 피해자가 62.0%, 여자 피해자가 38.0%로 남자 피해자의 비율이 1.6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 이를 유치원과 유치원에서 발생한 비가족학대에 한정하여 분석해보면, 남자 피해자가 62%, 여자 피해자가 38%로 남자 영유아가 학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가족학대의 경우 남자 피해자와 여자 피해자의 비율이 각각 51.8%와 48.2%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V-3-2〉 사건피해자 성별

구분				단위: 건(%)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χ^2
남자	44(51.8)	62(62.0)	106(57.3)	1.967
여자	41(48.2)	38(38.0)	79(42.7)	
계	85(100.0)	100(100.0)	185(100.0)	

나. 가해자와의 관계

- 다음으로, 영유아학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았음.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구분하여보면, 가족학대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친 자녀인 경우는 72.1%였고 양·계자녀이거나 동거 애인의 자녀인 경우는 24.4%였음.
-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척 관계였던 경우는 가장 적은 3건으로 3.5%였음.
- 비가족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학원/학교/보육원생인 사건이 85%로 대다수를 차지했음.
-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 모르는 관계에서 학대가 발생한 사건으로 7%로 나타났음.

- 종합해보면, 가족학대의 경우 자녀를 학대한 사건이 96.5%였고, 비가족학대의 경우 학원/학교/보육원생을 학대한 사건이 85%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의존하는 상대가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남.

〈표 V-3-3〉 가해자와의 관계(가족/비가족학대)

구분	단위: 건(%)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친자녀	62(72.1)	0(0.0)	62(33.3)
양, 계자녀/동거 애인의 자녀	21(24.4)	0(0.0)	21(11.3)
친척	3(3.5)	0(0.0)	3(1.6)
친구/이웃의 아이	0(0.0)	3(3.0)	3(1.6)
학원/학교/보육원생	0(0.0)	85(85.0)	85(45.7)
모르는 관계	0(0.0)	7(7.0)	7(3.8)
기타	0(0.0)	5(5.0)	5(2.7)
계	86(100.0)	100(100.0)	186(100.0)

다. 학대 피해결과

- 다음은 영유아학대로 인한 피해의 결과를 피해유형과 정도에 따라 살펴보았음. 우선 피해유형을 보면, 신체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 186건 가운데 123건으로 66.1%였고, 정신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28.0%인 52건이었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도 11건에 달해 전체 사례 중 5.9%를 차지하였음.
 - 이를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나누어보면, 신체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가족학대 중 64.0%, 비가족학대 중 68.0%로, 비가족학대 가운데 신체피해가 발생한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신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도 큰 차이는 없었으며, 가족학대 중 25.6%, 비가족학대 중 30.0%로 나타났음.
 -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영유아학대 가운데 상당수가 가족학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비가족학대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2.0%인데 반해, 가족학대 가운데 10.5%인 9건에서 피해영유아가 사망하여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즉, 가정 내에서 영유아학대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가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 피해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비가족학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표 V-3-4〉 피해결과 유형(가족/비가족학대)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단위: 건(%)	
					χ^2
신체피해	55(64.0)	68(68.0)	123(66.1)		
정신적 피해만 있음	22(25.6)	30(30.0)	52(28.0)	6.040*	
사망	9(10.5)	2(2.0)	11(5.9)		
계	86(100.0)	100(100.0)	186(100.0)		

* $p < .05$

- 또한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피해결과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상처가 없거나 경미한 상처에 그친 경우는 전체 186건 가운데 각각 32.3%와 25.8%였음.
- 이어서 피해영유아가 단순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은 경우는 24.2%였으며, 피해자가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심한 상처를 입은 경우도 전체의 10.8%였음.
- 특히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상처의 경우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에서 각각 20.9%, 2.0%로 나타나 가족학대에서 영유아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줌.

4. 영유아학대 피해자보호지원 현황 분석

가. 피해자 진술 관련 현황

- 본 수사재판기록조사에서는 영유아학대피해자의 특성조사와 함께 피해자보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함께 조사하여 분석하였음.
- 우선, 영유아학대의 특성 상 피해자진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음.

- 조사 결과, 전체 사례 가운데 피해영유아의 진술이 이루어진 사건은 총 3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언어능력이 미발달한 영유아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호자 및 제3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음. 이에 따르면 피해영유아의 보호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경우는 전체 사례 중 36.6%였고, 제3자가 대신 진술한 경우는 25.3%였음.
- 이를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피해영유아가 직접 진술한 사건은 가족학대가 26.7%로 비가족학대의 13.0%에 비해 2배 가량 많았음.

〈표 V-4-1〉 사건처리단계 시 피해자 진술 여부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단위: 건(%)
				χ^2
피해영유아	23(26.7)	13(13.0)	36(19.4)	21.177**
보호자	22(25.6)	46(46.0)	68(36.6)	
제3자	30(34.9)	17(17.0)	47(25.3)	
보호자+제3자	3(3.5)	12(12.0)	15(8.1)	
피해영유아+보호자	5(5.8)	10(10.0)	15(8.1)	
피해영유아+제3자	3(3.5)	2(2.0)	5(2.7)	
계	86(100.0)	100(100.0)	186(100.0)	

** $p < .01$

- 마찬가지로 제3자가 피해영유아를 대신하여 진술한 경우는 가족학대 중 34.9%로 비가족학대 중 17.0%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반면, 보호자가 진술한 비율을, 보호자 진술, 보호자 및 제3자 진술, 보호자 및 피해영유아 진술 경우를 모두 합해보면, 비가족학대 중 68.0%인데 비해 가족학대의 경우는 34.9%에 그쳐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유아학대 사건처리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아직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할 만큼 언어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볼 때 피해자의 상태를 가장 면밀히 관찰하여 대신 진술해줄 수 있는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가족학대의 경우 보호자가 곧 가해자인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보호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영유아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진술이 이루어진 장소 및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먼저 영유아피해자가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 총 56건 가운데 결측값을 제외하고 진술이 이루어진 장소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32.1%가 해바라기센터를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원스톱 지원센터와 경찰서에서 각각 26.4%와 18.9%의 진술이 이루어졌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비교적 소수인 13.2%의 사건에서 피해영유아 진술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아동의 집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사건은 1건이었음.
- 이를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족학대의 경우 원스톱 지원센터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각각 31.0%와 24.1%가 이루어졌음.
- 다음으로 많은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17.2%를 차지했으며 경찰서에서 피해영유아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도 13.8%였음.
- 한편, 비가족학대의 경우, 해바라기센터를 포함한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은 진술이 이루어져 41.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경찰서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가 각각 25.0%와 20.8%였음.
- 비가족학대 사건의 경우, 가족학대에 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진 비율이 다소 낮아 8.3%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피해영유아의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 여부를 살펴보면, 31.9%의 진술사례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 진술조력인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임.

〈표 V-4-2〉 진술장소 및 진술조력인 도움여부

구분	단위: 건(%)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영유아 진술시 진술 장소			
경찰	4(13.8)	6(25.0)	10(18.9)
아동보호전문기관	5(17.2)	2(8.3)	7(13.2)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센터(해바라기센터 포함)	7(24.1)	10(41.7)	17(32.1)
원스톱 지원센터	9(31.0)	5(20.8)	14(26.4)
피해아동의 집	1(3.4)	0(0.0)	1(1.9)
기타	3(10.3)	1(4.2)	4(7.5)
계	29(100.0)	24(100.0)	53(100.0)
진술 조력인 도움 여부			
예	10(38.5)	5(23.8)	15(31.9)
아니요	16(61.5)	16(76.2)	32(68.1)
계	26(100.0)	21(100.0)	47(100.0)

나. 관련 기관 개입 현황

- 영유아학대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여부와 사건관리회의 개최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전체 사례 중 53.2%인 99건으로 나타났음.
- 이와 관련하여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 사건을 비교해보면, 가족학대 사건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한 사건은 59.3%인 51건으로 확인되었고, 비가족학대 사건 중에는 52.0%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가 개최된 사건은 본 수사재판기록조사에서 총6건으로 확인되어 저조한 현황을 보였음.
- 특히 가족학대 사건 가운데 사건관리회의가 열린 사례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음. 법조인,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등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피해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V-4-3〉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 및 사건관리회의 개최 여부

				단위: 건(%)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χ^2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여부				
예	51(59.3)	48(48.0)	99(53.2)	2.372
아니오(언급없음)	35(40.7)	52(52.0)	87(46.8)	
계	86(100.0)	100(100.0)	186(100.0)	
사건관리회의 개최여부				
예	0(0.0)	6(5.9)	6(3.2)	
아니오(언급없음)	86(100.0)	94(94.0)	180(96.8)	
계	86(100.0)	100(100.0)	186(100.0)	

다. 응급조치 현황

- 다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현황을 살펴보았음.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족학대의 경우 83건 가운데 하나 이상의 응급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71%인 59건이었음.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보호시설 인도로, 가족학대 사건 가운데 41%에서 이러한 응급조치가 취해졌음.

〈표 V-4-4〉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가족/비가족학대)

				단위: 건(%)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가해자와 격리	26(31.3)	8(8.3)	34(19.0)	
보호시설 인도	34(41.0)	2(2.1)	36(20.1)	
의료기관 인도	17(20.5)	5(5.2)	22(12.3)	
없음	5(6.0)	9(9.4)	14(7.8)	
알 수 없음	19(22.9)	75(78.1)	94(52.5)	
계	83(100.0)	96(100.0)	179(100.0)	

- 이어서 31.3%의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격리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한 경우도 20.5%로 나타났음. 반면, 비가족학대의 경우 96건 가운데 하나 이상의 응급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12.5%인 12건에 그쳤음.
-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로 8건으로 나타났으

며,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한 사건은 5건, 보호시설로 인도한 사건이 2건으로 조사되었음.

라. 임시조치 현황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규정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가운데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취해진 임시조치 현황을 가족학대에 한하여 살펴보았음. 총 86건의 가정 내 영유아학대 사건 가운데 학대행위자에게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조치 중 하나라도 취해진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36%인 31건으로 나타났음.
 - 이 가운데 83.9%인 26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35.5%인 11건에서 가해자에게 전기통신을 통한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졌음.
 - 가해자에게 퇴거명령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22.6%,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12.9%였음.
- 이를 영아학대와 유아학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유아학대의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91.3%로 대부분의 사건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V-4-5〉 사건처리단계에서 학대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현황

구분	단위: 건(%)		
	영아	유아	계
퇴거	4(50.0)	3(13.0)	7(22.6)
접근금지	5(62.5)	21(91.3)	26(83.9)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	3(37.5)	8(34.8)	11(35.5)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1(12.5)	3(13.0)	4(12.9)
계	8(100.0)	23(100.0)	31(100.0)

- 이와 함께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도 34.8%로 조사되었음. 이에 비하여 퇴거명령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조치는 각각 13.0%로 비교적 낮은 비율로 나타났음.
-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영아인 사건의 경우, 접근금지와 퇴거 명령,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내려진 사건이 모두 비슷한 건수로 조사되었음. 이와 함께 영아학대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의 친권제한 및 정지조치가 취해진 사건은 1건으로 나타났음.

5. 영유아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문제점

가. 사건 신고 단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고유영역 불명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접수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되어 있음.
- 비록 우리 법에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자, 관련자 등의 조사를 경찰이 담당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두 기관의 역할이 중첩되면서 어느 범위까지가 고유의 영역인지 명확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도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수사는 우리가 전문이지만,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그쪽(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이다. 서로가 애매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가 고유의 영역인지 명확하지 않다. 말 한마디 자체가 각각의 영역에 침해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협업으로 인해 한 사건을 다른 시선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단정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된다(경찰).”

-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경찰관이 법률을 아직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학대에 대한 의견차이, 수사와 피해자 보호 간의 관점 차이 문제가 생기는 등, 현장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상호간의 조율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보임.

“앞에서는 경찰들에게 항상 감사를 표하지만 실상으로는 그들 때문에 힘들다고 많이 한다. 지역에서 만나는 수사팀 경찰들에게 갑자기 만들어진 특례법과 기타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경찰입장에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상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경찰 설득을 하는 작업이 가장 고생이긴 한데 그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상담원들은 특례법을 써야 사례가 손에 들어오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특례법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거부적인 행위자들을 만나면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경찰들을 대동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다(아동보호전문기관).”

- 향후 예상되는 두 직책간의 의견불일치와 범위 침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실무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임.

나. 영유아학대의 특성을 감안한 보호·지원방안 불충분

- 먼저, 사건 신고단계에서의 영유아학대의 특성을 감안한 현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영유아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라고 하더라도 의존욕구가 강하고 보호자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불안을 호소한다는 점이 특징임.
 -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진술에 간섭하고 피해 아동과의 분리를 방해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부분을 설득하는 것을 가장 힘들다고 함.

“분리를 할 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긴 한데, 보호자와 갈등상태에 있던 고등학생이 아닌,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행위자일지라도 ‘엄마는 나의 보호자’라는 인식이 이미 강하고, 일단은 새로 옮길 장소가 얼마나 안전하지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와 잘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분리된 후 새 장소가 안전하다고 인식한 후에는 다시 (보호자에게) 돌아가려고 하지 않기도 한다(아동보호전문기관).”

- 또한 영유아 아동의 경우 기억력에 대한 한계 등으로 인해 학대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아이들은 상흔에 대해 물어보면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만 하지 엄마가 때렸다는 진술은 잘 하지 않는다. 진술을 아이와 엄마에게서 번갈아 얻다 보면 오염되기 쉬워 한 번에 바로 가는 것이 가장 좋는데 아이들의 단편적인 기억으로만 진술할 경우에는 진술 과정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한다(아동보호전문기관).”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영유아학대 사건의 일차적 현장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행위자와의 분리’라고 주장함.
- 영유아학대 사건의 특성상, 현장대응이 신속히 이뤄져야함을 감안할 때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동학대

행위 저지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음.

- 둘째, 피해자 보호명령 집행단계에서 영유아의 특성을 감안한 보호 및 치료시설들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음.
 -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행위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가족의 구성원이 방임을 하거나 동조한 경우도 많고 친인척 등이 증언 번복을 강요하며 추가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가정법원 판사와의 면담 인용), 실질적으로는 아동을 주로 분리하게 됨. 그러한 경우 피학대 아동은 보호시설로 주로 가게 되는데 영유아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 없어 피학대 아동의 심리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전문가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우리 수탁기관으로 있는 ○○○아동복지센터는 단기시설이라 3개월 안에 장기 시설인 일반 보육시설로 (피학대아동을) 보내게 되어 있다. 일반 보육시설에 가면 아이들에 대한 치료나 상담이 전문적으로 아동학대에 맞춰지지 못하며 해당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없다. 보통 행위자의 행동이 개선되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같이 살아야하는 것이 보호재판의 원칙인데, 어떤 보육시설의 장 같은 경우 그러한 마인드가 없어서 ‘우리 시설에 온 이상 우리 시설 아이들과 똑같이 관리가 되어야한다’며 가족 면회도 못하게 하고 특별관리 역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이나 영유아에 특화된 시설이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가정법원).”

- 이러한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피해아동들을 보호하는 ‘쉼터’라고 불리는 보육시설의 전반적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임.
- 셋째로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아동과의 분리나 격리 등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결정이 없다는 점도 제도의 공백으로 보임.
 - 특히, 인지 및 정서발달 초기에 있는 영유아 아동의 경우 학대피해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과 이러한 피해가 적절히 치료되지 못할 경우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해 보임.

“우선 피해아동 보호명령은 아동의 심리치료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는 않는다. 내용 자체가 분리, 접근 금지, 친권제한, 안전한 기관에 양육 위탁, 행위자 상담위탁 정도로 나뉘지 심리치료 결정은 따로 없다. 직접적인 심리피해 지원이나 상담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따로 해주거나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이 된다. 치료기관 위탁이라는 것이 있어 상해나 심리치료를 치료에 포함시킬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심리치료’라고 명시된 것은 (피해아동 보호명령)에는 없다(검찰).”

다. 피해아동 보호명령 종결 후 사후관리 미흡

-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종결하여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실질적으로 원가정 회복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 법률상 규정된 것은 없음.

“법이 웃긴 것이 1년이라는 (피해아동 보호명령) 기간이 끝나면 처분계약을 끝냈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잘 살라며 끝나게 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따로 모니터링을 할 거라고 여기는 것이다. 아보전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실제로 제대로 되려면 행위자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된 후 행위자와 피해자가 면회하며 상호작용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 단계가 안 되고 있다(가정법원).”

- 위 지적에서 보듯이, 피해아동 보호명령 종결 시 아동과 그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통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로 알려져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현황이나 프로그램 부족 등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한정된 인력으로 신고조사부터 모니터링까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과중된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불충분할 경우 서비스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라. 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전문적 교육·치료 미흡

-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을 비롯, 실행 선고시 형집행 기간 동안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통해 학대 행위자에게 성행 개선에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이처럼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적 심리치료나 교육은 아직은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임.

- 이와 관련하여 행위자 성행교정 교육 중 특히, 보호관찰단계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감명령(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시 처분됨)은 잘 보내지 않으려 한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상담도 많이 부실하고... 행위자들 중 아보전의 초기개입을 통해 아동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아보전 측으로 상담을 받으라고 하면 거부를 한다. 이유인즉, 재판까지 받고 조사까지 받은 것이 아보전 때문인데 다시 거기에서 라포를 형성하고 상담을 받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올 초 전까지는 아보전 상담을 위주로 하다 이번 해부터 아보전 상담은 거의 안 보내고 민간상담 위탁기관 10개를 따로 뽑아서 진행한다(가정법원).”

-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들 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중 일부 기관은 상담제공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음. 그러나 상담 여건이 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법원의 상담처분이 매우 형식적으로 집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행위자 상담 현황 및 전문성에 대해 전주조사가 시행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또한 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지는 반감은 현 상황에서 초기수사부터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상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보임. 과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 생각됨.

마. 기관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 영유아학대의 경우 가정 내 학대가 대다수이지만,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이 장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내 아동학대가 있을 수 있음.
- 현재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임시조치나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경우 가정 내 아동학대를 기준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기관 내 아동학대의 경우는 사건화가 됨과 동시에 행위자가 퇴직을 하거나 부모가 피해아동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없음.
- 그러나, 기관 내 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을 목격하여 트라우마를 겪는 다른 아동이 존재할 수 있어 피해아동 보호명령만으로 학대사건을

온전히 다루기 힘들.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기관 내 학대행위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지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설 내 학대가 발생할 경우, 트라우마가 있는 목격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면 그 아동들에 대해서도 심리치료를 지원한다고 들었다. 목격 아동들에 대한 피해아동 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요구한다면... 현재 제도와는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행위자에게 내려지는 별도의 조치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검찰).”

VI. 정책 제언

□ 본 협동과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음.

제도 및 행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관련 제도에 대한 재검토 · 부처간, 부처와 실행기관 간의 협업 및 시스템 공유 · 의료시스템 및 빅데이터 활용 · 아동학대에 대한 탄력적인 개입 · 가정방문 프로그램 활용 · 학대기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및 교육 	
영유아 학대 예방 방안	부모를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의무화 ·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TV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 부모 자모모임 활성화 · 취약 계층 지원 및 관리 	교사를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교사교육 강화 · 예비교사 선발과정 강화 및 교사양성교육과정 개선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운영 개선 · 교사 직무 부담 감소를 위한 인력 지원 · 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교사상담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교사 자존감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현장에 출동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경찰 대상 매뉴얼 개발 ·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영유아 학대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 조정 · 영유아 피해아동을 위한 시설 및 전문적인 치료 제공 · 가정위탁의 적극적 활용 · 학대가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 강화 · 학대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교정 · 학대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복지서비스로의 정비 	

[그림 VI-1-1]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

1.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가. 제도 및 행정적 지원

□ 아동학대 관련 제도에 대한 재검토

○ 학대 발생 시 기관 폐쇄 조항 개정

- 기관이 폐쇄될 경우 재원하고 있는 원아들은 당장 보육과 교육을 받을 기관을 찾기 어려우며, 기관에 근무했던 교직원들은 즉시 일자리를 잃게 됨. 이러한 조치는 재원하고 있는 원아들과 나머지 종사자에 대한 권리 침해할 가져올 수 있음.
-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인 원장과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 최소한 당해연도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후 원아와 교직원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관을 폐쇄하거나 양도하거나 하는 절차는 그 이후에 진행해야 함.

○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담당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동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둬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부처 간, 부처와 실행기관 간의 협업 및 시스템 공유

- 담당 부처 간의 협업, 전달체계 간의 공동사업, 종사자들 간의 상시 간담회 개최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함.
- 각 부처에서 많은 정책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들 정책을 수행하는 전달체계 센터들과 종사자들 간의 공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취학관리 전담 기구, 위기아동 발굴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확대하여 장기결석, 학업 중단 등 위기학생 정보를 복지부 및 교육부 등의 관련부처와 공유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는 각 부처와 민간 등이 보유한 요보호 위기아동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의료시스템 및 빅데이터의 활용

- 영유아 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가 노출되는 최초의 사회적 시스템은 병원이므로 보험공단의 예방접종기록을 통해 필수예방접종에서 누락된 아동을 추적하고 사례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제도 하에서 접근 가능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유아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집단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아동보호를 위한 데이터 공유와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함.
 -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개인의 권리도 아동의 생명보다 우선시될 수 없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하반기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시범운영할 예정인데,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에 대한 탄력적인 개입

- 일반사례 안에서도 잠재적 학대사례군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이후 학대의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교육이나 조치가 뒤따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학대 판정과 조치 시 학대사례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의 3가지로 판정하고, 일반사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활용

-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위스타트, 포괄적 보육서비스, 다문화가정 양육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가정방문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가능성을 낮추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음.

□ 학대기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및 교육

- 부모와 교사를 포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원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학대 판별 매뉴얼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판별 시 유아교육이나 보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원 관계자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의 정황이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음.

나. 지원대상별 지원

1) 부모를 위한 지원

□ 부모교육 의무화

-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녀를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교육은 필수적임.
 - 가정에서 영유아 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부모가 영유아의 특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임.
- 정부가 부모에게 지원하고 있는 비용과 연계하여 부모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경제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모는 다양한 부모교육이나 매체를 접할 가능성이 적음.
 - 예비부모가 임신하여 국민행복카드(과거 고운맘 카드)를 받을 때 1차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부모가 아동수당이나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받을 때 2차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모교육은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시간과 장소

에 융통성을 부여해야 함.

- 국민행복카드를 받을 때는 임신 시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보육료·교육비 지원의 경우는 처음 기관에 입학할 때 실시하는 부모교육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할 수 있음.
- 교육내용에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함께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
- 부모의 상황이나 필요에 맞추어 추가적인 맞춤형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
 - 취약계층 등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행함.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는 기존의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등의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음.

□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 육아스트레스나 가족 갈등을 경험하였을 때,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메타분석과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원인은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성격 문제 및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 부모상담은 부모의 감정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우울감 극복 프로그램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기초 209개, 광역 15개)를 활용할 수 있음.

□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부모의 육아부담은 줄여줄 수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현존하는 서비스를 부모 누구나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 어머니들은 대부분 육아를 혼자 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

이 받음. 아버지 또한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일이 끝난 후 집에 와서 육아를 함께 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큼. 한부모나 조손 가정에서 홀로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조차 기대할 수 없음.

□ TV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아동을 잘 키우기 위한 방법이나 캠페인을 할 때 TV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부모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주로 TV나 신문 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음.
 - 젊은 부모들의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모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필요 있음.

□ 부모 자조 모임 활성화

-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부모들의 자조 모임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육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공감하며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함.
 -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상담이나 부모교육을 통해 해소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서 적용할 수는 있으나,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부모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통해 장소를 제공하고, 정부 차원에서 상담사나 강사를 파견하는 등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

- 육아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사전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
 - 사회·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취약할 경우 아동학대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함.
 - 생계형 맞벌이나 고소득 전문직 부모들의 경우는 방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빅데이터를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

센터를 두어 사전 예방에 주력해야 함.

- 관리센터는 지역사회 인프라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받은 지역사회 인프라 담당자는 대상 영유아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함.

2) 교사를 위한 지원

□ 현직교사교육 강화

-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학대는 현직교사와 관련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함.
 - 현직교육 시행 시 교사의 신고의식을 고취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행동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소집단으로 진행함.
 - 교사가 어떤 상황에서든 아동학대를 하지 않도록 화가 날 때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 방안을 다루어야 함.

□ 예비교사 선발과정 강화 및 교사양성교육과정 개선

- 교사양성교육과정 개선 이전에 예비교사 선발과정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본성은 변하기 어려우므로 예비교사 선별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함.
 - 예비교사 선발 시 인성검사를 필수로 하고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면접 시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유치원 교사양성 및 신규 진입 시에는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보육교사에게도 동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대학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도구와 활용방안을 보급해야 함.
- 예비교사가 영유아 교사로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사양성교육과정에 인성 관련 과목을 이수하도록 함.

- 교사양성을 위한 모든 교과목에서 예비교사의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교사양성교육과정 중에 예비교사의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운영 개선

- 한 공간에 최소 2명 이상의 성인이 서로를 지켜볼 수 있는 운영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원장, 원감, 보조교사, 교생, 자원봉사자 등 늘 함께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 서로의 행동을 조심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서로 논의하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함.
- 기관에서 아동학대는 발표회 등 집단 행사를 준비하거나 밥 먹이거나 낮잠 자기 등의 생활지도 시간에 교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보조교사 등 지원인력을 투입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교사 직무 부담 감소를 위한 인력 지원

- 교사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교사의 직무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임.
 -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작은 효과이긴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시설 수준이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등의 근무조건이 영향을 미침.
 - 교사의 직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가 보육과 교육이라는 주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교사가 효율적으로 영유아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있도록 배려해야 함.
 - 장시간 영유아들과 함께 하는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는 오전/오후 2교대제를 통해 영유아를 돌보는 시간을 조정하고 전반적인 근무시간을 줄여야 함.

□ 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교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서 관련법 개정과 함께 단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강도가 높은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고 있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함.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 성인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으며, 교사를 위한 공간이나 시설은 극히 제한적임.
 - － 근무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근무환경이 일정부분 아동학대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면 사전에 제거해야 함.

□ 교사상담 서비스 제공

- 교사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교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는 감정노동을 하는 직무에 종사하므로 평소 스트레스가 많은 반면 이러한 감정을 풀 기회가 별로 없음.
 - － 교사상담은 교사 개인의 소진을 막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같은 처지에 있는 교사들과 정기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의 감정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함.

□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교사의 자존감 강화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언론보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보도나 부모의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와 행동은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 부모에게 친근한 방송매체 등을 통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의 하루 일과를 보여주며 교사의 전문성과 아동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거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보육과 교육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교사의 자존감을 강화함.

2. 영유아학대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 학대현장에 출동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경찰대상 매뉴얼 개발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대한 매뉴얼을 통해 경찰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 대응방법 등을 보다 구체화해야 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을 통해 신고를 받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서로 간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에 즉시 출동함.
- 사건관리회의의 활성화
 - 사건관리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영유아학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서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수탁기관장, 경찰,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연구의 수사재판기록조사에서 사건관리회의를 한 비율은 3%대로 거의 없음.
 - 가능한 사건관리회의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영유아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함.
 - 특히 영유아의 경우 피해아동 스스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최선의 지원을 위해 중요함.
-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영유아 학대피해자 지원강화
 - 피해아동의 진술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영유아의 발달특성, 의사표현 방식 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가 학대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조사·심리에서 진술조력인이 수사와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진술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연구의 수사재판기록조사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진술을 한 경우가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 각각 30%대와 20%대였으며, 이 중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30%를 조금 넘는 수준임.
- 가장 어린 아동이 진술을 할 경우 보다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특성을 잘 아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피해영유아가 심리적 안정을 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켜야 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조사·심리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고 있음.
 - 기관 내 학대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으나 보호자가 가해자인 가정 내 학대의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등의 판단으로 필요한 경우 최선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함.
- 피해영유아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술분석전문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야 함.
 -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 아동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를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하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

8) Collins 등(2016)의 연구에 의하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때 아동과 그의 의사소통에 대한 모의 배심원 인식에 진술조력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모의 배심원들이 아동의 의사소통에 대해 신뢰성, 협력, 편안함, 자신감, 정확성, 일관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였음. 또한 진술조력인이 있는 경우 반대신문이 보다 아동 중심적이고, 아동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 조정

- 피해아동 보호명령 기간의 연장 시기를 조절하거나 연장시점을 명문화하지 않도록 할 필요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에 의하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보호명령의 기간을 3개월마다 연장하는 것은 절차적 번거로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6개월로 하여 현실적 여건에 맞출 필요가 있음.
 -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종결시점에 대한 결정은 법원에 있고 가정법원 조사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가 등을 통해 아동의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받고 있으므로 명문화하지 않아도 됨.

□ 영유아 피해아동을 위한 시설 및 전문적인 치료 제공

- 영유아학대 피해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보호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 영유아 피해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는 없기 때문에 영유아가 학령기 아동과 같은 시설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영유아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생활보호혜택이나 의료적 지원, 상담이나 치료 등의 심리적 지원이 소홀해 질 수 있음.
- 현재 피해아동 보호명령 중 아동에 대한 ‘치료위탁’의 경우 대부분 병원치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대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심리치료도 포함되도록 해야 함.

□ 가정위탁의 적극적 활용

- 보호자로부터 장기간 분리되거나 격리되는 영유아를 위하여 가정위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피학대아동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에서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영유아 학대피해자 중 보호자로부터 격리되거나 장기간 분리되는 영유아에게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하여 가정위탁이 필요함.

□ 학대가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 및 인력 보강을 통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계할 수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함.
 - 아동복지법 제28조에서는 아동학대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종료 이후에도 재발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아동보호 전문가위원을 위촉하여 피해아동 보호명령 종결이후 원가정 복귀 시에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음.
 - 영유아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서는 보육전문가 등을 참여시킨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발생가정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영유아학대 사건은 방임사건이 많은데 편부모 가정에서 부모가 생계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양육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음.
 - 영유아 아동은 스스로 욕구표출을 온전히 하기 힘든 상태에서 방임에 놓일 경우 생존을 위협받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보호자가 생계에 종사할 경우, 혹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초생활비가 보장되지 못할 경우 아동 양육에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입되어야 함.
- 피해아동의 원 가정 복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영유아의 특성 상 학대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난 후 원 가정에 복귀하여도 아동은 여전히 미성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장시간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간 행위자의 취업 역시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 사후

관리 차원에서라도 행위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학대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교정

- 학대행위자의 치료 및 교정을 통하여 원가정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가 규정되어 있음.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는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집행유예인 경우 유예기간내에서), 벌금형이나 실형선고시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법에서는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원가정 보호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치료 및 교정을 강조함.
 - 영유아학대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 및 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전문인력, 프로그램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음.

□ 학대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복지서비스로의 정비

- 학대의 상흔에서 회복하고 정상적인 가정의 기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모두가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아야 함.
 - 영유아학대를 비롯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대행위자가 무직이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음.
 - 관련 부처인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이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를 검토하고 중복여부나, 통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혜자나 서비스 안내자들이 보다 손쉽게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가. 가이드라인 관련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대 유형에 따른 신체적·행동적 징후를 소개하였고, 보육교직원용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육교직원들 스스로 아동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파악하고 아동학대 행위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대한소아응급의학회에서는 의료인들의 아동학대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심 사항을 8가지 질문으로 정리하였음. 이 선별도구의 사용 대상은 초등학교 생(만 13세)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의료기관의 응급실이나 개인 병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부모안내서를 배포하였으며 부모가 읽어보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함께 해설을 첨부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함.
 -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교직원 스스로 아동학대 민감성을 점검할 수 있는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 보호 자가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음.
 - NICE에서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신체적·심리적증상과 사인, 그리고 부모나 보호자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도록 제시함. 이 가이드라인은 아동학대 인식을 증진시키고 아동학대나 아동보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전문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됨.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호자·아동·양육환경 위험요인 소개하였으며, Child Abuse Sourcebook에서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영유아 학대 징후에 대한 질문을 소개하였음.
- 가이드라인은 크게 일반인 또는 의료인,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대상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주로 아동학대로 인한 징후 또는 학대행위를 설명하거나 아동학대로 의심해볼 수 있는 아동·부모·가족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음.

나. 가이드라인 개발 기본방향

- 문헌고찰, 데이터 분석결과 도출된 예측 요인 중 양육태도와 지식,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그 원인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나아가 원인발생 시의 대처방법, 학대징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 － 본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분석으로 도출된 예측 요인 중 양육태도와 지식,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사전예방단계와 조기발견단계로 구분함.

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사전예방단계
 - － 영유아 권리 존중 양육
 -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임.
 - 영유아 권리 존중은 영유아의 발달상황을 이해하고 영유아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 즉, 영유아권리에 대한 민감성이 전제되어야 함.
 - 영유아의 마음을 잘 읽고 공감해주며, 영유아의 행동이 그 발달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 범주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하고, 영유아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원인에 관심을 두어야 함.
 - 교육·보육기관에서는 일과 생활 중 발생가능한 갈등에 대한 대처가 준비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영유아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함.
 - 영유아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권리의식에 대한 점점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의 영유아의 경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함.
 - － 스트레스 관리
 - 보호자의 스트레스는 아동학대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건강한 식사습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며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분노조절

- 학대행위자의 불안, 분노, 좌절 같은 감정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함.
- 바람직한 분노조절 방법으로는 생각중단하기, 관심바꾸기, 이완하기와 명상하기, 근육이완, 공감하기 등이 있음.

○ 조기발견단계

－ 영유아 학대 조기발견 체크리스트

- 영유아학대의 사후적 측면에서 조기에 학대를 발견하고 적극 대처함으로써 심각한 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와 교사 그리고 이웃 등 주변사람들이 관찰(목적)된 정보로 학대징후를 의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지침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함.
- 본 체크리스트는 영유아학대의 조기발견을 돕는 목적과 더불어 체크리스트의 문항을 숙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대인식을 높이게 되는 부가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하여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를 추출하여 신고사유를 분류하고, 선행연구 내용과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영유아학대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초안을 개발함.
- 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교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실제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대상자들에게 동의도·이해도 조사를 실시함.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관련 교수를 대상으로 대면회의 형식으로 2차 자문회의를 진행함.

－ 영유아 학대 조기발견 체크리스트 사용대상

-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
- 영유아 관련 기관 종사자(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등)
- 일반인

－ 영유아 학대 조기발견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 만 0세 ~ 만 6세 영유아

- 영유아 학대 조기발견 체크리스트 최종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영유아에게 직접 학대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아동이나 주변사람으로부터 아동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듣는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해야 한다.

- 영유아를 때리는 경우(누름, 꼬집음, 찌름, 밀침, 발로 참, 도구로 때림 등)
- 영유아에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욕설, 욕박지름 등)
- 영유아를 위협하는 경우(때리려는 시늉, 영유아를 향해 물건을 던짐, 부부싸움으로 영유아의 우는 소리가 들림 등)
- 영유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비난, 비교, 부정하는 말 등)
- 영유아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만지기, 뽀뽀 등)
- 영유아를 돌보지 않는 경우(또래에 비해 왜소함, 혼자 둠, 적절한 의식주 제공하지 않음, 비위생적 환경, 의료적 처치하지 않음 등)
- 영유아의 외부활동을 고의적으로 차단하는 경우(집에 가둠, 영유아 보육기관에 등원시키지 않음 등)

2. 영유아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나 흔적이 발견되거나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 관찰되는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해야 한다. 단, 영유아가 진술을 회피하거나 보호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더욱 주목해야 한다.

-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단계와 신체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손상이 있을 경우(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영유아의 멍이나 탈구, 눈 주변의 멍 등)
-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을 경우(등, 두피,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성기 주변 등)
- 영유아에게 손모양, 끈모양, 막대모양, 이빨자국, 짝 움켜쥐거나 도구를 사용한 모양의 멍이 있을 경우
- 평소와 달리 영유아의 행동 및 정서상태가 무기력하거나 불안정해 보

일 경우(손발톱 물어뜯기, 공격적인 행동, 퇴행행동, 두려워 함, 대화 거부, 저항행동 등)

- 영유아가 가정이나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른 때문에 가기 싫다는 표현 또는 반응을 자주 또는 갑작스레 하는 경우
- 영유아가 성적행동(연령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의 성기를 보거나 만지려고 함, 또래에게 성적행동을 표현하거나 묘사를 함, 성병에 감염됨 등)을 하는 경우
- 최근 영유아가 지저분한 위생상태(악취, 손발톱의 심한 때, 세탁하지 않은 옷 착용, 옷에 이물질이 자주 묻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며, 자주 배고파하며,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 영유아와 보호자의 상호작용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경우(영유아가 보호자와 눈맞춤을 피함, 보호자가 영유아를 좀처럼 쳐다보거나 만지지 않음, 보호자가 영유아를 지나치게 부담스러워 함)

— 영유아 학대 조기발견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나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인,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체크리스트를 숙지하여 스스로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
- 본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영유아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본 체크리스트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체크가 되는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하여 신고를 해야 함.
- 신고전화는 112
- 아동학대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경찰과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음.

참고문헌

- 강은영·김희균(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2014. 2. 2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안).
- 김광혁(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27-46.
- 김미숙(2014). 일본의 아동보호체계간 연계성 고찰: 동경도 아동가정지원센터와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4(7), 125-135
- 김미정·염동문(2012). 아동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409-430.
- 김상미·남진열(2014). 지역사회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아동학대와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아동학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9, 211-231.
- 김소연·전종철(2015). 아동학대 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7(4), 387-410.
- 김수정·정익중(2013). 아동학대가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2013).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 김잔디(2014).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동향. 서울법학, 22(2), 475-502.
- 김준호·김선애(1997).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6(97.9), 5-28.
- 김평화·윤혜미(2013).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결핍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1, 217-238.
- 나은숙·정익중(2007). 아동학대 유형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35-49.
- 도남희·이윤진·조아라·박은영·김은희·임정하·김탁영 외(2015).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총괄보고서): 유치원·어린이집 환경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민대기(2014). 환경적 요인이 아동 성장기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데이 터정보과학회지, 25(2), 203-304.
- 배상균(2015).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대응에 관한 검토: 일본 후생노동성의“아동 학대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8(4), 59-96.
- 보건복지부(2016). 2016 아동분야 사업안내 II.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 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 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송수진(2016).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충북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미희(2015). 일본의 아동학대예방 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 발표대회논문집, 414-417.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n.d.). 어린이를 위한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정아·정익중(2014). 방임이 초등저학년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7, 157-183.
- 이미화·최윤경·이정원·도남희·권미경·박진아·이혜민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 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 육아정책연구소·보건복지부.
- 이복희(2007). 부모의 아동학대와 아동의 적응변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13(1), 99-121.
- 전영실·노성훈(2011).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실태 및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전해숙(2008). 아동학대 및 아동의 심리사회적 지원이 아동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55-77.
- 정익중(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 주소영·이양희(2008). 아동학대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9(3), 127-156.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1). About CAPTA : A Legislative

- History.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permanency/legal-court/fedlaws/>에서 2016년 6월 15일 인출.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6). Federal Laws Related to Permanency,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permanency/legal-court/fedlaws/>에서 2016년 6월 15일 인출.
- Collins, Kimberly, Harker, Natalie and Antonopoulos, Georgios A.(2016), The Impact of the Registered Intermediary on Adults' Perceptions of Child Witnesses: Evidence from a Mock Cross Examination,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doi:10.1007/s10610-0176-9314-1, 1-15.
- 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5).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19595/Working_Together_to_Safeguard_Children.pdf에서 2016년 11월 8일 인출.
- 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6). Children's Services in England.
- Dreber, Marie-Luise(2009).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Child and Youth Services in Germany http://www.cipcolumbus.org/uploads/7/0/3/3/7033486/child_and_youth_services_in_germany_0912.pdf에서 2016년 9월 20일 인출.
- 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What youth welfare office do: questions & answers. http://www.lwl.org/lja-download/unterstuetzung-die-ankommt/extern/pocketbroschuere/Jugendamt_English.pdf에서 2016년 8월 20일 인출.
- Healthy Families America. (2016). History. <http://www.healthyfamiliesamerica.org/history/>에서 2016년 7월 3일 인출.
- Laming (2003). The Victoria Climbié Inquiry. Retrieved from <http://www.official-documents.gov.uk/document/cm57/5730/5730.pdf>에서 2016년 9월 20일 인출.
- Lamont, A. (2010).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for children and

- adolescents(NCPC Resource Sheet). Retrieved from <http://www.aifs.gov.au/nch/pubs/sheets/rs17/rs17.html>
- Mills, C. (2004). Problems at home, problems at school: The effects of maltreatment in the home on children's functioning at school. An overview of recent research.
- NAEYC(1996).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Early Childhood Professionals to Prevent Child Abuse.
-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2011). Good practice by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 Oshana, D., Harding, K., Friedman, L., & Holton, J. K. (2005). Rethinking healthy families: A continuous responsibility. *Child Abuse and Neglect*, 29(3), 219-228. <http://doi.org/10.1016/j.chiabu.2005.02.006>
- Ritchie, G. (2016). 면담자료(2016년 10월 19일 면담).
- Shonk, S. M., & Cicchetti, D. (2001). Maltreatment, competency deficits, and risk for academic and behavioral mal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3-17.
- Springer K. W., Sheridan, J., Kuo, D., & Carnes, M. (2007). Long-term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Results from a large population-based sample of men and women. *Child Abuse and Neglect*, 31(5), 517-530.
- Stein, T. (2000). 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Creating a false dichotomy between parents' and children's rights.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81(6), 586 - 592. <http://doi.org/10.1606/1044-3894.1070>
- Task Force on Community Preventive Services. (2003). New findings demonstrate early childhood home visitation prevents child maltreatment, part of the Guide to Community Preventive Services. <http://www.thecommunityguide.org/violence/viol-int-homevisit.pdf>.
- United Nations. (1989).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Journal of Chemical Information and Modeling). http://www.unicef.org/magic/media/documents/CRC_korean_language_version.pdf에서 2016년 6월 15일 인출.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Yana. (2016). 면담자료(2016년 10월 21일 면담).

厚生労働省 『子ども虐待対応の手引き』 (2009年、改正版)

[법령 및 협약]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79호, 2015.2.3., 일부개정]
 아동보호심판규칙. [대법원규칙 제2556호, 2014.9.1., 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11.30., 타법개정]
 아동복지법. [법률 제13259호, 2015.3.27.,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172호, 2016.5.29. 개정, 2017.5.30.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정]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4001호, 2016.2.3.,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법률 제13574호, 2015.12.22., 일부개정]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1989. 11. 20 채택, 국문)

[보도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2016. 3. 18.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4. 2. 28. 아동학대 신고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공동 대응.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6. 10. 13.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학대 예방 서명.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3. 29. 정부,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다.

법무부 보도자료, 2016. 5. 19. 아동학대 신고자, 강력범죄 신고자처럼 신변 보호.

법무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12. 31. 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 28.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5. 13.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 수립.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2. 25. 아동학대 피해 방지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한 영유아 대상 양육환경 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3.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5. 19. 아동학대 신고 전년동기 대비 45.5% 증가-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실적 점검 결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9. 29.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 반면교사 삼아 대책 보완.

보건복지부·교육부·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6. 4. 1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신문기사 및 TV 방송/인터넷 자료]

KTV 국민방송(2016. 3. 18). 무단결석 아동조사 유치원까지 확대.

뉴스 1(2016. 4. 25). 초·중학교 미취학 및 장기결석 중학생...학대 '35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019546>에서 2016년 11월 2일 인출.

후생노동성(일본) 홈페이지. <http://www.mhlw.go.jp/bunya/kodomo/dv12/03.html> 2016년 12월 16일 인출.

[기타]

교육부 내부자료(2016. 11.).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6-48-01

연구보고 2016-34-01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Ⅱ):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앤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06-0 94330